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2026. 8. 1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조 (목적)	1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1
제 3 조 (정의)	1

제 2 장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사용신청)	5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6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6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7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7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7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11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12
제 10 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14
제 10 조의 4 (비상설비 전기사용계약기준)	15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15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15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13 조 (공급방법 등)	21
제 14 조 (저압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21
제 14 조의 2 (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24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31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32
제 17 조 〈삭 제〉	34

제 18 조 (수급지점)	34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	35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36
제 21 조 (지중인입선)	36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36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	37
제 24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37
제 25 조 (전력량계 등의 정밀등급)	37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41
제 27 조 (역률의 계산)	42
제 28 조 〈삭 제〉	43
제 29 조 (위약금)	44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45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45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46
제 33 조 (설비의 손상실에 대한 배상)	46
제 34 조 (업무협조)	47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삭 제, 2017. 8.28〉	49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49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49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51
제 39 조 (주택용전력)	52
제 39 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52
제 40 조 (일반용전력)	53
제 41 조 (교육용전력)	53
제 42 조 (산업용전력)	55

제 43 조 (농사용전력)	58
제 44 조 (가로등)	61
제 45 조 (예비전력)	62
제 46 조 (임시전력)	63
제 46 조의 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64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삭 제, 2008. 12. 1>	67
제 48 조 (요금의 계산)	67
제 48 조의 2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70
제 48 조의 3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	72
제 48 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I)	77
제 48 조의 5 (주택용 계절별 · 시간대별 선택요금)	77
제 48 조의 6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79
제 48 조의 7 (주말 할인요금)	80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81
제 50 조 (검침일)	87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87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88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88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89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91
제 56 조 (전력량계의 오차율 측정)	92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93
제 57 조의 2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94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94
제 58 조의 2 (추가청구 요금의 분할납부)	94
제 59 조 (연체료)	95
제 60 조 (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95
제 61 조 (요금의 보증)	95
제 62 조 (일수계산)	97
제 63 조 (요율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	99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99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101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101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102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108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109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110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110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111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113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113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116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116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117
제 77 조의 2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118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119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120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121

제 10 장 보 칙

제 81 조 (농어촌 융자금 회수)	125
제 82 조 (S.N.W 공급방식)	125
제 83 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에 대한 적용기준)	125
제 84 조 (기타)	125

부 칙	126
-----	-----

【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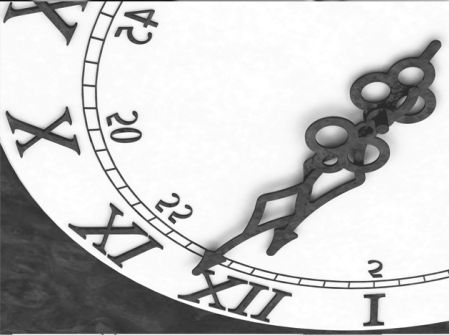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별표 1. 위약유형별 산정기준표	150
별표 2. 잠정사용설비의 사용시간 기준표	151
별표 3.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기간 적용기준표	151
별표 4. 기본공급약관 특례	151
별표 5. 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 기준	165
《구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	165
《신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	167
별표 6. 콘덴서 설치용량 기준표	170
별표 7. 기기별 역률 및 무효전력표	171
별표 8. 평균역률 계산표	174
별표 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	176
별표 10.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I)	178
별표 11. 수요관리형 선택요금II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81
별표 12.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182
별표 13. 〈삭 제, 2021. 9. 1〉	183

【별지서식】

(별지 1-1호 서식)	185
(별지 1-2호 서식)	190
(별지 2-1호 서식)	195
(별지 2-3호 서식)	197
(별지 2-4호 서식)	203
(별지 2-5호 서식)	208
(별지 3호 서식)	212
(별지 4호 서식)	216
(별지 5호 서식)	218
(별지 6호 서식)	222

제 1 장

일반사항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 1 장 일반사항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기본공급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 제4조(시행세칙)에 따라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1항의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이란 전기요금 특례 및 공급방안 적용 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3 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등(電燈)

백열전구, 형광등, 네온관등, 수은등 등의 조명용 전기기기(부속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형기기(小型器機)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등 이외의 저압 전기기기를 말한다.

3. 동력(動力)

전등 및 소형기기 이외의 전기기기를 말한다.

4. 검 칩

종량제 고객의 전력량계 지침을 읽어 사용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한 후 이를 고객과 요금 계산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수 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어촌용자금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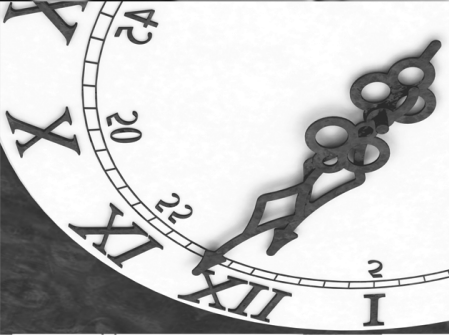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6. 위 약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22.9kV 스포트 네트워크(SPOT-NETWORK)방식
한전의 변전소에서 1전기사용장소에 2회선 이상의 22.9kV-Y 배전선로로 공급하고 고객이 각 배전선로에 시설한 수전용 변압기의 2차측에서 상시 병렬 운전하는 공급방식을 말한다.
8. 계약종별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9. 저압
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10. 고압
직류 1,5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1. 특고압
7,000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2. 일반용전기설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자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 2 장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지



제 2 장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 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사용신청)

①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의 “전기사용신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규 전기사용(이하 “신설”이라 한다)
2. 계약전력 증가(이하 “증설”이라 한다)
3. 전기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
4.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 또는 분할
5.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6. 고객의 희망에 따른 인입선 위치변경
7. 증설 없는 계약종별의 변경
8. 증설없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교환
9. 전기사용계약 해지(계약전력 감소 포함)
10.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재봉인 및 시험
11.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및 주소 변경
12.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재사용
13. 휴지 또는 재사용
14. 그 밖의 전기사용계약 변경

②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2항 단서의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중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휴지 또는 재사용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20kW 미만 개인고객의 계약전력 감소
3. 주택용 저압전력 고객 ·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 · 주거용 심야전력(갑) 고객의 전기사용 계약자 변경. 다만, 사용자별 요금구분 청구는 제외
4.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전기요금청구서 수령장소, 수령방법 변경
5.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
6.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재봉인 및 시험
7.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③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3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란 제1항 제7, 8, 10, 13호를 말한다.

④ 약관 제8조(전기사용신청) 제4항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관련 전기사용신청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인 고객은 전기사용신청 시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서를 한전에 제출하고, 검토결과와 동일한 내용으로 전기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발급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확인서를 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다음 각 호의 고객은 공급준비 착수 전에 약관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
2. <삭 제>
3.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4. 예비전력 고객
5. <삭 제>
6.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고객
7. 단일계약 아파트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
8. 냉동 창고, 양어장(양식장), 양계장(부화장), 특용작물재배 등 휴 · 정전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
9. 제12조(계약전력 산정) 제3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 고객
10. 고객이 요청하거나 한전 또는 다른 고객과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①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2항의 “상속, 합병 등”이란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항의 “매매 등”이란 매매, 임대차, 경락 등과 같이 포괄승계 이외의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의 매매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전기사용신청)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③ 고객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새로운 고객이 이전 고객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전은 새로운 고객에게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신청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고객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제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고객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객이 해지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지요청 접수일 다음날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 한다. (2007. 8. 3 개정)
- ③ 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이 전기사용장소에 출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한전은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하여 요금납기일부터 2개월 경과 후에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전기공급정지일을 해지일로 한다.
- ② 한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주한외국기관, 군부대 및 행정관서 고객으로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경우
 2.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의 이행 (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 등을 수취하여 수금이 가능할 경우
 3. <삭 제, 2013.11.21.>
 4. 약관 제15조 제5호에 해당하는 고객 중 고객소유선로 건설 지연으로 불가피하게 수급 개시일을 경과하여 한전과 수급개시일을 재협의를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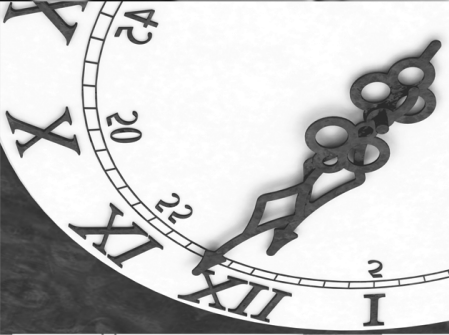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①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1년” 또는 “3년” 기간 산정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다음날부터 재사용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마지막 해당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해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에 재사용 신청하였으나 재사용수수료 또는 시설부담금 미납부, 구비서류 미제출, 내선설비 미준공, 수전설비 미비 등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 중의 기본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임시전력고객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여 해지후 재사용시의 비용을 적용하며, 해당 고객이 신규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약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1.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2. 해지당시와 재사용시의 공급조건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계약종별 : 해지당시의 계약종별
 - 나. 계약전력 :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 다. 공급전압 : 재사용시의 공급전압
3. 일정기간에만 전기를 반복 사용하는 계절성 고객은 약관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③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 조명시설 등)의 일부나 전부의 전기사용을 중지한 고객이 정부시책의 변경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고객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기본시설부담금 전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2항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란 다음과 같다.
 1.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에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
 2. 해지시점과 재사용시점의 공급전압이 모두 저압인 경우로서 계약전력 증가 없이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시의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
 3. 공급단위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4. 위의 “제1호 · 제2호 · 제3호”와 같은 공급조건 변경 없이 고객요청에 의해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등의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 재사용 시점의 공급설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경우 :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세칙 제71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 ⑤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신청시 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 없이 약관의 변경으로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 고객은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구내”란 다른 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과 담장·도로 등으로 구분되는 1소유자의 관리 구역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인접한 2 이상의 구내가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전체를 일괄하여 1전기사용장소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인접한 2이상의 구내 사이에 일반대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각각의 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다.
 3. 1구내로 전기사용장소가 확정된 이후에 고객이 도로를 개설하여 2이상의 구내로 분리할 경우에는 도로 개설 이전의 전기사용장소를 유지한다.
 4. 광산·간척지사업지구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은 1회계주체의 관리구역을 1전기사용장소로 할 수 있다.
- ② 지형적 또는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구내를 2 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건물”이란 소유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독립된 1동(棟)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 이상의 건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다.
- ④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4항에서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경우란 1건물에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층(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동설비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구내도로나 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동 설비 등 전기설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내도로나 공원 등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 ⑥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휴지대상 고객의 구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택 등 주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시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유수지 배수펌프장과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⑦ 기존의 전기사용장소에 제14조 제5항에 따라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부분을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① 전기사용계약단위는 1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단독주택

주택에 부수되는 별채 · 창고 · 차고 등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1가구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2. 공동주택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서로 다른 2 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각 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3. 상점부 주택

가. 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 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고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나.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4. 사무실, 관공서, 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 · 상점 · 상가 · 백화점 · 쇼핑센터), 오피스텔(주거용 제외), 공장, 병원 및 기타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 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한다.

나.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5,000kW 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경우 소유자별 또는 사용자가 다른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전력이 5,000kW 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 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통신 사업자의 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 포함)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구내나 1건물 내에 있는 주택부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분한다.

라.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사용자가 다른 2 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으며,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마. <삭 제, 2014. 4. 7>

5.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 주택부분은 제2호에 따라, 상가부분은 제4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때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설비는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6. 가로등

등주 1본을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배선으로 2본 이상이 연결되어 1구역을 이루는 경우에는 1구역을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7. 광고등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지 않고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할 수 있다.

- ② 용접기 등의 사용설비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3상 4선식 220V/380V 공급고객이 단상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설로 처리하되 당해 고객에게는 전용 저압선 및 인입선을 시설한다.

1. 사용용접기의 단위용량이 10kVA 이하로서 공용변압기 용량이 50kVA 이상인 경우

2. 공급하는 변압기가 당해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경우

- ③ 주된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부대시설은 주된 고객의 전기사용계약 단위에 포함한다. 이 때 부대시설이란 사택을 제외한 사무실, 부속시설 및 후생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적용 고객에 대해서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말한다. 제1항 제2호 나.에 규정한 “1 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독립된 각 호를 1전기사용 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 전체에 대하여 1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아파트 세대별계약방법을 말한다.

고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계약단위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2021. 1. 1.>
2. 공동설비를 포함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고, 상가 부분은 아파트와 별도의 1전기 사용장소로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 · 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개별세대 거주 건물(또는 개별세대 거주 구역)과 명확히 구분된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5. <삭 제 2021. 1. 1.>
6. <삭 제 2021. 1. 1.>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동설비”란 승강기, 중앙공급식 냉 · 난방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등 주거용에서 사용하는 냉난방설비는 중앙공급식 냉 난방설비에 한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 용도, 검침 및 설비유지 관리, 집합건물 관리 사무소의 관리능력, 경제적 · 기술적 특수성, 전기요금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전기사용계약 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 10 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 기준)

-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 또는 충전설비별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제 10 조의 4 (비상설비 전기사용계약 기준)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도 불구하고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공동설비로서 재해 시에만 가동하는 소방설비, 배수펌프 등 비상설비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전기 사용계약단위를 공동설비와 별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은 제외한다.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 기준)

- ① 마력표시 전동기의 입력환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전력은 개정된 입력환산방법에 따라 증설후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의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 ② 22.9kV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이하 “22.9kV S.N.W방식”이라 한다)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 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 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 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 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사용설비별			출력표시	입력(kW)환산율
백열전등 및 소형기기			W	100%
전 열 기			kW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kW 또는 kV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kW	133%
		삼 상	kW	125%
	고압, 특별고압		kW	118%

2. 조명기구 등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가.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나. 수은등 · 메탈등 · 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다.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3.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가.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나. 소형기기의 수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4. 가로등(갭)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kW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kW로 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구 분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오 · 배수용	저압	단 상	146.3%
		삼 상	137.5%
	고 압		129.8%
깊은 우물용	저압	단 상	159.6%
		삼 상	150.0%
	고 압		141.6%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종 별	최 고 정 격 관전압(kVP)	최 대 정 격 관전류(mA)	입력환산(kW)
치 과 용			1
치 료 용			정격1차최대입력
진 단 용	100kVP	300mA	18
	100kVP	500mA	30
	125kVP	500mA	37
	150kVP	500mA	46
축전기방전식 진 단 용	컨덴서용량 0.75 μ F 이하		1
	0.75 μ F 초과 1.5 μ F 이하		2
	1.5 μ F 초과 3.0 μ F 이하		3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 \times I \times F \times 1 / 1000 (\text{kW})$$

P = 입력(kW), V =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kVP)

I = 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mA)

F = 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12. 광증계기 등 소형통신증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소형기기’ 입력환산율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13. <삭 제, 2018. 4. 2>

14.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 제3호의 따른 환산율 적용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설비는 동시에 사용이 가능한 재난대비시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로 한다.

나. 위 가호 이외에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설비에 대해서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 환산율 적용제외에 따라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설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 \times 2 \times 0.8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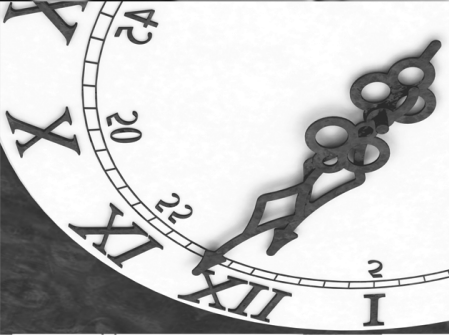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위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 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 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위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 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9.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 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 나. 2차권선(부하측) + 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 + 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10.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 후 3개월까지로 한다.
 -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 기간이 경과 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 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위약처리한다.
- 11. 약관 제20조 제2항의 단서에 따라 154kV 이상 고객과 계약전력을 협의하는 경우의 계약전력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154kV 이상 고객은 약관 제20조 변압기설비에 의하여 산정된 계약전력이 약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154kV로 공급하는 대상을 말한다.
 - 나. 계약전력을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 최대수요전력을 계약전력의 120% 이내로 제한한다.
 - 다. 기존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적용고객이 협의에 의한 계약전력으로 변경 계약시 기설치된 MOF의 1차측 CT용량의 1단계 아래 범위내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2단계 아래 범위로 계약전력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적정 규격의 MOF로 교체해야 한다.
-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13 조 (공급방법 등)

- ① 약관 제22조(공급방법) 단서의 “인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 1.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 2. 제14조의 2(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제1항 제5호나 같은 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 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 3. 공동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에 1인입으로 공급한다.
 - 4. 기타 전기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합한 인입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② 신·증설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원칙적으로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다음의 고객은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1. 66kV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 2. 고객이 특별히 희망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4 조 (저압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 ① <삭 제>
-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 1. 저압단상고객은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한다.
 - 2. 저압삼상고객은 3상 4선식 220V/ 380V로 공급한다. 다만, 3상 3선식 220V로 공급설비의 변경 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3상 4선식 220V/380V 공급설비의 신설이 곤란하여 3상 3선식 220V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3상 3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다.
 - 3. 단상 2선식 220V와 3상 3선식 220V를 3상 4선식 220V/380V로 공급하는 것은 1 전기 공급방식으로 본다.
 - 4. 단상전동기의 전력공급
 - 가. 일반전등 고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등변압기에서 공급가능한 단상전동기의 용량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때 2개 이상의 전동기를 동시에 기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마력)

전압별 기동형별	분상	반발	콘덴서
100V	$\frac{1}{2}$	$\frac{3}{4}$	$\frac{1}{2}$
220V	1	$1\frac{1}{2}$	1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 단상전동기 : 기동전류가 37A 이하
- (2) 룸에어컨 : 60A 이하

다. 탈곡기, 건조기, 양수기 및 농약살포용의 소형 전동기는 변압기의 손상이나 공급 설비에 지장이 없는 한, 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동기 1대의 출력(동시 기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합계)이 변압기출력의 1/10 이하일 경우에는 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1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이란 기설 삼상고압 이상의 전선로에서 2상3선식이나 단상2선식 고압 이상의 전선로가 10경간 이상 연장된 지역을 말한다.

5. 회전위상변환기의 사용

가.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 합계가 100kW 미만인 경우로서, 회전위상 변환기 1대당 용량이 20kVA 이하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6. 저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기능이 서로 다른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공동 설비에 대하여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항에 따라 500kW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증설 후 계약전력 합계가 150kW 이상인 경우에는 공중공급 대상지역 또는 지중공급 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약관 제24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및 세칙 제15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공급 설비 설치장소를 제공받아 지중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여건상 가능한 경우에는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300kW 미만까지는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공중 또는 지중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300kW 미만까지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150kW 미만까지는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고, 그 이상은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설 신청 고객의 증설후의 계약전력 합계가 150kW 이상인 경우로서 도로굴착허가 제한 등으로 지중인입 공급이 곤란하고 공중인입으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공중인입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는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한다.

다. “가”에 따라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지중인입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3.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변압기 설치공간을 제공받아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부하용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이 변압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나. 수급지점은 한전 변압기의 고객측 연결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점으로 한다.

다. 시설부담금은 지중지역인 경우에는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지중표준 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공중지역인 경우에는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라. <삭 제, 2015. 7. 1>

④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항에 따라 전기사용장소 내 계약전력의 합계가 500kW 이상 1,000kW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24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및 세칙 제15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받아 지중으로 공급한다.

2. 해당 전기사용장소의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변압기 또는 개폐기를 설치하고, 이 변압기 또는 개폐기를 활용하여 필요한 경우 인근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3. 수급지점은 한전 변압기의 고객측 연결점으로 한다.

4. 당해 전기사용장소 내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는 2개 이상의 변압기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5. 시설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⑤ 고객이 희망하고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1. 선로구성 및 계량방법 등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경우

2.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 14 조의 2 (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① 22,9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1호의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을 포함하여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있고, 변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장소에 이르기까지 공급선로 구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며, 기존 공급 설비를 보강하거나 변전소간 부하분리 공사를 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가.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변전소 공급능력(kW) =

(최종규모의 Bank 용량 합계[kVA]-1Bank 용량[kVA]) × 0.92

이 경우 최종규모라 함은 변전소 건설 시 설계된 최종 변압기 Bank 수를 말한다.

나. 인출개폐장치의 여유라 함은 고객의 신증설 요청시점에 사용계획이 있는 개폐장치를 제외한 여유분을 말한다.

2. 약관 제2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고객이 한전의 154kV 또는 345kV 변전소 건설장소를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이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전력(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변전소 공급능력의 3분의 1까지 22,900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나. 고객이 한전의 변전소 부지제공을 포함하여 변전소 신설공사비를 분담할 경우 변전소 공급 능력의 2분의 1까지 22,900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다. 변전소 부지를 제공한 고객이 변전소 공급능력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22,900V로 공급받기를 희망하고 변전소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변전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간주한 공사비를 고객이 분담하는 조건으로 변전소 공급능력의 2분의 1까지 22,900V로 공급할 수 있다.

라. 위 “나” 및 “다”에 따라 고객이 분담하는 공사비는 변전소 공급능력 대비 고객의 사용 용량의 비율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마. 고객소유선로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kW 이하로 한다.

바. 고객소유선로 회선수는 계약전력 20,000kW까지는 1회선으로 하고, 계약전력이 20,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계약전력 20,000kW당 1회선씩 추가한다.

3. 계약전력 14,000kW 이하의 신·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00V 일반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다.

가.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 부담으로 시설하여 최대수요

- 전력을 10,000kW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전용공급설비로 공급받는 조건
- 나.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를 시설하여 사용하는 조건
- 다. 선로사고 등 비상시 부하전환이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또는 기타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
4.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22,900V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 1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아래 제6호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신설 또는 증설 후 계약전력이 10,000kW 초과 14,000kW 이하인 경우
- 나. 신설 또는 증설 후 계약전력이 14,000kW 초과 20,000kW 이하로서 한전에서 정한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5.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20,000kW 초과 40,000kW 이하로서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 900V 2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kW 이하로 한다.
- 가. 공급선로가 Loop 운전되지 않도록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전하는 조건. 단, 공급선로가 고객소유선로이거나 고객의 부담으로 회선당 공급용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부설하고, 상용전력간 병렬 운전이 되지 않도록 인터록(Interlock)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Loop 연결을 할 수 있다.
- 나.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의 설치 또는 기타 자구책을 강구하는 조건
- 다.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위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2,900V 1회선 또는 2회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여도 향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경과지 확보에 지장이 없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나. 공급선로는 다음과 같이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에 따라 일반 배전방식 또는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공급설비로 구성하여 공급한다.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	공급선로 구성방법
14,000kW 이하	일반배전방식으로 공급 단, 장래 설비증설 계획 또는 전압강하 등의 문제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 가능
14,000kW 초과 20,000kW 이하	대용량 배전방식으로 공급

다만, 한전이 전용공급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제4호 포함),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그 전용공급설비를 일반공급설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해당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 아래의 잔존율을 곱한 금액에서 변경시점의 표준시설부담금을 뺀 금액을 환불한다.

$$\text{잔존율} = \frac{\text{설비내용연수} - \text{경과연수}}{\text{설비내용연수}}$$

그러나, 변경시점의 표준시설부담금이 더 큰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시설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공급선로(2회선)는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주변압기에서 인출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전소 공급능력 또는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없거나 동일변전소에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 지리적으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변전소에서 인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라. 22,900V 1회선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의 계약전력이 증가하여 20,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선은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선로로 구성해야 하며, 다른 1회선이 일반공급설비일 경우 계약전력은 10,000kW 이하로 한다.
- 마. 22,900V 2회선을 신규로 공급할 때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 2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고객 희망시 1회선은 일반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공급설비의 계약전력은 10,000kW 이하로 한다.
- 바. 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전력은 공급선로별 수전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사.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하며,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한다.

아. 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 또는 2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공급선로는 다른 선로와 Loop 운전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상용 공급선로 2회선에 예비 공급선로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비선로로 상용 2회선의 부하가 동시에 공급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상용 공급선로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설비 용량 중에서 큰 쪽의 변압기 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상용 2회선중 상용 1회선만 예비전력을 공급하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 해당 상용회선 변압기설비 용량기준으로 산정한다.

7. 제2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22.9kV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가. 공급선로 시설장소가 한전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나.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154,000V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54kV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예비전력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수 있다.

2.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의“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라 함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상정사고시 설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계약전력 400,000kW를 초과하는 신·증설 고객이 한전이 인정하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400,000kW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154kV로 공급할 수 있다.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에 따라 최대수요전력 400,000kW 를 초과하는 신·증설 고객이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500,000kW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154kV로 공급할 수 있다.

가. 설비고장 또는 긴급 보수 등의 사유로 정전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회선 이상을 설치하며, 보호협조 및 계량방법 등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경우 병렬 운전할 수 있다.

최대수요전력	공급 회선수		
	상용전력	예비전력	합 계
400,000kW 초과 500,000kW 이하	2회선	1~2회선	3~4회선

- 나.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는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선당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154kV로 계속 공급하기 위해 발생하는 한전의 추가 투자비용은 고객이 모두 부담한다.
- 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약관 제63조(예비전력)에 따라 상시 계약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전력 2회선과 예비전력 1회선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400,000kW로 한다.
- 마. 예비전력을 포함하여 2회선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 · 소유한다.
- 바. 공급선로가 서로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되고, 전력계통 검토(고장용량, 계통흐름, 보호협조 등)결과 Loop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4. 154kV 최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기설고객이 345kV로 공급하는 것이 경제적, 지리적, 법적으로 불합리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고,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 500,000kW를 초과하여도 154kV로 계속 공급할 수 있다.
- 가. 기존 공급변전소 공급능력에 여유가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변전소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개 변전소별로 최대수요전력을 600,000kW 이하로 공급한다.
- 나.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변전소별로 600,000kW 이하로 제한하되, 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회선당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설비고장 또는 긴급 보수 등의 사유로 정전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변전소별 2회선 이상을 설치하며, 보호협조 및 계량방법 등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 병렬운전할 수 있다. 단, 서로 다른 공급 변전소에서 공급할 경우 고객측 수전설비를 공급변전소별로 완전히 분리하여야 한다.

최대수요전력	공급 회선수		
	상용전력	예비전력	합 계
400,000kW 이하	1회선	1회선	2회선
400,000kW 초과 600,000kW 이하	2회선	1~2회선	3~4회선

라. 비용부담 주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산정, 합성계량장치 관련사항은 위 제3호 “다” 부터 “마”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5. 154kV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 ·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인출개폐장치를 설치한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발 · 변전소 또는 개폐소 인출개폐장치 이외의 지점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전선로에서 T분기로 공급 할 수 있다.

가. 신 · 증설 전기사용장소 인근을 통과하는 154kV 선로가 주요 계통간선이 아니고 계통보호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나. 한전의 전력공급설비 형편상 T분기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6. 위 제5호의 단서에 따라 T분기로 공급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1개 선로구간(변전소간)에서 T분기 공급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는 선로구간 송전용량(90℃ 연속허용 전류)의 75% 이내로 한다.

나. T분기 공급가능한 1고객의 계약전력은 1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50%, 2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25%까지로 한다.

다.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2 T분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2개 선로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하고 상시전원과 예비전원을 명시한다.

라. T분기 공급시 필요한 경우 고객은 T분기점에 반송블러킹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마. T분기 선로길이가 1km 이상인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T분기점 부근에 부하개폐능력을 보유한 선로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7. 계약전력 400,000kW를 초과하여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1항에 따라 345kV로 공급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공급 회선수를 결정한다.

가. 최대수요전력 2,000,000kW까지 1변전소에서 상용 1회선, 예비 1회선으로 공급하되, 1변전소에서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인근 변전소에서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나. 최대수요전력 2,000,000kW를 초과할 경우 상용 및 예비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8. 154kV로 공급중인 고객이 계약전력 증가에 따라 345kV로 공급전압을 변경해야 하는 고객 또는 345kV 공급대상이나 최대수요전력 제한 조건으로 154kV로 공급 중인 고객이

최대수요전력 상향에 따라 공급전압을 345kV로 변경해야 하는 고객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54kV와 345kV 2전압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가. 154kV, 345kV 2전압 공급을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조건

나. 고객측 수전설비를 공급전압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건

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사용장소내에서 2전압이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지 않아야 하며, 연결로 인한 한전측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조건

라. 154kV 전압을 345kV 변전소에서 공급시 345kV 변전소 건설비를 변전소 공급능력 용량 대비 사용용량만큼 부담하는 조건

마. 154kV 전압을 154kV 변전소에서 공급시 라목을 포함하여 345kV 변전소와 154kV 변전소 계통연결을 위한 154kV 송전선로 건설비를 송전용량 대비 사용용량만큼 부담하는 조건

바. 154kV 최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 경과 조건

9. 계약전력 증가에 따라 공급전압을 22.9kV에서 154kV로 변경해야 하는 고객 또는 154kV로 공급받기를 희망하였으나 한전의 사유로 22.9kV로 선공급 받은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2.9kV와 154kV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다.

가. 고객이 22.9kV 및 154kV의 2전압 공급을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며, 한전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나. 고객측 수전설비를 공급전압별로 완전히 분리할 것

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사용장소 내에서 2전압이 전기적으로 상호 연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결로 인하여 발생한 한전의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 배상책임을 질 것

라. 22.9kV 전압 공급을 위한 변전소 건설비를 변전소 공급능력 용량 대비 고객의 사용용량의 비율에 따라 고객이 부담할 것

마. 22.9kV는 전용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선로를 통해 공급받는 고객일 것

바. 22.9kV 최초 수급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단, 한전 사유로 22.9kV를 선공급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66k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설고객에게는 66kV로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력공급설비상 66kV 전압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 66kV 선로정비시에는 한전이 정한 전압으로 수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2. 기설고객으로서 고객이 증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66kV 공급설비 용량 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 다만, 66kV 공급설비를 22.9kV-Y 전압으로 정비할 경우 1979. 5. 22

이후 증설고객은 증설 전·후의 계약전력 비례로 한전과 고객이 다음과 같이 수전설비 변경공사비를 부담한다.

가. 고객부담금 = 총공사비 - 한전부담금

나. 한전부담금 = 총공사비 × 증설전의 계약전력 / 증설후의 계약전력

3.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66kV선로 정비공사 착공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④ 22.9kV S.N.W 방식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대상 지역

지중공급지역, 지중공급예정지역 또는 공중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22.9kV S.N.W용 전력공급설비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한전이 선정한 지역에는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대상 고객

계약전력이 500kW 이상 40,000kW 이하인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의 공급 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2.9kV S.N.W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 약관 제23조의 2(공급방안 사전검토 수수료)에 따른 공급방안 사전검토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2,9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350,000원
2. 154,0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670,000원
3. 345,000V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990,000원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① 약관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전 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 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kW 이상	가로 2.8m, 세로 2.8m
저 압	75kW 이상 150kW 미만	가로 2.5m, 세로 2.8m
	150kW 이상 200kW 미만	가로 2.8m, 세로 2.8m
	200kW 이상 300kW 미만	가로 2.8m, 세로 4.6m
	300kW 이상	가로 2.8m 이상, 세로 4.6m 이상

②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한전의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배관, 맨홀 등)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전 전기설비의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

- 관리를 위한 한전 직원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제공해야 한다.
- ③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 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 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 제공할 수 있다.
 - ④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kW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력 수전용량이 500kW 이상인 경우 가로 3.0m이상, 세로 9.8m 이상의 공급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저압접속함,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다.
 - ⑥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 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때 한전 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시설 부담금에서 차감한다.
 - ⑦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협약서를 작성하여 영구 보관하며, 한전은 해당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고객과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이하 “공용”이라 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 2. 고압이나 22,900V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의거 전기사용계약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 1. 각 부분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 가. 적용범위
 - (1)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변압기를 공용하여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2) 동일구내는 아니나 고객간의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 수전변압기를 공용하여 대표고객의 구외(構外)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의 공급설비와 대표고객의 공급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이 때 고객이 희망할 경우 공동이용고객은 저압으로 계량할 수 있다.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를 공용하고 각 고객별로 2차변압기를 단독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각 고객이 단독사용하는 2차변압기 용량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설비의 특성상 또는 고객간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 2차 단자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용하는 경우의 고객별 계약전력은 각각의 전력량계 2차측의 사용설비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객간의 사정으로 사용설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한다.

라.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차 변압기를 포함한다.

마.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1항 제3호의 “요금채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이란 요금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시 대표고객 또는 공동이용고객에 대하여 해지시공이 가능하도록 고객부담으로 전용개폐기를 설치하거나, 전용개폐기 설치가 물리적·경제적으로 불합리하여 한전이 고객소유 개폐장치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의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공동이용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로 연접한 건물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 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고객

(2) 공장의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거나 인접한 2 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장소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 사용하는 산업용전력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인입선)와 고객전기

설비의 연결점으로 한다.

다.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확정된 전체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을 새로이 신청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동이용고객은 대표고객의 동의가 포함된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협약서(세칙 별지 6호 서식)를 한전에 제출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이사, 폐업 등으로 전기사용계약 해지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해지신청 시(계약전력 감소는 제외) 대표고객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 부설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량점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공정한 수급거래를 위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⑥ <삭 제, 2019. 11. 7>

제 17 조 <삭 제>

제 18 조 (수급지점)

-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압별	시 설 유 형	수 급 지 점
저 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
	• 지중인입 - 공중 · 지중지역	• 고객구내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전주의 인입선 연결점
	• 지중인입 - 공중지역 - 지중지역	•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연결점 •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이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
22.9kV 초과 특별고압	• 공중 또는 지중	• 공급변전소의 인출개폐장치 고객측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점

- ②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용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고객이 시설 · 소유하는 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연결점으로 한다.
4.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한전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접속장치 부하측 연결점으로 한다. 다만, 한전 전기공급설비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2.9kV S.N.W 변압기 1차측에 고객이 시설하는 개폐장치의 전원측 연결점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 임시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 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다.
6. 저압으로 공급하는 호별계약 아파트의 각 호와 한전간의 수급지점은 다음의 지점으로 한다.
 - 가. 지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상설치형 변압기의 2차측 단자 연결점
 - 나. 공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선로와 지중인입선의 연결점 또는 주상변압기의 2차측 단자 연결점
 - 다. 공중전선로에서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인입선과 인입구배선의 연결점
7. 제1항 “표”에도 불구하고 공중지역에서 고객이 저압으로 지중인입을 희망하는 경우 정액등, 가로등 고객과 같이 사용장소가 건물이 아니거나 계약전력 10kW 이하의 소용량 고객인 경우에는 인입전주의 인입선 연결점을 수급지점으로 한다.
- ③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제8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공유지로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사유지로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등 공급설비 설치장소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전기공급을 위한 배전선로 경과지가산악지역 등 공급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 통행이 곤란한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3.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배전선로의 경과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

약관 제28조(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의“인접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 공고된 도로에 접한 지역
2. 지중화지역으로 선정 · 공고된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이 때 1블럭이란 도로(이면도로 포함)로 구분하여 획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 ① 한전이 인수할 수 있는 고객소유 전기설비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고객과 공용하고 있는 고객소유 선로의 공용부분을 한전의 필요에 따라 인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고객소유의 전기설비가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인수 전에 해당 설비의 보강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지중인입선)

- 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하도록 권장하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 계약서에 명시한다.
 1. 공동주택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기타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 ②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공중공급지역에서 고객부담으로 지중인입선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고객이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5조(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2항에 의해 저압접속함을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경우 고객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접속함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FRP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적합한 절연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 ①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1항의 “연접인입선”이란 1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 연결점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란 2 이상의 고객에게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 부분을 말한다.
- ②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제2항의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 함은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은 고객의 승낙을 얻어 한전이 소유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

- ① <삭 제, 2007. 8. 3.>
- ②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2호는 계약전력 10,000kW 초과 고객에게 적용한다.
- ③ 변전소내에 시설하는 한전소유의 변압기, 인출개폐장치는 전용공급설비에서 제외한다.

제 24 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 기준)

- ①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 단서에 따른 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중 저압으로 계량하는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력량계 부속장치(계기용 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계약전력 500kW 이상 고객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 2. 합성계량장치는 동일구내에서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한 계약종별로 2이상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합성계량을 위한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3. 22,900V 이상 고압고객이 중성점을 접지하는 경우 3상 4선식 전력량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고객은 각 상별 개별 변류기(3CT)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4.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구내 정전고장을 대비하여 계기용 변성기를 이중화하는 경우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2전력량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는 약관 제37조 (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른다.
- ② 약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4항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이란 저압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을 말한다.
- ③ 고객소유의 전력량계를 임시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기간 중에 한전 보유의 참고용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다.

제 25 조 (전력량계 등의 정밀등급 및 시험)

- ①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계약전력별	계량방식별	전력량계 등급	조합변성기 등급
계약전력 500kW 미만고객	전력량계	2.0급(보통 전력량계)	0.5급
	최대수요전력계부 전력량계	1.0급(정밀 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500kW 이상 10,000kW 미만 고객		0.5급(특별 정밀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10,000kW 이상 고객		0.5급(특별 정밀전력량계)	0.3급

② 약관 제 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5항에 따른 전력량계 성능검사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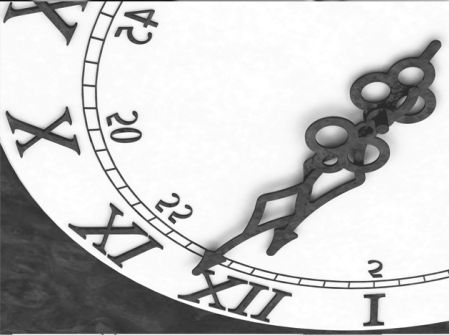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1. 한전에 요청하는 경우

- (1) 동일 고객이 동일한 전력량계에 대하여 1년 이내 1회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전 부담으로 한다.
- (2) 동일 고객이 동일한 전력량계에 대하여 성능검사 후 1년 이내 재시험을 요청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오차시험 : 단상 18,000원/건, 삼상 20,000원/건
 - (나) 비교시험 : 단상 23,000원/건, 삼상 45,000원/건

2. 외부 전문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실비용을 부담한다.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① 전기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하 “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 ② 제 1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개시 예정일 6개월전까지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 ③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1.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

구 분	허용기준	비 고
예측 계산시	2.5% 이하	최대전압 변동률로 표시
실 측 시	0.45%V 이하	△V10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2. 고조파 허용 기준

가. 공급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5	1.8	3	1.5	2	0.6
7	1.5	9	0.5	4	0.3
11	1.1	15	0.1	6	0.2
13	0.9	21	0.1	8	0.2
17	0.6	27	0.1	10	0.1
19	0.5	33	0.1	12	0.1
23	0.4	39	0.1	14	0.1
25	0.4	45	0.1	16	0.1
29	0.3			18	0.1
31	0.3			20	0.1
35	0.2			22	0.1
37	0.2			24	0.1
41	0.2			26	0.1
43	0.2			28	0.1
47	0.2			30	0.1
49	0.2			32	0.1
				34	0.1
				36	0.1
				38	0.1
				40	0.1

나. 공급전압이 22,900V 이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5	3.8	3	3.1	2	1.3
7	3.1	9	0.9	4	0.6
11	2.2	21	0.2	6	0.3
13	1.9	>21	0.2	<u>8</u>	<u>0.3</u>
17	{1.36×(17/h)}-0.16			>8	{(0.15×(10/h))}+0.15
19					
23					
25					
29					
31					
35					
37					
41					
43					
47					
49					

주)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배전계통에서 5%

-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 또는 결상시 피해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제 27 조 (역률의 계산)

- ①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의 당월 역률은 설치 전 · 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계약전력의 증가나 감소, 계약종별이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 후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변경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역률의 평균치를 이상이 있는 월의 역률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전력량계 부속장치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3개월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넷째월분 부터 지상역률 92%와 이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 중 낮은 것을 당월의 역률로 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교체한 경우 해당월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전월검침일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 나. 교체일로부터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신설고객에 준하여 계산한다.
- 5.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의 해당월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가. 기설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나. 신설고객은 우선 지상역률 92%로 계산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초 월까지 소급 정산하되, “(2)”의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때 까지 지상 역률 92%를 적용한다.
 - (1) 고장월을 포함한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후의 평균역률
 - (2) 고장월을 포함하여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역률 92%
-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 1. 대표고객의 역률
 - 가.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 나.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 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계량된 전체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을 차감하여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 2. 공동이용고객의 역률
 - 가.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대표 고객의 역률을 적용한다.
 - 나.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 3.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된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고객이 주택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8 조 <삭 제, 2008.12. 1>

제 29 조 (위약금)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에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가. 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무단으로 예비전력 공급선로를 구성한 때에는 그 선로상의 개폐기가 차단(off)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나. 정액제 요금을 적용받는 고객 및 사용전력량을 협정한 고객이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4. 한전과 계약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5.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고객의 가구수 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 실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 가구수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기기(업종)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2,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고객이 설비의 일부를 계약한 종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증설한 설비가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때 계약종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별별 설비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4. 전력사용량 및 요금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하고, 위약조사일과 검침일이 다른 경우 최초월과 최종월은 일수 계산한다.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 ①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2항의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란 시설부담금, 위약금, 보증금,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설비 손망실에 따른 설비변상금 등을 말한다.
- ②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3항에 해당하는 고객이 한전으로부터 전기공급정지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전기공급을 정지한다. 다만,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 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 ①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1항에 따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전제조건인 “해지사유 해소”란 원칙적으로 미납요금 전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 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의 재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 가. 단상 공급고객은 20,000원
 - 나. 삼상 공급고객은 42,000원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고객
 - 가. 단상 공급고객은 40,000원
 - 나. 삼상 공급고객은 91,000원
 3. 영업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외의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 2호의 기준에 50%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1.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고객은 제외)
 2.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에 따라 전력사용 휴지후 재사용하는 저압고객

3.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에 따른 장기미사용 임시해지 고객
4.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에 따라 재사용시 공급조건 변동으로 재사용수수료와 표준시설부담금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5. 약관 제14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계약전력의 감소)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후 재사용시 전력량계 교환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
6. 기타 고객안내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사용수수료와 인입개폐기 조작에 따른 수수료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
- ④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입개폐기를 조작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개폐기는 320,000원
 2. 지중 개폐기는 297,000원
 3. 영업일 근무시간(09:00 ~ 18:00) 이외의 시간에 인입개폐기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위 1 ~ 2호의 기준에 50%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⑤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3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란 다음과 같다.
 1. 화재, 침수,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인입개폐기의 조작이 필요한 경우
 2. 고객이 안전의 사유(설비점검 등 사유 제외)로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
 3. 한전의 필요에 따라 인입개폐기를 조작하는 경우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 ①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에 의한 요금감액의 경우 새로 전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의 감액요금은 해당 월의 1개월분 기본요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 ② 최저요금을 적용한 주택용 전력, 임시전력(갑) 고객의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 33 조 (설비의 손상실에 대한 배상)

-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전기사용장소 내의 한전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전력에 미달하는 용량의 전력량계와 부속장치가 과부하로 손상된 경우

2. 옥외에 부설한 전력량계와 부속장치가 당해 고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파손, 망실, 도난된 경우
 3. 건축물 멸실로 인한 전력량계와 부속장치의 망실이나 도난으로 배상을 청구할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변압기가 과부하로 손상된 경우. 다만, 고객이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
- ② 고객의 책임으로 정전이 된 경우, 고객은 사고 정전시간에 발생한 공급지장전력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 구내사고 등으로 인한 파급사고 및 변압기 손상의 경우와 피해복구를 위한 전원측 휴전시간 및 가복구 후 정상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휴전시간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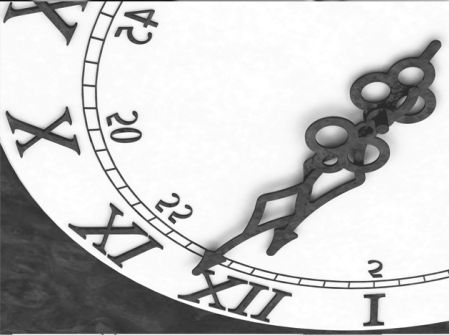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제 34 조 (업무협조)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3항의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변경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3. 사업자 주소(住所) 또는 거소 이전(居所 移轉)
4. 법인 대표자 변경
5. 사업종류 변경
6. 사업장 이전
7. 기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삭 제, 2017. 8.28>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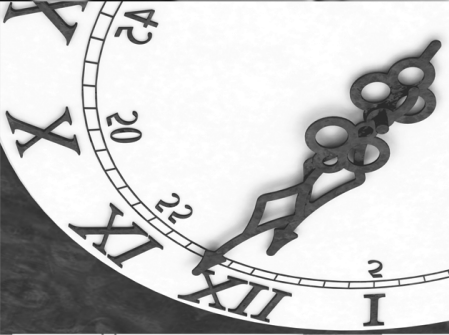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 ① 약관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2항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이란 고객의 물건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근접 또는 접촉하거나 공급설비를 손괴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물건”이란 고객소유의 발전설비·변압기설비 등의 전기설비와 건물·굴뚝·간판·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한다.
- ② <삭제, 2006. 8. 11>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①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1항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한전이 공급설비 관리상 한전에서 수탁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저압 고장수리시 해당 고객의 요청이 있고 수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 ②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하는 공사”란 테이프감기, 바인드 설치, 나사풀기 및 나사조이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 7 장

계 약 종 별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다만,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각각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간주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은 제외함)가 농사용전력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 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표준산업 대분류 “D ~ 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 라. (2006. 8. 11 삭제)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 생산 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4. 휴업중인 고객은 휴업 전의, 청산중인 고객은 청산 개시 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삭제, 2006. 8. 11.>
-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시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동일 전기사용 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 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 39 조 (주택용전력)

- ①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 상대자가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 등)으로서 전기요금을 해당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계약종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발전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계약종별을 결정한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른 계약종별로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전력이 변경되거나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이 변경된 경우는 계약종별 선택 후 1년 이내에도 다른 계약종별로 변경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4호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제 39 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 ① <삭 제, 제48조 제10항으로 이동, 2017.12.18>
- ② <삭 제, 2017.12.18>
- ③ <삭 제, 2017.12.18>
- ④ <삭 제, 2017.12.18>

제 40 조 (일반용전력)

- ①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3. 한전은 업무용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증빙서류 또는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한다.
- ② <삭 제, 2017. 8.28>
- ③ <삭 제, 2016. 3월분 요금부터 적용>

제 41 조 (교육용전력)

-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림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4. 〈삭 제, 2013.11.21〉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전시공원 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된 시설

7.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국립과학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과학관(종합과학관, 전문과학관)

8.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 기관인 학생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며 야외활동, 수련활동과 합숙교육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체육시설 운영 또는 외국어 교육기관

나. 학생들에게 직접적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교육 지원 및 연구기관

다. 학생 단체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라. 개별 호실에 독립 취사시설을 갖추고 휴양 콘도미니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경우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 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의 상업 임대시설은 제외한다.

2.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중·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업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2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 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 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 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 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 시설을 말한다.
-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작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투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에 소요되는 전력에 대해 적용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 공장의 시멘트 생산 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업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산 업 활 동 유 형 별	계약종별
1.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산업용전력
2. “1” 이외의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사업체의 구분은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고객	산업용전력
3.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 하는 사업체	일반용전력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 조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 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 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산업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 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 제>

제 43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의 “양곡”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0”에 해당하는 산업의 생산물로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 사람의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을 말한다.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시 설 목 적 및 용 도		계 약 종 별
주 기 능	부 수 기 능	
관개용 수문 조작	생활용수 공급	농사용전력(갑)
생활용수 확보 수문 조작	농업용수 공급	산업용전력
발전용수 확보 수문 조작	다목적 용도	일반용전력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 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의 “육묘(育苗)”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23’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싹(種子)을 심어 다른 장소로 옮겨심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씨를 심어 이를 발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버섯종균생산을 포함한다. 단,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2011’ 해당산업으로서 임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한다.
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가”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축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수산물”이란 세분류 “0311, 0312, 00321”, “임산물”이란 세세분류 “02030”에 해당하는 산업의 생산물을 말한다.(단, 가공품은 제외)
4.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 저장고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5.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 “다”에서 정한 “수산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0311, 0312, 0321”(단, 가공품은 제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편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구 분		생 산 자	매수 · 수탁자
농작물	저온보관	농사용전력(을)	농사용전력(을)
농산물	건 조	농사용전력(을)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수산물	저온보관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을)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을)
		기타 : 산업용전력	기타 : 산업용전력
	건 조	농사용전력(을) (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을)	수협, 어촌계 : 농사용전력(을)
	제빙 · 냉동	기타 : 산업용전력	기타 : 산업용전력

- 위 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주시설은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된다.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 굴껍질처리장의 주시설은 세척시설, 탈각시설, 굴껍질 분쇄시설 등 굴껍질을 처리하는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수산물을 상품화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1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항 제2호“마” 및 제2항 제2호의 “생산자단체”란 아래의 단체를 말하며, 해당 법령의 전문생산자 조직은 동일업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정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단체
13. 농업 및 어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 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14.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된 축산농가 또는 2인 이상의 축산농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로 생산량 전부를 해당 축산농가가 자가 소비하는 경우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 (가로등)

- ① 약관 제62조(가로등) 제1항의 “도로·교량”이란 일반대중이 통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구내도로 포함)와 교량(육교 포함)을 말한다.
- ②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 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들목)·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내등), 점멸등 등의 전등, 버스(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교통안내시설 및 조명등으로서 상업적 광고기능을 겸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하며, “소형기기”란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총용량 1kW 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도로교통 관련 설비를 말한다.
-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가로등(갭)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요금을 적용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가로등으로 볼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비와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1. 도로,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
 - 2. 광고용 전등, 공중전화 부스용 전등, 휴게소 외곽등 등 가로등 이외 용도의 설비
- ⑦ 사용설비 용량이 1kW 미만인 가로등(갑) 고객이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부과를 희망하고, 한전이 전력량계와 부속장치 설치 및 검침을 쉽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력량계와 부속장치를 설치하여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 ⑧ 가로등(갑) 고객의 정액제 요금은 1일 사용 시간을 12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1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고객은 초과 사용한 시간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예비전력)

- ① 한전의 사정으로 예비전력(갑)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예비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하며, 예비전력(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 사정으로 예비전력 공급변전소가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협의하여야 하고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변경될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4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22,900V를 초과하거나 수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용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선택요금을 적용한다.
 - 2. 대표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에는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 4.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변압기설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 대표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받는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한 후 산정한다.
-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8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기존 공급전압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기존공급선로를 이용하여 예비전력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및 기존 예비전력 공급선로의 고장 · 보수 등의 사유로 별도의 예비전력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예비전력을 공급중인 고객소유 전기설비를 한전의 사정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비전력 요금의 적용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6 조 (임시전력)

- ① <삭 제, 제69조의 제6항으로 이동, 2017. 8.28>
- ②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전기 안전에 문제없이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설비”라 한다)를 시설하여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1. 적용대상은 건설 용도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 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 2. 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 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 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 3.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 4. 건설 용도의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이 건축물 준공 후 계약종별을 변경하여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 건설기간 중 사용한 전력량에 대하여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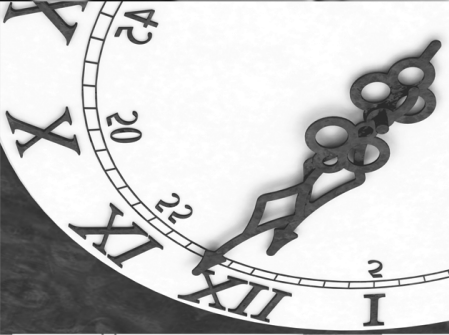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 ⑤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 1.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2. 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전력량계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사용전점검 후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송전한다.
 - 3. 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 후 전력량계 등을 방치하여 전기 안전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⑥ <삭 제, 2017. 8.28>
- ⑦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0kW 미만 고객은 수전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계량 할 수 있으며, 공급전압은 수급지점 전압으로 하고 변압기 손실량은 사용량에 가산한다.

제 46 조의 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 ① 약관 제65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본문의 단서 제1호는 1전기 사용장소에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1인으로서 물리적 · 경제적으로 전기 사용계약단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5조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표의 단서 제2호의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 주거 시설은 제외한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삭제, 2008. 12. 1〉

제 48 조 (요금의 계산)

-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사용량”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②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세칙 제48조(요금의 계산) 제13항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한다.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도 같은 가구로 본다.
 2.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 ·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약관 제67조 제3항에 따라 단일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는 경우의 사용량 제출 및 요금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관리주체는 전체 호의 사용전력량을 문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한전에 제출해야 하며, 한전은 제출받은 호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할인요금을 계산한다.
 - 나. 다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발전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호별 평균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할인 요금을 계산한다.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류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6. “출산 가구”란 출산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할인하여,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분까지 할인을 적용한다.

③ 〈삭 제〉

1. ~ 5. 〈삭 제〉

④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5항의 “주택”이란 1전기사용장소내의 순수주거용 주택(상가부주택 포함)에 주택용전력으로 공급받는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말하며, “가구”란 1전기사용장소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로 독립취사하는 독립세대를 말한다.

⑤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기본요금 50% 감액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정액제 고객은 제외한다.
2. 전기사용 개시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일수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 후 50% 감액한다.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며, 계절이 변경되는 경우 약관 별표 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계절 구분기준을 적용하여 일수 계산한다.

1. 전기요금 감액 기준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16,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20,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당월 전기요금 (월 10,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다만 여름철은 월 10,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나목, 라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월 16,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다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2.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위 제1호의 감액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의 해당월 사용전력량이 200kWh 이하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요금을 감액

한 후 제1호를 적용한다.

구 분	감액기준
저압요금 적용고객, 계시별 선택요금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 (호당 월 4,000원 한도)
고압요금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 (호당 월 2,500원 한도)

- ⑦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종별을 변경시키는 경우
 2.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3.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업종 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 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 ⑧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제1호 및 제6호의 월간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월에는 최저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1. 최저요금 적용고객에 대하여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감액요금) 제1항,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및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른 전체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범위 내에서 감액한다.
 2. 고압수전아파트·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의 개별세대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재사용 또는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로 요금계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⑨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0항에 따른 계절별 요금 구분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검침하는 100kW 이상 고압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계절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 후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절별 요금을 구분 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하여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을 별표 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 ⑩ 약관 제67조 제11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비주거용 고객”이란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한다.
- ⑪ <삭제, 2022. 9. 1>
- ⑫ 약관 제67조 제3항 및 제4항의 고압공급 아파트의 계약방법 적용시기 및 변경기준은 아래와 같다.

1.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며,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이때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 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 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기요금 등 기타 계약내용은 변경된 계약방법을 따른다.
2. 아파트 계약방법별 적용시기는 종합계약의 경우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하며, 단일계약의 경우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⑬ <삭제, 2022. 9. 1>

제 48 조의 2 (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 ①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 증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 사용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 (1) 가압상수도
 - (2) 비상재해복구시설
 - (3) 사설독서실
 - (4) 자동판매기운영업
 - (5)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 (6) 위 (1) ~ (5) 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 나.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
- 3.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협정사용량 등 정상적인 계량 실적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은 고장월분 중 유효하게 시현된 실적으로 부과한다.
- 4. 고객변동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시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변경시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월분 요금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나. 계약전력 증가 또는 감소시

계약전력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다. 전기사용용도 변경시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고객이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으로 초과사용 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며,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공급전압 변경시
 - 마.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시

고압 이상의 고객이 저압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저압고객이 고압 이상의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바. 계절이 변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 일수 비례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 5.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제1호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이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 중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

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을),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격월검침 고객은 제외한다.

6. <삭 제>

7.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고객에 대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은 약관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적용하는 고객은 약관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대구분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용(갑) 고압 및 산업용(갑) 고압 고객은 전력량계 교체시까지 약관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다. 대표고객이 심야전력 고객이거나 단일계약아파트 고객인 경우에는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해당월분 요금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사용부가금으로 부과한다.

③ <삭 제, 2013.11.21>

제 48 조의 3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

- ①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이하 “CPP요금”이라 한다.)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공급전압 22,900V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원격검침 고객
 2.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에 대응하는 전년도 동일 기간에서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사용전력량 중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점유비가 25% 이상인 고객. 다만 전년도 동일 기간에 유효하게 “CPP요금”을 적용 받은 고객은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 시행일 2일 전까지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CPP요금” 적용을 한전에 신청한 고객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나”목의 수요관리제도 약정 고객은 제3항 제1호의 “CPP요금” 적용기간 시행일 2일 전까지 수요관리제도 약정을 취소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CPP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세칙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다음의 고객
 - (1) 지식서비스산업
 -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3) 산업용 기타사업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받는 고객
 - 나. 다음의 수요관리제도 약정 고객
 - (1) 선택공급약관의 지정기간 수요조정제도, 주간예고 수요조정제도, 긴급절전 수요조정제도, 건물냉난방기기 원격관리시스템 지원제도, 민간부문 공급능력 활용제도
 - (2)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 지능형 수요자원시장
- ② “CPP요금” 적용계약 유지 및 요금적용 방법
1.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CPP요금” 적용요건을 유지하고, 적용계약의 해지나 변경이 없을 경우 “CPP요금” 적용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2.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향후 제3항 제1호의 동계 또는 하계에 제1항 제2호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은 유지하되, 해당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3. 매매, 상속, 합병 등으로 “CPP요금” 적용 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 약관 제12조(전기 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 ③ 피크일 지정일수 및 고객안내
1. “CPP요금” 적용기간
 - 가. 동계 : 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나. 하계 :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피크일 지정기준
- 가. 피크일은 동계, 하계 각각 10일(이하 “기준피크일 지정일수”라 한다.)을 지정하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계, 하계 각각 3일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할 수 있으며, 피크일이 아닌 나머지 날은 비피크일로 적용한다.
- 나. 피크일은 동일 주간에 3일을 초과하여 지정하거나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연속 2일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다.
3. 위 제2호와 달리 피크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요금조정률을 합산 적용하여 검침 월분 단위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을 재계산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 가. “기준 피크일 지정일수”보다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한 경우
- 요금조정률[피크일 추가시(감축시)] :
- [동계 : - 2.4%(2.4%), 하계 : - 1.9%(1.9%)] × 피크일 추가(감축) 일수
- 나. 불가피한 사유로 피크일을 집중 지정한 경우
- 요금조정률 :
- 0.2% × [동일 주간 3일 초과피크일 지정일수(a) + 평일 기준 연속 2일 초과 피크일 지정일수(b) - a · b 중복계산 일수]
4. 한전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해당일의 1주일 전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 지 시간별 사용전력량 조회 시스템(<http://pccs.kepco.co.kr>, 이하 “i-SMART”라 한다.)에 공지하고, SMS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한다. 다만 전력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피크일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일까지 피크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전은 피크일 지정 취소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고객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다음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동계는 1월 1일, 3월 1일, 하계는 7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산출
 2. 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
“i-SMART”의 시간별 계량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전력량
 3.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 “CPP요금” 적용기간의 해당 시간대 사용전력량에서 피크일의 해당 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4. 고객이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는 경우 대표고객의 피크일 및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 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CPP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나. 대표고객만 “CPP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1)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된 경우 :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 고객)의 피크일 및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을 배분하고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차감

(2)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세칙 제49조 제7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고 위 (1)에 따라 전체 (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차감

⑤ 요금의 계산

1. 요금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되,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은 세칙 별표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의 해당요율을 적용한다.
2. “CPP요금” 신청시 고객은 요금변동 상하한율($\pm 5\%$, $\pm 10\%$, $\pm 20\%$)을 선택하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산한 전력량요금에 요금변동 상하한율로 조정한 요금범위내에서 “CPP요금”의 상하한을 설정하여 계산한다.
3. 제1항의 “CPP요금” 적용요건을 상실하거나 전력량계가 고장인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4. 동계, 하계 각각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에 지정된 피크일수(A)와 동 피크일 중 고객기준부하 대비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사용량을 5%(산업용은 10%)이상 감축한 일수(B)의 비율(B/A)이 60% 이상인 경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과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하여 계산한 요금 중 낮은 요금을, 비율(B/A)가 60% 미만인 경우는 두 요금 중 높은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5. 위 제4호의 고객기준부하는 다음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피크일 직전 토요일, 공휴일 및 이전 피크일을 제외한 10일(이하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이라 한다.)을 선택하고 각 일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이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의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보다 $\pm 25\%$ 를 초과한 날을 제외한다.

나. 휴가 또는 설비보수 등의 사유로 고객기준 부하 산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이 해당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한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을 고객 기준부하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위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기간이 10일인 경우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의 최대 2일 및 최소 2일을, 9일인 경우 최대 2일 및 최소 1일을, 8일인 경우 최대 1일 및 최소 1일을, 7일인 경우 최대 1일을 제외한 기간을, 1~6일인 경우는 해당 기간을, 0일인 경우는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을 기준으로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을 산출하고 이를 고객기준부하로 적용한다.

라. 약관 제25조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대표고객에 대한 위 가~다 목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은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고객기준부하 산정대상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의 시간별 데이터 취득률(C)이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9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기준부하를 보정한다.

$$\text{○ 고객기준부하(보정후)} = \text{고객기준부하(보정전)} \div \text{데이터 취득률(C)}$$

⑥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사용전력량 협의결정

1. 통신시스템 이상 등으로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별 전력량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에는 전력량계에 계량된 검침월분 정기지침의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 사용량을 한도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다만, 고객 귀책이 아닌 사유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3호에 따라 정산한다.

⑦ 한전은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크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한다.

1. ‘피크적용기간’의 한전에서 예측한 예비력이 500만kW 이상일 때
2. 수급여건상 수요관리가 불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 48 조의 4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 ①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공급전압 154,000V 이상으로 공급받는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고객으로서 별지 1-2호 서식에 따라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을 한전에 신청한 고객
 2. 세칙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다음의 고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지식서비스산업
 -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 ② 고객이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를 신청한 경우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요금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1. 공급전압을 154,000V 미만으로 변경하거나 일반용전력(을)·산업용전력(을)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하는 경우
 2.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업종 변경 등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계절 또는 시간대구분 변경 등 요금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③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고객에 대한 요금계산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은 세칙 별표10 수요 관리형 선택요금표(Ⅱ)에 따라 계산하며, 별표11(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정한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 48 조의 5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 ①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에 따른 주택용전력 고객이 희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은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이하 “계시별 선택요금”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고압아파트 개별세대는 계시별 선택요금 적용을 위한 시간대 구분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전력량계로부터 수신한 사용량을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에 따라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한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거용 고객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등)에 의해 인증된 지열·공기열 설비를 설치한 주거용 고객(단, 제주특별자치도 외 주거용 고객 중 약관 제5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일반용전력을 별도 적용 중인 경우 제외)

- ② “계시별 선택요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대별 구분 사용량은 검침일에 전력량계의 지침을 읽거나,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에 따른 검침기간에 수신한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한다.
- ③ 위의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시별 선택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

1.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에 해당하는 고객
2. 기술적 사유 등으로 제①항에 따른 시간대 구분 전력량계 설치 및 시간대별 구분 사용량 제출이 어려운 고객
3. “계시별 선택요금”을 적용받다가 약관 별표1의 주택용전력 요금으로 변경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

- ④ 새로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이 “계시별 선택요금”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 공급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적용하고, 기존의 고객이 “계시별 선택요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변경을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때 “계시별 선택요금”으로 변경한 고객은 변경 후 1년이 경과해야 기존의 주택용전력 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단 변경 전·후 계약전력이 5kW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시별 선택요금”의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
3. 전기사용계약자 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계시별 선택요금”을 적용하는 고객의 요금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및 슈퍼유저요금은 세칙 별표12(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요율을 적용하며, 계절 및 시간대별 구분은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를 준용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계절이 바뀔 때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한다.

- ⑥ “계시별 선택요금”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칙 제62조(일수 계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1.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또는 재사용하는 경우
2.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3.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시별 선택요금”을 새로이 적용하거나 주택용전력 요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 48 조의 6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①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하 “캐시백”이라 한다)은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고객(약관 67조 3항 및 4항에 따라 요금계산하는 고압아파트의 경우는 개별세대에 한함) 중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약관 제67조 제11항에 따른 비주거용 고객
2.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
3.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전년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4. 캐시백 이외에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소비자 행동변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고객
- ② 캐시백 참여신청은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 중인 사용자(주민등록표 상 구성원)가 하여야 한다.
- ③ 고압아파트 개별세대의 캐시백 산정은 고압아파트에서 한전에 제출한 개별세대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캐시백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매월 산정한다.
- ⑤ 해당월분 절감량, 절감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해당월분 절감량(kWh)

해당월분 절감량 = 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 사용전력량 - 해당월분 사용전력량

2. 해당월분 절감률(%)

$$\text{해당월분 절감률} = \frac{\text{해당월분 절감량}}{\text{직전 2개년 동월분 평균 사용전력량}} \times 100$$

3. 직전 2개년 중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만 있는 경우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⑥ 캐시백은 매월 3% 이상 절감률을 달성한 고객에 대하여 해당월분 절감률이 속하는 달성 절감률 구간의 단가를 전체 절감량에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절감량은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을 한도로 한다.

달성 절감률 구간	3% 이상 ~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이하
단 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⑦ 매월 산정한 캐시백은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한다. 다만, 해당월 캐시백 산정 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은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⑧ 전력소비가 많은 저녁시간대 전력사용량 절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적용고객 중 저녁시간대 추가 캐시백(이하 “추가 캐시백”이라 한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추가로 적용·산정한다.
1. 주택용 고객에 한하여 적용하며, 단일계약 아파트 개별세대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이상의 동일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2. 추가 캐시백 적용 대상 시간대(이하 “저녁시간대”라 한다)는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17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3. 일별 절감량은 제2호의 저녁시간대에 해당하는 직전 2개년 평균 사용전력량과 해당 연도 동일 시간대 사용전력량의 차이로 산정한다. 다만, 직전 2개년 중 1개년의 자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월 절감량은 해당 월의 피크시간대 일별 절감량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추가 캐시백은 월 절감량에 kWh당 500원을 곱하여 산정하며, 월 지급한도는 10,000원으로 한다.
 6. 시간대별 계량자료가 일부 누락된 경우 등 세부 운영기준은 한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 48 조의 7 (주말 할인요금)

- ① 주말 할인요금은 산업용전력(을)·전기자동차 충전전력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주말 할인요금의 적용기간 및 적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적용기간 :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봄·가을철(3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
 2. 적용시간 :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의 공휴일 11:00~14:00,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11:00~14:00
- ③ 주말 할인요금 계산을 위한 해당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원격검침 가능고객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에 따른 검침기간에 수신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으로 한다.
 2. 원격검침 불가고객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에 따른 검침기간에 전력량계에서 추출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으로 한다.

3. 안전, 기타 기술적 사유 등으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수신 또는 추출하기 어려운 경우, 동일 유형 고객의 평균적인 할인시간대 사용전력량 비중을 통해 산정하고, 정확한 사용전력량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요금을 재계산할 수 있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37조 제1항 단서 조항 등에 따라 부설된 전력량계로부터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수신 또는 추출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시행세칙 제54조에 정하는 방법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주말 할인가 적용기간 및 적용시간의 전력량요금은 50%를 할인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⑤ 제3항 제3호의 동일 유형 고객에 적용하는 평균 사용전력량 비중은 전년도 계절별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 결과는 매년 3월1일 전까지 한전 홈페이지 (<https://www.kepco.co.kr>)에 게시한다. 평균 비중은 봄철과 가을철을 나누어 적용하며, 고객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용(을)

고압A, 고압B, 고압C
 2.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에서 정하는 적용대상별(단, 고압과 저압을 구분한다.)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 ① <삭 제, 2004. 3. 16>
- ②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일 전일까지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감소일 이후는 감소 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이 때 예상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예상 최대수요전력} = \text{감소전 최대수요전력} \times \frac{\text{감소후 계약전력}}{\text{감소전 계약전력}}$$

- ③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되, 계약전력 증가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계약전력 증가 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전·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 따라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다.
2. 계약전력 증가 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약관 제 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기간계산은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의 검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④ 약관 제68조 제4항의 명의 변경은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된 경우이고, 업종 변경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이상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 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나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 전력량계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허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 거래용 전력량계 부설시까지 참고용 전력량계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전력량계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
 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직전월분 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임시

철거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5항 제3호는 한전소유의 전력량계를 시설한 고객과 한전 책임으로 3개 조정월을 경과한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고장, 시험 등으로 임시철거 후 재설치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최초검침시 다시 고장일 경우에는 재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시철거기간의 계속으로 처리한다.
 3.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시험결과 고장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시철거월에 최대수요전력계가 고장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정산한다.
- ⑦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전력 결정
 - 가.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이용 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 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을 균분하여 다시 결정한다.
 2. 전력량계 유형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하고, 동일 유형 전력량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부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조정한다.

공동이용고객 유형	대표고객 최대수요전력 (공동이용고객 D/M 미설치)	대표고객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 설치)
24시간 전력을 균등 사용하는 고객 [통신방송중계소, 신호등 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대표고객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 간대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 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야간에만 주로 전력을 사용 하는 고객 [가로등, 경비초소 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 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 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 를 차감	대표고객의 야간시간대(18:00~09: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 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심야전력(갑) - 심야전력(을) I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 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하지 않음. 다만, 대 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과다 시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조정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경부하시 간대 사용전력량에 공동이용고객의 사용 전력량을 차감
대표고객의 시간대별 사용전 령비율과 유사한 고객 [주택용전력, 일반용(갑) I, 산업용(갑) I, 임시전력 등]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 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 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 를 차감	-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 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다른 계약종별과 심야전력(갑)·심야전력(을) I 고객이 공동이 용하는 경우 심야전력(갑)·심야전력(을) I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먼저 차감 후 나머지 사용전력량의 시간대별 비율로 다 른 계약종별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을 배분하여 차감 -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시간대별 사 용전력량 비율 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동이용 고객이 속하는 업종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 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심야전력(을) II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 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 객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은 차감 하지 않음	- 경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의 경부하시간 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 기타 시간대 : 대표고객의 기타시간대 (09:00~23: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 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대표고객만 수요관리형 선택 요금 II를 적용받는 경우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 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 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 를 차감	- 경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구 분계기를 미설치한 경우 위의 방법에 따 라 산정 후 차감하고, 시간대구분계기를 설치한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경부하시간 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 기타 시간대 : 대표고객의 기타시간대 (09:00~23: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 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나.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 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고장직전 3개월간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의 평균치를 차감한다.
- 다. 설비의 변경 없이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른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리로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상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 3.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한 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량 조정
 - 가. 자가발전기를 설치한 공동이용고객의 자가발전량은 해당 고객의 사용량에서 차감하고, 차감 후 사용전력량이 '0'보다 적을 경우에는 '0'으로 간주한다.
 - 나.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자가발전량을 차감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한다. 다만, 자가발전량을 차감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보다 클 경우 해당 잉여전력량은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에서 차감한다.
 - 다.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공동이용고객은 대표고객의 수전 전력량계와 동일한 유형의 자가발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한다.
- 4. 저압계량하는 공동이용고객 중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의 시간대별 사용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표고객이 시간대 구분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위 제2호 “가”에 따라 대표고객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차감한 사용전력량을 공동이용고객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으로 적용한다.
 - 나. 대표고객이 시간대 구분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별표3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에 따른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적용한다. 단, 공동이용고객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차이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이 속하는 업종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적용한다.
- ⑧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전기철도사업 중 열차운행용 전기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최대수요전력은 각 수급지점의 전철변전소별로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각 수급지점의 전원측의 사유로 정전이 발생(전철사업고객 요청에 따른 정전은 포함하되, 이 경우 정전시간이 15분 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정전 전철변전소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정전 전철변전소 : 정전당월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 나. 정전 인근 전철변전소 : 정전시간대를 제외한 당월 중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전철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전철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전력공급계통을 원래의 전력공급계통으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전철운행 중지시간까지를 정전시간으로 본다.
3. 2002. 1. 15 이전에 호선단위로 전기사용장소를 확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각 전철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의 합계치로 하며, 공급선로 정전시 전철변전소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위 제2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 ⑨ 지하철구내 임대점포가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와 임대점포별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하 철 공 사	임대점포
최대수요전력	• 각 공급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에서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합계를 차감	-
요금적용전력	•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	•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사용전력량	• 각 공급변전소별 사용전력량에서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

- ⑩ 휴지 · 재사용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이 때 전기설비 점검을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2. 재사용후 최초 검침일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이 없거나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휴지 전 요금적용전력을 우선 적용하고,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소급 정산한다. 이 경우 고장기간이 3개 조정월을 경과하거나 재사용후 3개 조정월 이내에 휴지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급정산하지 않는다.

- ⑪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 중 약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3항에 따라 고객부담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소유하고 있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한전측 사유로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경우,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⑫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에 따라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2. 합성계량장치가 고장인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 다만, 고장 월을 포함한 3개월까지는 동시간대 각 회선별 15분간 계량데이터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3.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2회선 이상을 수전하는 고객이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회선별 전력량계의 지침을 합산하여 최대수요전력을 결정한다.

제 50 조 (검침일)

-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검침하기 위해 방문한 날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69조(검침일) 제3항에 따라 검침하지 않은 달은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 ③ 고객이 정기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정기검침일을 변경한 고객은 1년 이내에 이를 다시 변경할 수 없다.
 - 1. 원격검침 고객의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날짜로 정기검침일 변경
 - 2. 원격검침 이외 고객의 경우 한전과 고객이 협의하여 정기검침일 변경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 ① 전기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직후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4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 ② 정액제요금 고객의 경우에는 그 고객이 속하는 검침구역의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 ③ 기록형전자식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으로서 검침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전월 정기검침일 다음날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을 정한 고객이 전기공급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다음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를 요금계산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한 달의 사용전력량은 원칙적으로 전달의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다음번 검침 결과에 따라 1개월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 ② 계량점의 전압은 수급지점의 전압인 공급전압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이나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손실전력 및 손실전력량에 대한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지점 이외 지점에 공급전압과 동위전압의 계량점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선로손실량을 한전이 부담한다.
 2.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손실전력과 손실전력량을 고객이 부담한다.
- ③ 계기용변성기가 결상된 경우 최대수요전력은 제54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으로 협정한다.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전력량의 협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 ① 전력량계,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정수(整數)까지 검침한다. 다만, 배수(倍數)를 적용하는 전력량계는 배수 계산 결과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이 정수(整數)가 되는 소수(小數) 부분까지 검침한다.
- ② 전력량계의 숫자나 눈금이 중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은 숫자로 검침한다.
- ③ 주택용전력 고객의 건물이 철거되었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빈집 등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발행하고 다음달 검침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① 약관 제72조(사용량 등의 협의결정)의 “세칙에서 정한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frac{\text{직전 3개월의 실적치}}{\text{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text{협정치} = \frac{\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치}}{\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사용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text{사용설비용량(입력kW)} \times \text{1일 사용시간}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4.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frac{\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적치}}{\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사용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다만, 요금의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한전의 변전소 기록에 따른 방법 :

변전소에서 직접 고객소유 전기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설비로 공급받는 고객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의 기록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6.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

참고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7.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text{계량된 전력량} \div \{100\% + (\pm \text{오차율})\}$$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일 또는 한전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협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실적월과 협정월간의 계약전력이 다를 경우의 사용 전력량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정치에 다음 수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text{수정률} = \frac{\text{협정월의 계약전력}}{\text{실적월의 계약전력}}$$

이 때, 실적월 또는 협정월의 중간에 계약전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감안한

다음의 가중평균 계약전력을 구하여 적용한다.

$$\text{가중평균 계약전력} = \frac{(\text{구계약전력} \times \text{구사용일수}) + (\text{신계약전력} \times \text{신사용일수})}{\text{검침기간중의 실사용일수}}$$

- ③ 고객이 희망하고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협정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설비용량 산정은 제12조(계약전력 산정)을 준용하되, 한전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1.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입력으로 환산한다.
2. 소형 통신중계기 등의 사용설비 용량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시험성적서에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모두 표시된 때에는 피상전력에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통신중계기의 상용운전 상태에서의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 ④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5항의 협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검침기간중 신(구)전력량계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적

$$\text{협정치} = \frac{\text{신(구)전력량계 사용전력량}}{\text{신(구)전력량계 사용일수}} \times \text{협정 대상일수}$$

2. 신 전력량계나 구 전력량계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월 사용실적

- ⑤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고객과 협의한다.

1.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2.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3. 한전 변전소의 기록에 따른 방법
4. 전력량계 교환 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5. 전력량계 교환 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 ⑥ 제5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전년동월실적, 전월실적, 직전 3개월 평균실적)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다.

- ⑦ 전력량계 고장, 손상, 도난 및 고압 전력량계 철회 · 부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기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력량계 설치 없이 송전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전력량의 협정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및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 ①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시간대별로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에 준하여 협정한다. 다만, 해당 월의 총사용 전력량은 알고 있으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모를 경우 및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 경우에도 총사용전력량은 약관 제72조에 따라 협정한다)에는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협정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각 시간대별 협정치} = \text{당월 총사용전력량} \times \frac{\text{직전 3개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text{직전 3개월간의 총사용전력량}}$$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각 시간대별 협정치} = \text{당월 총사용전력량} \times \frac{\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총사용전력량}}$$

3.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각 시간대별 협정치} = \text{당월 총사용전력량} \times \frac{\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에 따른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따른 총사용전력량}}$$

다만, 요금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이 약관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아래와 같이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시간대구분 전력량의 실제 작동시간 오차에 따른 협정시 실적월과 협정월이 계절별로 다른 경우에는 주간시간대 및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계절에 따른 각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협정한다. 이 때 전체사용전력량은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협정월과 실적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여름철 일요일 사용실적을 조정한 후 협정한다.

3. 오차가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 15 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협정월 총사용전력량 $\times$ 고객의 동계(同季) 각 시간대별 사용비율
이 때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 15 분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그 밖의 계절과 여름철에 걸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밖의 계절과 여름철로 구분하여 사용일수 비례로 협정한다.

4. 계절변경일을 기준으로 ± 1 일 이상 차이나는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frac{\text{오차조정일부터 검침시까지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text{오차조정일부터 검침전일까지의 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 단 1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 56 조 (전력량계의 오차율 측정)

전력량계의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전력량계의 오차율

전력량계의 오차율은 다음 표에 따라 당월 또는 전월 사용량에 따른 월평균 부하전류에 해당하는 시험점 부하전류에서의 오차율을 적용한다.

구 분	월평균 부하전류	시험점 부하전류	사용공차(%)
보통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50이하 정격전류의 1/5초과	정격전류의 1/5 정격전류의 1/2	± 3.0 ± 3.0
정밀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100이하 정격전류의 1/10초과	정격전류의 1/10 정격전류의 1/2	± 2.2 ± 1.5
특별정밀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100이하 정격전류의 1/10초과	정격전류의 1/10 정격전류의 1/2	± 1.1 ± 0.8

다만, 월평균 부하전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단상 전력량계의 경우

$$\text{월평균 부하전류} = \frac{\text{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720(\text{시간}) \times \text{공급전압(V)}}$$

나. 삼상 전력량계의 경우

$$\text{월평균 부하전류} = \frac{\text{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1,247(\text{시간}) \times \text{공급전압(V)}}$$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오차율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pm 4\%$ 로 하고, 오차율은 정격전류와 정격전류의 1/2 전류에서 측정한 오차율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일”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차수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검침일	1~5	8~12	15~17	18~19	22~24	25~26	말일
납기일	당월 25	당월 말일	다음달 5	다음달 10	다음달 15	다음달 20	다음달 18

- ②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별도로 정한 도서지역
 2. 인터넷 또는 휴대폰으로 요금을 청구하고 자동이체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으로서 한전과 납기일 선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라 고객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 ③ 납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다음날로 하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또한,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④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인편, 우편 또는 전자고지(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전자고지의 방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요금 청구서의 우편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되 납기일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한다. 이 때 납기일 경과후 1개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다.
1. 한전의 책임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2. 우편물 폭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3. 기타 한전에서 송달지연을 인정한 경우
- ⑤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당월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소액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 ⑥ 약관 제74조 5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란 저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kW 이하의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과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는 아파트의 개별세대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여름(7, 8, 9월 청구분) 및 겨울철(12, 1, 2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기타 계절 중 직전월(6월, 11월 청구분) 요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경우
 - 2. 여름(7, 8, 9월 청구분) 및 겨울철(12, 1, 2월 청구분)의 월 요금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제 57 조의 2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 ① 약관 제74조의 2(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전력량계의 이상 여부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위 제1항의 성능시험은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제5항을 따르며 성능시험에 소요된 기간에 30일을 합산한 기한 내에 고객에게 요금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한다.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 ① 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 ②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8 조의 2 (추가청구 요금의 분할납부)

- ①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추가청구한 요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분할납부기간은 요금이 잘못 계산된 기간을 한도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은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5항을 준용한다.

제 59 조 (연체료)

- ① 주한 외국군부대, 주한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요금을 연체한 고객의 요금계산이 잘못되어 재계산할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당초의 요금에 추가하는 금액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③ 약관 제76조 제3항 및 세칙 제57조 제6항에 따른 분할납부 대상 금액에 대하여 분납 당월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60 조 (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 ①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1항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납기관 및 수납대상은 한전과 수납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 1. 금융기관(한전 사업소 포함) 납부
 - 2. 신용카드 납부
 - 3. 편의점 납부
- ② <삭 제>
- ③ 고객이 요금, 시설부담금 등을 한전에 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날은 다음과 같다.
 - 1. 금융기관의 고객 예금계좌에서 한전 예금계좌로 이체 : 고객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날
 - 2. 한전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 한전 예금계좌 입금일
 - 3.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사의 카드납부 승인일
 - 4. 금융기관(한전 사업소 포함) · 편의점 납부 : 해당 수납기관에 입금한 날

제 61 조 (요금의 보증)

- ① 임시전력 고객의 보증금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예정 기간보다 3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위의 제1호를

준용한다.

나. 제1호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 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3. 전력량계 등을 부설할 수 없거나 전력량계 등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

②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임시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5kW 이하 고객은 제외
3.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고객. 다만, 약관 제76조 (요금의 재계산에 따른 환불 및 추가청구) 제3항에 따라 한전의 잘못으로 요금을 추가청구하여 분할납부하는 고객은 제외한다.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5. 부도,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법원판결에 의해 회생개시가 결정된 경우 연체가 없는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보증설정을 하지 않는다.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7.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③ <삭 제>

④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3항 각호의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제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1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분납요금이 완납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⑤ <삭 제, 2013.11.21>

⑥ 보증금 이자계산을 위한 예치일수 산정시 예치일은 포함하고 지급일은 제외하며, 이자 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환불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상 보증금을 예치한 후 이자의 지급을 요

청하는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이란 3개월분 산정시 요금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약종별·공급전압 고객이 수급개시 후 1년간 사용한 kW당 월평균요금에 대해 해당 고객의 계약전력을 곱하여 3개월분 요금을 추정한 것을 말한다.
- ⑧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 또는 세칙 제 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할 경우 또는 단전·화의·화생 절차 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이 연체된 전기요금 없이 다음 달 예상전기요금을 당월 전기요금 납기 내에 2회 이내로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 1. 2년 이상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하는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 2. 최근 2년 동안 전기요금을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 ⑨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의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이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상위 93% 이상의 개인신용평점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한전이 직접 신용점수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⑩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점수는 제9항의 신용점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⑪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단서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고압공급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⑫ 보증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고객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고객은 보증금을 1년 이내 매월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⑬ <삭 제, 2019.11. 1>

제 62 조 (일수계산)

- 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서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 1.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休止) 또는 재사용하는 경우
 - 2.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 3.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
 - 4.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계약전력 3kW 이하 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나. 계약전력 5kW 이하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전력 고객이 주택용전력 5kW 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다. 주택용전력 5kW 이하 고객이 일반용 · 교육용 · 산업용전력 5kW 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라. 임시전력 5kW 이하 고객이 다른 임시전력 5kW 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마. 농사용전력 5kW 이하 고객이 다른 농사용전력 5kW 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5. 정기검침일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 6.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 7. 선택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 8.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 또는 세칙 별표12(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 9. 약관 별표 7(기후환경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및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신 · 구 고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경우의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 1.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 2.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전 · 후 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하여 계산 하되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일수는 수급개시일 및 재사용일을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 제7호 · 제8호에 따라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변경 후 요금을 적용한다.
 - ④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침(이하 “중간 검침”이라 한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한 전후 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 산정할 수 있다.
 - ⑤ 요금의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1\text{개월 해당요금} \times \frac{\text{일수계산 대상일수}}{\text{월력(月曆)일수}}$$

- 2. 전력량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가. 주택용전력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1.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다

음과 같이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 비율로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text{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frac{\text{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text{일수계산 대상일수}} \times \frac{\text{월력(月曆)일수}}{\text{일수계산 대상일수}}$$

나. 주택용전력 고객 중 계시별 선택요금 적용 고객 및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1kWh당 전력요금 × 사용전력량

제 63 조 (요율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

- ① 계약전력 1,000kW 미만 고객은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 · 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하며,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검침은 생략할 수 있다.
- ②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은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요율변동 전 · 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전력 적용고객(아파트 고객 포함)은 중간검침 없이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 · 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 ① 수급개시일까지 한전의 책임으로 수급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개시가 가능하게 된 때에 고객의 전기 사용의사를 재확인하여 전기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의 “일정 계약전력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이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계약전력 499kW 이하의 농사용전력 고객을 말한다.
- ③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장기간 휴지 및 미사용 고객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및 시설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농사용전력(갑) 5kW 이하의 고객은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09. 9. 1 개정)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 휴지중인 고객으로서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고객이 계속적인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9 장

시 설 부 담 금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 ① <삭 제, 2024. 2. 1>
- ②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전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적 · 경제적으로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③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표준시설 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은 제외한다.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 시설부담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동 선로를 이용하여 22,900V 이하 일반공급설비로 단지내 신증설 고객에게 상시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22.9kV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3. 제10조(전기사용장소)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 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4. 제14조(저압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제5항에 따라 직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5. 공급설비 설치비용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상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적용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중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약관 제84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지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저압공급 대상고객으로서 인입선을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지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지중거리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④ 지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지형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중으로 시설하여 공급할 경우에 공중시설구간은 공중공급대상 지역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압강하, 선로용량 부족, 장래 수요전망 등 한전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지 않고, 원거리에 위치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 공사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22.9kV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실공급지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⑥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의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다.
- ⑦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철탑이나 해저케이블을 시설하여 22,900V 이하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란 기준에 철탑이 설치된 구간에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⑧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의 “한전이 인입선만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란 한전이 인입선을 설치·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 ①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역(이하 “주택단지”라고 한다)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공사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법 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를 준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전기간선시설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단지 경계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며, 개폐기 · 애자 · 완철(전선지지대)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은 공중(특고압 또는 저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지중설치시)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에 의거 개발되는 주택단지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지(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가장 가까운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 밖의 개별 주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2003. 12. 30, 2007. 8. 3 개정)
- (2) 위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가. 설치범위

- (1)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지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 · 개폐기 · 전선 · 애자 · 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 · 인입개폐기 · 인입케이블 및 저압수전 아파트 구내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사업주체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포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 (1)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공중 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간선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3.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한 경우에는 표준시설 부담금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1)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를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 경우
 - (2) 1999. 4.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주택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22,900V로 공급하는 고객
 - (3) 2003. 11. 3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택단지에서 전기간선을 지중으로 시설하고 사업주체가 지중-공중 공사비의 차액을 부담한 경우
- ② 산업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표 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른다.
 2. 산업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
 -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별표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의 설치방법 및 시기를 준

용하되 사업주체로부터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에 설치한다.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라.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③ 위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단지로서 해당 법령에 간선설치 범위 및 비용부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와 부담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 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를 준용하는 지역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 등

2. 업무처리방법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단지 안의 6m 이상 도시계획도로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까지 설치하며, 개폐기 · 애자 · 완철훈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 (1) 단지 안 6m이상 도시계획도로상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 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 · 개폐기 · 전주 · 애자 · 완철훈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 · 인입 개폐기 · 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 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중(地中)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 하되, 아래 ‘라’의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비 부담

(1)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전기간선 설치공사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전기간선시설을 지 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위 (1)에도 불구하고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3) 단지 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마.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 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일반 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④ 기타 조성단지에 대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업무처리방법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밖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 등)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1) 조성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 (맨홀, 핸드홀, 간선개폐기 등)까지로 하되, 인입관로·개폐기·전선·애자·

완철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 · 인입 개폐기 · 인입관로 · 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 · 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에서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

-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에서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입금할 경우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설치하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마. 개별고객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⑤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 승인권자로부터 단지개발계획의 실시 계획 승인내역이 통지되면 한전은 사업주체에게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주체(한전), 설치범위, 설치방법(공중 · 지중, 적용공법 등), 설치시기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계약을 작성한다.
- ⑦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거나, 동일 실시계획으로 공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서상의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한전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한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간선시설(철탑 또는 전력구)을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91조

-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 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철탑 및 전력구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
-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조성단지내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선로가 동일한 경과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지중 또는 공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에서 공동구를 이용하여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대한 전기간선 설치비용은 전체 공동구 설치 공사비 중에서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에 전기간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전기통신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 수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수용되는 공간의 단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제10항에 따라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관련 법령에 의해 개발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체 부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전력구(공동구를 포함한다)는 사용 회선수 비율, 관로는 사용 공수 비율로 부담한다.
1. 조성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단지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공사비
 2. 케이블 고장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예비관로의 공사비
- ⑫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시기는 공사비가 입금된 후 단지조성시점에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나 부하전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사비는 전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5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의 설계시설부담금 산정은 제73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 ② 설비변경 전의 시설부담금으로서 차감할 금액은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과거 신규관련서류 또는 고객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고객이 설비변경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2.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 상태에서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차감한다.
- ③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설비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④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설비 신·증설 또는 공급설비의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특별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특별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⑥ 한전이 미리 설치한 전주나 지중 관로(전력구·공동구 포함) 등의 기존 공급설비를 이용하여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⑦ 제14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존 공급설비를 보강하거나 변전소 간 부하분리 공사를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특별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의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단, 해당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사 범위를 초과하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단서의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고객명의를 다른 경우 포함)
 2. 건축허가서(건축물 불요고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 사본을 제출
 3.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4.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사용장소 동일

5. 임시전력 인입선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 · 소유
- ③ 상시공급설비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상시전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상시공급분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적용한다.
 - ④ 임시전력 사용기간 만료후에 상시계약종별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았던 고객이 임시 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상시계약종별로 변경되더라도 임시공급설비에 대한 시설 부담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 ⑤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다른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을 신청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2 이상의 고객이 모두 임시전력 고객인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약관 제90조(공동 시설부담금의 부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2. 2 이상의 고객이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전력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전력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 임시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상시전력 공급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⑥ <삭 제, 2019.11. 1>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의 사정으로 긴급한 전기공급 요청이 있어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하되, 변압기 · 개폐기 · 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잠정공급설비 철거공사비는 환입자재비를 제외 후 고객이 부담한다.
- ② 한전의 계획에 따라 기존 공중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지역에서 한전 사정으로 지중 배전 선로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중 배전선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 할 수 있다.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공급설비 변경전”이라 함은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시설부담금 산정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는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용한다.
-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 변경전 저압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변경후 특고압 시설부담금은 기본 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계약전력 증가와 동시에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큰 것을 적용한다.
 - ④ 약관 제29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에 따라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기술기준” 및 한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설비를 보강하는 경우에는 설계 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도로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소유선로가 철거되거나, 철거예정으로 인하여 한전 선로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⑥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으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이용 고객이 한전 선로에서 별도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에 준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⑦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가로등(갑)”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고객이 “가로등 (을)”로 전기사용계약단위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합병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의 차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⑧ <삭 제, 2017. 8.28>
 - ⑨ <삭 제, 2017. 8.28>
 - ⑩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 “가”의 단서의 “전기 사용계약단위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의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기본 시설부담금만 해당한다.
 - ⑪ <삭 제, 2017.12.18>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 ①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제1항의 “2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한전이 동일설계한 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이 전기사용신청을 한 경우

3. 집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 따라 고객 사이의 시설부담금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공동시설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거리시설 부담금을 공용고객 호수(戶數) 비율로 분담한다.
 - ③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공용고객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④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리시설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객(이하 “최초 고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한 단독 거리시설부담금과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에서 다른 고객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시설부담금에 단독구간의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한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2. 최초 고객 이외의 고객인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된 것으로 보고 직전 고객과의 공용이 끝나는 지점을 측정기점으로 정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시설부담금과 앞에 있는 고객들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것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본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한다.
 - 가.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거리에서 차감한다.
 - 나.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선로 구간에서 차감하며, 공용선로 구간에서 분기되는 단독선로 구간의 거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단독선로 구간에서 차감한다.
- ⑤ 공급전압이 서로 다른 고객이 혼재되어 동일설계로 처리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분담은 상위 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설비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 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용구간에 대한 공동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2. 지중 환상(Loop) 방식으로 전기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공급여력, 상시

전력과 예비전력, 전원측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독구간 이외의 신설구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⑦ 제6항의 경우로서 단독구간에 해당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이 경우 “단독구간”이라 함은 해당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기점(지중 특별고압 Loop 방식인 경우에는 π 분기점에 해당하는 개소)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 ① 한전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에 고객소유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지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회선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② 한전 소유의 지중관로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지중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관로 공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관로내경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한전 소유의 전력구를 이용하여 22,900V 이하의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력구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④ 고객이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 ⑤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본문 단서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란 한전소유의 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를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벽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구획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 ①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의 “공급준비 착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인입선 또는 외선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개시일
 2. 인입선공사만 필요한 경우에는 인입선공사 시공지시일
 3. 외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선공사 시공지시일 또는 외선공사 입찰공고일(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일)
 4. 특수물자(철탑, 해저케이블 등)가 필요한 경우로서, 제3호의 경우 이전에 물자를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자 발주일

②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 단서의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기사용신청 고객은 희망에 따라 전체 시설부담금의 2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 시설부담금은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급개시 이후 잔여 시설부담금 납부를 희망하는 고객은 아래 조건으로 2년 이내에 매월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가. 고객은 수급개시 이후에 납부하는 잔여 시설부담금에 대하여 수급개시일부터 이자를 부담하며 이자율은 전년도말 한전 차입금 가중평균 이자율을 적용한다.

나. 고객은 이행보증보험에 의한 보증, 지급보증, 근저당설정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사비부담계약 체결전까지 잔여 시설부담금 납부에 대한 보증을 설정한 후 한전에 제출하며, 보증금액은 잔여 시설부담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고객이 잔여 시설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전은 고객에게 통보 후 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한전의 귀책사유로 시설부담금 추가 청구에 따라 고객이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보증을 면제한다.

2.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 주택단지 · 산업단지 ·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로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 시설부담금은 단지조성완료일 전까지 3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③ 시설부담금 및 공사비의 정산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의 설계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작성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한전의 귀책사유로 시공 또는 공급이 지연되어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의 추가공사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재료비는 출고가액(출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가액 또는 지입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금액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집행금액에서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철거후 재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 그룹별 평균신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철거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설치수량을 초과하여 철거 환입되는 물자는 설치물자와 동일수량, 동일규격 이하의 물자가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 라.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보다 철거 환입물자가액이 클 경우에는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을 잔존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선(銅線)을 알루미늄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동선과 같은 규격의 알루미늄전선이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5.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시설부담금을 수납한 후 설계 또는 시공변경으로 시설부담금이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전에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
6.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으로 수급개시일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정산한다.
-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 발생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환불한다. 다만, 공급설비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20,000원을 차감한 후 환불한다.
- 나. 이미 설치한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7.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제12항 따라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조기 일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시설부담금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실소요 비용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다.
- 나. 단계적 설치 계획에 따른 잔여 시공분의 경우 도급비 또는 감리비는 설계시설부담금에 해당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자재비는 정산시점의 출고단가와 지입단가를 적용한다.
- ④ 표준시설부담금을 청구한 이후에 계약전력 또는 신설 · 첨가거리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청구하거나 환불한다.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물 또는 장거리 등으로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도상의 축척으로 산정할 수 있다.
- ② 고객소유의 인입소주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측정기점은한전 전주와 고객소유의 인입소주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있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삼상배전선로에서 직접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과 삼상 배전선로에서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⑤ 2상 3선식 공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3상 4선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공급 가능한 측정기점이 되는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맨홀, 핸드홀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로구성과 관계없이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한다.
- ② 지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이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삼상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 ③ <삭 제, 2017. 1. 1>
- ④ 지중공급지역 또는 지중공급 인접지역에서 이면도로변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및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공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공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지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지중 또는 공중)를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지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에서 정하는 입상거리와 연장거리를 합한 것으로 한다.
 1. 입상거리(立上距離) :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종단(Cable Head) 단자(端子)까지의 수직거리”와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측정기점)의 케이블 종단접속점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2. 연장거리(延長距離) : 수급지점에서 측정기점까지의 지표면상 평면거리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

-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되는 설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설설비로 한다. 이 경우 “기설설비”라 함은 당해설비 준공검사보고서상의 실준공일 이후의 설비를 말한다.
- ② 고객소유의 선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용공급”이라 한다)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고객소유 선로에서 분기하는 지점(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 ③ 공용공급중 고객소유의 선로가 철거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가능한 한전 전원측 배전선로(측정기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거리 중 제2항의 거리를 차감한다.
- ④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공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 준공 이후에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그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 ⑤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이거나 철거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 ⑥ 동일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 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별개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 각각의 측정기점은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⑦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거나 공중배전선로와 지중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거리시설부담금 = A + B + C + D

A=(공중신설거리-200m)×㉑

B=[지중신설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㉒

C={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 지중신설거리]×4}×㉓

D={저압 첨가거리-[(200m-공중신설거리)×¼-지중신설거리]×4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㉔

※ 각 산식내의 계산된 수치가 음수(-)일 경우에는 “0” 으로 간주한다.

㉑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공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㉒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지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㉓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㉔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저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⑧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비전력의 측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예비전력(갑)은 동일변전소에서 공급중인 상용전력 이외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준으로 적용한다.

2.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 공급변전소 이외 다른 변전소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준으로 적용한다.

⑨ 약관 제62조(가로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용설비 1kW 미만의 고객으로서 다른 공급설비의 신설이나 변경이 수반되지 않고, 고객소유 인입선만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시설부담금을 감액 또는 면제한다.

1. 고객소유 인입선을 한전이 설치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의 40%를 감액한다.

2. 고객소유 인입선을 고객이 설치하는 경우 시설부담금을 면제한다.

제 77 조의 2 (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① 약관 제95조(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제1호의 “철강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은 생산자 물가지수 중 “철강1차제품”과 “기타 플라스틱제품”을 적용한다.

② 약관 제95조(표준시설부담금 단가의 조정) 제1호의 “지중케이블전공”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저압케이블전공”과 “특고압케이블전공”을 말하며, “저압케이블전공”구성비는 0.4%, “특고압케이블전공” 구성비는 1.5%를 적용한다.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①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가.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 32㎟, 절연 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OC 32㎟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2.9kV 배전케이블 60㎟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압기 설치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로서 2 이상의 변압기(배전함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변압기별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2. 기설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변압기 설치비는 설계시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설변압기가 적철심 변압기인 경우에는 권철심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2 이상의 변압기를 V, △ 또는 Y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선상태에 관계없이 변압기 전체 설치비 및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4. 배전함 설치비를 조정하기 위해 저압 배전함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회로 개폐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1차측 전압은 삼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380V, 단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220V를 적용한다.

가.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단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kVA)을 적용한다.

나.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삼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kVA)을 적용한다.

5. 22,900V 승압예정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점에서의 공급 전압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승압공사 시행시점에서의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6.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물자 중 재사용 가능한 물자의 가액은 설계시설

부담금에서 차감한다.

7. 정액등 고객에 대하여 변압기(배전함 포함)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계산단위는 계약사용 설비 용량(W)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변압기(배전함 포함) 조정가액을 받지 않는다.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전력구”라 함은 하나의 본체(本體) 내에 다수의 전선로를 수용하고, 동 전선로의 점검 보수를 위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 ② 전선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는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용량”이라 함은 계약전력을 말한다.
 3. 전선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km)로 하며, 실거리를 산정할 때 기존선로 부분은 도면상의 기설 거리, 신설선로 부분은 실 설계 거리로 한다.
 4.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전선 설치비,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설치비를 적용한다.
 5. 계약전력이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상의 표시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전선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정전선규격이 실설계된 전선규격보다 하위규격의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 설계된 전선가액보다 고가(高價)인 경우에는 전선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으며, 실 설계된 전선 설치비를 시설부담금에 계상한다.
 6. 2 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분담하는 경우의 전선굵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나. 개별고객에게 공급되는 단독구간의 전선굵기는 개별고객의 계약전력과 공급변전소로부터 개별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③ 관로 및 전력구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한전에서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관로 또는 전력구를 추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로거리와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

하기 위한 관로거리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조정한다.

2.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관로내경이 서로 다른 관로를 혼재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공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3. 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전력구 설치거리는 평면상 직선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기구와 분기구간의 실제거리를 적용한다.

나. 전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 접속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구 이용거리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분기구의 중심점으로부터 신·증설공급 분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④ 개폐기 설치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지중 배전선로의 개폐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의 개폐기 설치비는 개폐기 본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속자재는 개폐기 설치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1차 배전전압 승압(22,900V化)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수전설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고객(1972. 11. 1 이후 신·증설 고객)의 수급지점에 설치하는 구분개폐기 및 개폐기 2차측 현수애자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승압시점에서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한다.

⑤ 특수한 경우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의 저압설비 철거공사비와 철거물자 가액은 시설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배전선로 운영계획에 따라 계획공사로 시공중인 선로 경과지 인근에서 설계조정 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신·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공사와 동일설계로 처리하되, 그 계획공사의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해당 고객이 부담한다.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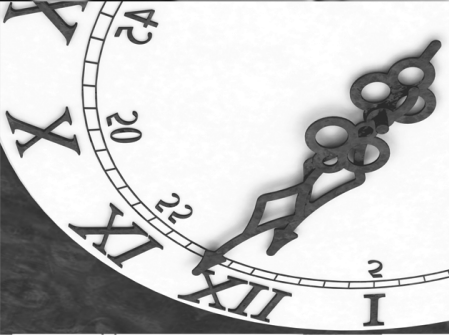
①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1호의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전주 또는 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규격의 전주 또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2. 기존 저압 배전선로를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배전선로의 공급전원을 변경하거나 배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

- ② 약관 제98조(기본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2호의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는 경우
 2.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신설, 연장 또는 전선첨가를 하는 경우
 3. 기존 공급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새로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 ③ 약관 제98조(기본 공급설비의 보강) 제2항 제3호의 “전압강하 방지 또는 보강공사”란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압을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④ “기본 공급설비의 보강”이란 약관 제98조(기본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신 · 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 · 증설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는 경우
 2. 단상 2선식 110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단상 3선식 110V/220V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선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3. 신 · 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개폐기를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소유의 개폐기를 한전의 필요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 ⑤ 신 · 증설 고객의 삼상 공급을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를 삼상화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완철(전선지지대)을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 교체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추가 설치하는 애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2.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서 설치된 톱핀애자를 교체하는 경우의 완철 1개 설치하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한다.
 3.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단상 개폐기(COS 등)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강에 포함하며,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상 개폐기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에서 제외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10 장 보 칙

제 81 조 (농어촌 용자금 회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농어촌용자금 회수관리요령에 따른다.

제 82 조 (S.N.W 공급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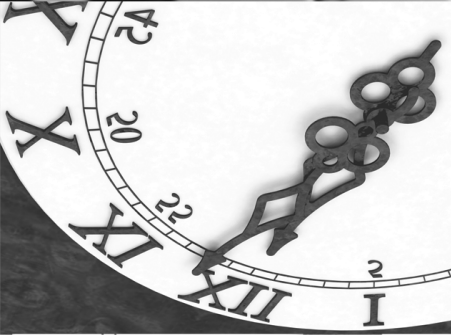
22.9kV S.N.W 방식의 기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3 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에 대한 적용기준)

- ① 녹색프리미엄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기요금과 별개로 납부하는 자발적인 추가 부담 금원으로, 녹색 프리미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3자간 전력거래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에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한전이 고객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으로 전기요금과 별개로 요금을 산정하며, 제3자간 전력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전기사업법 제16 조의5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 조의4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사용전력량의 일부를 한전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한전이 공급한 전력량은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통지받은 값을 기준으로 하며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고객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23호에서 정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제 84 조 (기타)

고객과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중 이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부 칙



부 칙 (1999. 11. 2)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7조 제1항 제1호 “가”(설치범위)는 1999년 4월 30일 이후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

이 세칙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이 세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31)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4)

이 세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1)

이 세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7)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3)

이 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1)

이 세칙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2)

이 세칙은 200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3)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및 제28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분 고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4. 10)

이 세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2)

이 세칙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30)

이 세칙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0)

이 세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2004년 3월분 전기요금 감액계산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7)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은 2005년 3월 15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연체료) 제1항의 연체료 계산은 2005년 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6. 9)

이 세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2)

이 세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8)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장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1항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2)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6)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31)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4)

이 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해 제24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0)

이 세칙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4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0. 9)

이 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2007. 3. 12)

이 세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

이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8)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2)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제7호 가, 나 의 세칙은 2007년 4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6항 제2호 가 의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5. 30)

이 세칙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이 재건축(再建築) 또는 부지를 넓혀 증축(增築)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증설신청을 할 경우 기존 공급변압기 용량 범위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때에는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3항 제2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나. 제67조 제3항 개정규정은 동 조항 제1호 적용대상 사업지구(단지, 구역, 지구)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6)

이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규정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7)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7)

이 세칙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4. 15)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9)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8)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 2항, 제48조 8항, 제48조의1은 2009년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 30)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39조(주택용전력) 및 제40조(일반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3. 제61조(요금의 보증)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 24)

이 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3(지식서비스 산업 전기요금 특례)과 4(전기자동차충전전력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8.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세칙 제48조 제6항 단서 및 감액기준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29조(위약금) 제1항 5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제61조(보증금) ⑧의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의 보증설정 면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3. 제61조(보증금) ⑫의 산업용전력 고객중 보증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 4.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0항 제1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12. 5)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기간)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용증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2. 4.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의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 이전까지 계약전력을 증설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전력의 증설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2. 4. 2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요금적용)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3호내지 제4호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5호 내지 제10호는 주시설이 내선분리되어 별도 계약체결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5)

이 세칙은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저압계량 300kW 이상 고객으로서 일반용전력(갑) 또는 산업용전력(갑)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교체하는 공사를 최종 완료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1)

이 세칙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42조(산업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 제43조(농사용전력)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 제1항의 개정 및 신설규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2. 10. 15)

이 세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4)

- ① (시행일)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5.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② (경과조치) 제40조 제3항의 삭제, 제42조 제3항의 삭제, 제49조 제8항의 신설조항은 저압계량하는 일반용전력(갑) 고압·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에 부설된 전력량계를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로 전량 교체하는 공사를 최종 완료한 날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4. 3)

이 세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1)

이 세칙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10)

이 세칙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1)

이 세칙은 2013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9조 ⑦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14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1. 2)

이 세칙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8)

이 세칙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8)

이 세칙은 2014년 9월분 요금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4.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나. 요금의 적용은 2014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7. 10)

이 세칙은 2014년 7월 10일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6)

이 세칙은 2014년 9월 1일 접수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7)

이 세칙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

이 세칙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1)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20)

이 세칙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1)

이 세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

이 세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

이 세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

이 세칙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계약종별 변경에 따른 요금적용은 2016년 3월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5년 12월 현재 별표4 (기본공급약관특례)의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015년 12월 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3. 2)

이 세칙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8)

이 세칙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1)

이 세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9. 에너지 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바.
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6)

이 세칙은 201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기준으로 정기검침일이 1일부터 12일까지인 고객은 2016년 8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고객은 7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6. 8. 17)

이 세칙은 201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

이 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

이 세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4)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1조 제3항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12. 31)

(시행일) 이 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2 (비주거용 주택용전력), 제48조 (요금의 계산),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18.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 (기본공급약관 특례) 8.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되, 2016년 12월분부터 2017년 2월분까지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이 개정 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보다 클 경우 개정 전 규정으로 산정한 할인금액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5. 1)

이 세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7)

이 세칙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8)

이 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2)

이 세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0항은 2018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9)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13)

이 세칙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8. 3. 19)

이 세칙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3항의 4조는 '18. 5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3. 29)

이 세칙은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5)

이 세칙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 제10항은 이 세칙(부칙 포함)이 따로 정하는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2018. 8. 9)

이 세칙은 201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2018년 7월분 요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 21.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과 22. 하계 복지할인 한도 확대 규정은 시행일 기준으로 정기검침일이 1일부터 12일까지인 고객은 2018년 8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정기검침일이 15일부터 말일까지인 고객은 7월분부터 소급

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8. 8. 10)

이 세칙은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6)

이 세칙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즉시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25조(전략량계 등의 정밀등급 및 시험) 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은 2019년 12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16)

이 세칙은 2019년 12월분 전기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12. 30)

이 세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1)

이 세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7)

이 세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요금의 계산) 제2항 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8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2020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7. 29)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11항은 20.7월분 요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17)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세칙(2013. 1. 14 개정)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압계량하는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전력(갑) 고압 고객에게 시간대별로 사용량을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력량계(이하 시간대별 전력량계)가 이미 설치된 경우 그 고객에게는 2021년 7월분 요금부터 일반용전력(갑)Ⅱ 및 산업용전력(갑)Ⅱ 요금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대별 전력량계가 설치된 날이 속한 월분의 다음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표고객의 변압기 설비를 공동이용하는 저압계량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 전력(갑) 고압 고객 중 시간대별 전력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고객에게는 세칙 제49조 제7항 제4호에 따라 산정한 시간대별 사용량으로 2021년 7월분 요금부터 일반용전력(갑)Ⅱ 및 산업용전력(갑)Ⅱ 를 적용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의 제6항 제2호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제48조의5(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와 [별표12], [별표13]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과 관련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202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4. 위 3호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주택용 “계시별 선택요금”을 선택한 고객은 제 48조의5(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제3항에 따른 선택요금 변경 제한에도 불구하고, 요금적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기존의 주택용전력 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별표 4 특례 9. 에너지 저장장치(ESS) 할인

가. 기본요금 할인(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의 3배), 전력량 요금 할인(경부하 전력량 요금의 50%) 및 ESS 배터리용량 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할인(계약전력 대비 ESS 배터리용량 비율이 10% 이상의 경우, 할인금액의 1.2배, 5%~10% 미만의 경우, 1.0배, 5% 미만의 경우 0.8배)은 특례할인의 존속기간(~26. 3.)의 범위에서 「ESS 가동중단 손실보전위원회」 의결(‘20. 11. 6)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대상과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전력량요금 할인은 전력량 요금에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방전 지정시간 차등 적용 고객에 대한 2021. 1·2월분 요금의 최대 수요전력 감축량 산정시 통신장애, 관련기관 시스템 연계 오류, 검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시간 순방전량 가중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 (2) (나) 방전 지정시간 차등

미적용 고객 산정방식으로 우선 적용하고, 2021년 3월분 요금 계산시 일괄정산한다.

부 칙 (2020. 12. 31)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7)

이 세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5)

- ① (시행일) 2021년 7월분 요금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세칙 제48조의2(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제7호 “가”, “나”의 개정 규정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 부과대상이되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 중 저압계량하는 일반용전력(갑) 고압 및 산업용전력(갑) 고압고객에 대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21년 10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6. 25)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이 세칙(2020. 12. 17 개정)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8조의 5(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와 [별표12]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과 관련된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에 한하여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2. 27)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4의 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의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A), 별표9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A), 별표10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I)(A), 별표12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A)는 2022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는 별표4의 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의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B), 별표9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B), 별표10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I)(B), 별표12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B)를 적용한다.

부 칙 (2022. 2. 24)

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 즉시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57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신규 전기사용계약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년에 신청한 고객은 신청후 1년간 개정전 감액기준을 적용한다.
- ④ (경과조치)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금 감액은 2022년 7월분 요금부터 2023년 6월분 요금까지 적용한다. 다만 2023년 6월 30일까지 신규로 신청한 고객은 최초 적용월분부터 1년간 감액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6. 27)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6항의 1. 감액기준은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까지 월 29,600원 한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23,600원 한도,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 18,600원 한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15,600원 한도,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월 15,600원 한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12,600원 한도,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월 22,000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22. 7. 1)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31)

이 세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가의 (1) 단서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6항의 1. 감액기준은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22,000원 한도,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마목(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 14,000원 한도,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의 경우 월 11,000원 한도, 감액대상 약관 제67조 제6항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의 경우 월 22,000원 한도를 2022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3. 별표4의 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의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별표9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 별표10의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I), 별표12의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12. 21)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30)

- ①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단,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별표12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전력량 요금 단가에 11.4원/kWh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은 월간 전기요금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부 칙 (2023.01. 31)

- ① 이 세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세칙(2022.12.30. 개정)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3조 제4항(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에 대한 적용기준) 및 [별표4] 제23호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의 전기요금 적용에 관련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2023. 03. 31)

- ① 이 세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세칙(2022.12.30. 개정)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3조 제4항(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에 대한 적용기준) 및 [별표4] 제23호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의 전기요금적용에 관련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2023. 05. 16)

- ① 이 세칙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2022.12.30 개정)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2023년 5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별표12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전력량 요금 단가에서 19.4원/kWh를 차감,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는 월 사용전력량 313kWh까지 별표12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전력량 요금 단가에서 8.0원/kWh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은 별표12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단가를 적용한다.
- ③ (경과조치)
 1. 제48조 6(주택용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2023년 7월분부터 적용하며, 2023년 8월 31일까지 신청한 고객은 2023년 7월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2. 제48조 6(주택용 절전 차등 에너지캐시백) 제6항의 달성 절감률 구간과 단가는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하며, 2024년 1월분부터는 아래의 달성 절감률 구간과 단가를 적용하여 캐시백을 산정한다.

달성 절감률 구간	5% 이상 ~ 15% 미만	15% 이상 ~ 30% 이하
단 가	30원/kWh	50원/kWh

부 칙 (2023. 06. 0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별표 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부 칙 (2023. 06. 30)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1. 이 세칙(2022.12.30. 개정) 부칙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3조 제4항(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에 대한 적용기준) 및 [별표4] 제23호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의 전기요금 적용에 관련된 규정은 이 세칙(부칙 포함)이 따로 정하는 때까지 그 적용을 유예한다.

부 칙 (2023. 7. 17)

이 세칙은 2023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8)

이 세칙은 2023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48조의 6(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6항의 달성 절감률 구간과 단가는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 16)

-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2023.5.16개정) 부칙 제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 나목, 라목에 의해 요금을 감액하는 경우 별표12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의 전력량 요금 단가에서 월 사용전력량 313kWh 까지 아래의 단가를 차감하여 계산하고,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전력량에 대해서는 차감하지 않은 월간 전기요금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구분	'24.1.1~3.31	'24.4~12.31	'25.1.1~3.31
단가	8.0원/kWh	8.0원/kWh	
	11.4원/kWh		-
계	19.4원/kWh		8.0원/kWh

※ (2023년 1월 1일 인상분) 전력량요금 11.4원/kWh
(2023년 5월 16일 인상분) 전력량요금 8.0원/kWh

부 칙 (2024. 2.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4)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3. 1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8조의 7(주말 할인요금) 신설규정은 2026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5. 13)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48조의6(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6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부터 2026년 12월분까지는 매월 1%이상 절감률을 달성한 고객을 대상으로 아래의 달성 절감률 구간과 단가를 적용하여 캐시백을 산정한다.

달성 절감률 구간	1% 이상 ~ 3% 미만	3% 이상 ~ 5% 미만	5% 이상 ~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이하
단 가	30원/kWh	60원/kWh	80원/kWh	100원/kWh	120원/kWh

부 칙 (2026. 5.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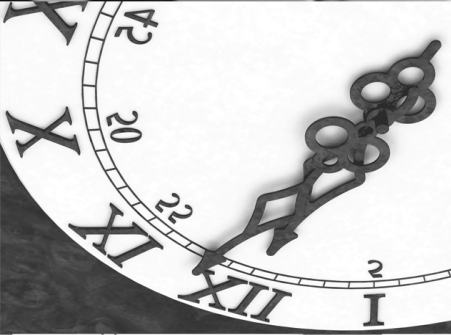
이 세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6.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약관 부칙(2026.03.16. 개정)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전력량계 조치가 2026년 6월 1일까지 완료되지 않고, 전력량계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시간대별 사용량을 수신할 수 없는 경우, 전력량계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
 2. 위 1호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전력량계에서 추출한 시간대별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약관 부칙(2026.03.16. 개정) 제2항 제5호를 적용할 수 있다.
 3. 위 1호에 따른 조치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26. 6. 25.)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제14조의2(고압 이상 수전고객에 대한 공급) ⑤의 규정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제48조의6(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제8항의 신설규정은 시행일로부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목 표



별표 1 위약유형별 산정기준표

위약유형	기간	배수	기기(업종)별 적용시간			비고
			계약종별	기기(업종)명	시간	
(무단사용) 1. 계약없이 사용 2. 1차측 도전 3. 계기조작	6개월	3배	가. 주택용 전력	조명등(전등)	7	1. 이 기준에 없는 기기에 대한 적용 시간은 사업소장이 결정한다. 2. 약관에 정하는 예비사용설비 및 불사용설비는 제외한다. 3. 위약유형 1~3호중 계약종별 "다"의 사용설비로서 이 기준에 명시된 적용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설비는 실가동시간을 적용하며 각종 로(爐)는 24시간 적용한다. 4. 계절적인 사용기기는 실사용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실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측치에 의한 면탈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약유형 1~3호중 계약종별 "다"의 업종별 고객은 약관(별표2)의 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한다. 7. 해당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약종별내에서 가장 유사한 기기를 준용한다.
				전기다리미, 환풍기, 전기 세탁기, 토스터, 커피포트, 믹서	0.5	
				T.V, 선풍기, 전기스토브	6	
				전기밥솥, 전기오븐	6	
				냉장고	8	
				에어컨	6	
				전기장판, 전기온돌	8	
				보온밥통	8	
				소형모터, 곤로	2	
				조명용전등	6	
			나. 주택용 및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계약종별	라디오, TV, 전축, 전기다리미	6	
				선풍기, 세탁기, 스토브, 환풍기	6	
				전기인두, 토스터, 커피포트, 믹서	0.5	
				에어컨	8	
				냉장고	12	
				냉동기, 냉동고	16	
				전기미싱, 곤로	6	
				양수모터, 전동기	3	
				엘리베이터	5	
				농림업	4	
			다. 산업용 전력	수산업	4	
				석탄, 금속광업	10	
				비금속광업	6	
				식품품제조업	6	
				얼음, 장류, 사료제조업	8	
				음료제조업	8	
				섬유제조업	12	
				의류, 가죽류 제조업	6	
				제재 및 목재품 제조업	8	
				펄프 및 제지업	13	
				인쇄관련업	6	
				공화학제품 제조업	1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	
				석유정제업 및 관련업	12	
				석탄가공업	8	
				고무제품 제조업	10	
				도자기 및 점토품 제조업	8	
				유리 및 요업제품 제조업	13	
				금속 및 기계제품 제조업	6	
				수도사업	13	
				기타 제조업 (기타사업 포함)	5	
4. 사용량 협정중인 고객으로 협정일 이후 무단중설(계약위반)	6개월	3배	해당계약종별			
5. 계약종별 위반	4개월	2배	해당계약종별			
6. 사용기간 및 시간위반	4개월	2배	해당계약종별			
7. 주택용 폐지 고객으로 계기 2차측 연결사용	4개월	2배	해당계약종별			
8. 1주택수가구수 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4개월	2배	해당계약종별			

별표 2 잠정사용설비의 사용시간 기준표

사 용 설 비	기준 사용시간 및 기간
탈 곡 기	• 용량×10시간×실사용일수
용 접 기	• 주택수리 : 용량×3시간× 5일
	• 주택신축 : 용량×3시간×10일
연 마 기	• 사 용 량 = 평수×6kWh
	• 사용시간(일) : (사용량÷요금적용전력)÷8시간

별표 3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기간 적용기준표 (2007. 5. 22 개정)

계절구분	기 기 명	기준사용기간	추가사용기간
하 계 (3월~10월)	선풍기, 에어컨	6. 1~8, 31	3. 1~5, 31 9. 1~10, 31
동 계 (11월~2월)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돌	12. 1~2, 28	11. 1~11, 30

별표 4 기본공급약관 특례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
 - 가. 적용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사용하는 고객

 -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 자동차(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충전설비
 -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6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자의 위 (1)에 해당하는 충전설비

나. 요금적용

- 요금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아래“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의 해당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 기본공급약관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68조(요금적용 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그 이외의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 계약전력은 기본공급약관 제19조(계약전력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최대 전력제한장치를 설치한 전기자동차충전설비의 경우 최대허용전력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 계절 및 시간대별 구분은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를 준용한다.
- 충전장소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이거나 일반용전력인 경우 기존 계약단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위의 “가. 적용대상”(2)에 해당하는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다.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요금표”(2)의 선택(Ⅰ)요금, 선택(Ⅱ)요금, 선택(Ⅲ)요금 또는 선택(Ⅳ)요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이 선택한 요금은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선택요금을 처음으로 적용한 경우 등 세칙 제48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적용대상” (2)에 해당하는 고객이“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의 (1)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1)요금은 선택요금으로 본다.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1) 위의 “가. 적용대상” (1)에 해당하는 고객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39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84.3원	85.4원	107.4원
중간부하시간대	172.0원	97.2원	154.9원
최대부하시간대	259.2원	102.1원	217.5원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58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79.2원	80.2원	96.6원
중간부하시간대	137.4원	91.0원	127.7원
최대부하시간대	190.4원	94.9원	165.5원

(2) 위의 “가. 적용대상” (2)에 해당하는 고객

(가)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 이상 380V 이하 고객)

① 선택(I)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39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5.9원	85.4원	110.6원
중간부하시간대	162.2원	97.2원	143.1원
최대부하시간대	203.5원	102.1원	172.0원

② 선택(II)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39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83.1원	85.4원	105.8원
중간부하시간대	140.0원	97.2원	126.7원
최대부하시간대	270.8원	102.1원	227.0원

③ 선택(III)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39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0.1원	85.4원	115.5원
중간부하시간대	138.6원	97.2원	125.4원
최대부하시간대	236.0원	102.1원	198.4원

④ 선택(IV)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39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72.0원	97.2원	154.9원

(나)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 이상 고객)

① 선택(I)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58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89.8원	80.2원	99.4원
중간부하시간대	129.9원	91.0원	118.4원
최대부하시간대	151.2원	94.9원	132.4원

② 선택(II)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58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78.2원	80.2원	95.2원
중간부하시간대	113.0원	91.0원	105.5원
최대부하시간대	198.6원	94.9원	172.4원

③ 선택(III)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58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84.5원	80.2원	103.6원
중간부하시간대	111.9원	91.0원	104.5원
최대부하시간대	174.0원	94.9원	151.6원

④ 선택(IV)요금

○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580원

○ 전력량요금 : kWh당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137.4원	91.0원	127.7원

라. <삭 제>

마. <삭 제>

5. <삭 제>

6. <삭 제>

7. 개성공업지구 전력사용 휴지

가. 적용대상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구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

나. 적용기준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개성공업지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사업이 중단되어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신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휴지할 수 있으며, 휴지 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아니한다.

다. 적용기간

2013년 5월분 요금부터 2014년 4월분 요금까지 적용한다.

8.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가. 적용대상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적용대상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육시설

나. 요금적용

(1) 기본요금

○ 약관 제6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15%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 약관 제68조 제1항 이외에는 계약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

12~2월분과 7~8월분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해 기본사용 전력량과 냉난방 사용 전력량 비중으로 구분하여 각 6%와 50%를 할인한다.

(3)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다. 기본 및 냉난방 사용전력량 산정

○ 7~8월분의 기본 사용전력량은 4~6월분 사용전력량을 평균하여 적용하고 12~2월분의 기본 사용전력량은 9~11월분 사용전력량을 평균하여 적용한다.

○ 냉난방 사용전력량은 해당월 사용전력량에서 기본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라. 적용제한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 적용대상과 고등교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시설이 1 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초·중·고교 및 유치원 전기요금 적용 대상시설을 별도의 전기사용계약 단위로 분리한 경우에 한하여 위 “나. 요금적용”의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적용한다.

마. 적용기간

2017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9.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 (1) 약관 별표3(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고객으로서 최대 수요전력 절감 등을 위해 자가소비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고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 다만, 신재생에너지 출력안정, 주파수 조정 등 발전·송변전·배전시설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할인적용 대상에서 각 제외한다.
 - (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문(에너지안전과-483, 2020.2.28.)에 따른 사용전검사 추가검사 항목에서 정하는 충전율 운용범위(옥내 80%, 옥외 90%)를 매월 최소 1회라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충전율 운용범위를 초과한 해당월에 한하여 할인을 제외한다.
 - (나) 위 공문에 따른 안전조치(공통, 추가)를 이행하고 한전에 공통안전조치의 경우 ESS안전관리위원회의 “ESS 안전관리위원회 승인결과 확인공문”을, 추가안전조치의 경우 추가안전조치위원회의 “추가안전조치 이행 확인공문”(이하 “증빙자료”라 한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유보 기간인 2020년 12월 31일의 다음날이 속한 2021년 1월부터 한전에 제출한 증빙자료에 기재된 관련 위원회의 승인일이 속한 월까지 할인을 제외한다.
- (3) (2)의 (가)에 따른 충전율 운용 범위를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공급능력 확보, 계기이상, 설비점검에 의한 시험가동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이 공인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특별 할인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

계약전력은 변압기 설비용량과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전력량계 등의 설치

사용량을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를 약관 제37조(전력량계 등의 설치 및 소유) 및 제38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 시행세칙 제16조(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및 제24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기준)에 따라 부설한다.

라. 요금적용

- 대표고객의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공동이용고객 계약 전력을 차감하지 않는다.
- 기본요금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대표고객에 합산 청구하며, 전력량 요금은 각 시간대별로 계산한 요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충·방전량을 계량하여 아래의 “마. 기본요금 할인”에 따라 요금을 감액하며,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산오류, 정보제공의 누락 내지는 지연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할인이 적용되거나 제외된 경우 기존에 부과된 요금과 재계산한 요금의 차액을 익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마. 기본요금 할인

(1) 요금적용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에 대하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용량 이내로 한다.
- 기본요금 할인금액은 대표고객의 해당월 기본요금을 한도로 하여, 대표고객의 기본요금에서 감액하여 청구한다.

(2) 최대수요전력 감축량 산정 방식

(가) 방전 지정시간 차등 미적용 고객 (AMI 미부설, 원격검침 미대상)

- AMI 미부설고객에 대한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frac{\text{평균 최대수요전력}}{\text{감축량(kW)}} = \frac{\text{해당월 평일 최대부하시간대 방전량 합계} - \text{해당월 평일 최대부하시간대 충전량 합계}}{\text{해당월 평일 일수} \times 3\text{시간}}$
--

(나) 방전 지정시간 차등 적용 고객 (AMI 부설, 원격검침 대상)

- AMI 부설고객에 대한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지정시간 순방전량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이때 순방전량은 ‘해당월 평일 지정시간대 방전량 합계에서 해당월 평일 지정시간대 충전량 합계’를 차감한 방전량을 말한다. 다만, 전력수급비상 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방전지정시간 및 가중치 등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text{평균 최대수요전력} = \frac{(A \text{ 순방전량} \times \text{가중치}) + B \text{ 순방전량}}{\text{해당월 평일 일수} \times 3}$$

감축량(kW)

- A시간 : 최대부하 6시간 중 방전 지정시간
- B시간 : A시간을 제외한 최대부하시간

- 방전 지정시간(3시간)

시간	하 계			동 계			춘추계		
A	14~15	15~16	16~17	9~10	10~11	17~18	14~15	16~17	17~18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모든 계절 최대부하 시간대 16~22시 중 16~19시를 방전 지정시간(3시간)으로 적용한다.

- 지정 3시간 가중치

구 분	옥 내	옥 외
가중치	1.23	1.1

○ 통신장애, 설비고장, 원격미수신 등을 원인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지정시간(상기의 A·B시간) 총·방전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 해당월 지정시간(상기의 A·B시간)의 원격검침 수신율이 90% 이상인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시간대의 총·방전량은 최대부하시간(C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해당월 지정시간(상기의 A·B시간)의 총·방전량 원격검침 수신율이 90% 미만인 경우에는 고객의 시간대별 총·방전량 자료(EMS 또는 BMS)를 제공받아 사후 정산한다.

바. 적용기간

○ 기본요금 할인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은 AMI 부설여부에 따라 상기 “마. 기본요금 할인”의 평균 최대수요전력 감축량의 1배로 적용한다.

○ <삭 제, 2021. 1. 1>

○ <삭 제, 2021. 1. 1>

사. 정보제공

○ ESS설비의 충전율 운용 범위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고객은 충전율 운용에 관한 자료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0.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도축허가를 받은 사업장

나. 요금적용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1. <삭 제>

12. <삭 제>

13. <삭 제>

14.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받는 생산자단체 운영 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

나. 요금적용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5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5. 천일염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의 천일염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나. 요금적용

고객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해당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한다.

다. 적용기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16. 〈삭 제〉

17. 〈삭 제〉

18. 〈삭 제〉

19. 〈삭 제〉

20.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자가소비하는 산업용 및 일반용 고객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이 10kW 이하인 고객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해당하는 고객 등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나. 전기계기의 설치

총발전량과 송전량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와 동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 요금적용

- (1) 신재생에너지 자가소비량(kWh)에 대하여 해당종별의 전년도 최대 및 중간부하시간대 평균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의 50%를 할인한다.
- (2) 상기 (1)의 총 할인금액은 해당 월 전기요금을 한도로 적용한다.
- (3) 〈삭 제, 2021. 1. 1〉

라.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21. 〈삭 제〉

22. 〈삭 제〉

23.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전기요금 적용

가. 적용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전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고객
-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5,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4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고객

나. 요금적용

- 요금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되,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아래 “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요금표”의 해당 요율에 따라 계산한다. 단,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선택요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 요금적용전력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결정한다.
- 계절 및 시간대별 구분은 약관 별표3 제1호를 준용한다.
- 아래 “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요금표”는 고객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날부터 적용한다.

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고객 요금표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10,02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3.9원	93.9원	100.9원
중간부하시간대	130.4원	99.9원	130.6원
최대부하시간대	206.9원	125.3원	182.6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98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6.0원	96.0원	103.1원
중간부하시간대	135.1원	105.2원	135.1원
최대부하시간대	212.5원	131.6원	187.4원

(3)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9,670원

(나)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5.7원	95.7원	102.6원
중간부하시간대	135.3원	105.3원	134.9원
최대부하시간대	212.2원	131.7원	187.5원

24. 전력다소비시설(데이터센터) 공급방안 특례

가. 적용대상

-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정의된 집적 정보통신시설로 한전의 “공급여유지역”에서 22.9kV 이상의 전압으로 전력을 단독으로 공급받는 자사용 및 임대사업용 데이터센터에 적용한다.
- (2) 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데이터센터는 적용 제외한다.
- (3) (1)호의 “공급여유지역”이란 22.9kV 고객에게 적용하는 공급여유지역은 행정구역상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으로서 송변전 계통의 추가적인 보강 없이 공급 가능한 지역(별도의 공사 수반 없이 154kV 변전소간 부하 분리를 통하여 변전소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을 말하고, 154kV 고객에게 적용하는 공급여유 지역은 행정구역상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으로서 송변전 계통의 추가적인 보강 없이 공급 가능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나. 시설부담금 및 공급조건

- (1) 전용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22.9kV 고객은 설계시설부담금의 50%를 할인한다. 다만, 할인금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2) 154kV 고객은 약관상의 상용전력 공급 회선수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전력은 공급하지 않는다.

다. 적용기간

2023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전기사용 신·증설 신청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5 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 (2000. 3. 2, 2003. 1. 30 개정)

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 기준

《구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

1.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0호로 개정 · 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시행일: 1995년 4월 1일) 및 1997년 5월 1일 개정 · 시행된 이 세칙 “부칙 2(경과조치)”에 따라 공업단지안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정의
법률 제4900호로 개정 · 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하 “지구내 배전선로”라 한다)이란 공업단지내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시에 미리 설치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공급설비로서, 지지물 · 애자 · 완철펀 · 전선 · 선로 구분개폐기 · 전력구 · 지중관로 · 케이블 · 맨홀 · 핸드홀 · 기타 부속물로 구성되는 일반공급설비를 말한다.
3. 적용대상 공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개발하는 공업단지로서 1995년 4월 1일 이후에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구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한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설치방법 및 시기
 - 가. 공업단지내 배전선로는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한다.
 - (1)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토록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 · 고시한 경우
 - (2) 도로횡단 · 철도횡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전에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지중 배전선로의 설치를 요청하고, 지중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 나. 지중(地中)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 조성시에 설치한다.
 - 다. 공중(空中)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당해 공업단지의 분양상황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전기사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5. 비용의 부담
 - 가. 한전 변전소가 공업단지 외부에 위치한 경우에 변전소로부터 공업단지 경계지점까지 간

선시설(일반공급설비) 설치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나. 단지경계지점 또는 공업단지 내부에 위치한 변전소로부터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은 한전과 입주자가 각각 100분의50의 비율로 부담하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은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수급개시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하게 분할 · 회수할 수 있다.
- 다.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부터 전기사용장소(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고객부담공사비는 약관 제84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 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8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표준시설부담금에 의한 시설부담금이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공사비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공단지 등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라. 한전 공급설비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 특별공급설비 · 임시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약관 제85조 · 제86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6. 시설 부담금의 산정(算定)

가. 공업단지내의 입주자별 시설 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 시설 부담금} = \frac{(\text{지구내 배전선로 설계시설부담금} \times 0.5) \times \text{당해 입주자의 토지면적(㎡)}}{(1) \text{ 공업단지개발 시행면적(㎡)} - \text{제외대상 면적(㎡)}}$$

註) 1. “당해 입주자의 토지면적”이란 전기사용신청자가 분양 · 임대 또는 승계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2. “제외대상 면적”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중 다음 시설의 토지면적

- (1) 도로
- (2) 공원
- (3) 광장
-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5) 하천
- (6) 녹지
- (7)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8) 유수지 시설

나. 시설분담금의 산정지점에서 특별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입주자가 있는 경우 당해 입주자의 토지면적

3. 공업단지 전체를 2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지구내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시설분담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구별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공업단지내의 배전선로 인출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공구별 토지면적 비율로 각각의 공구별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시설부담금에 배분한다.

나. 공구별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시설부담금은 “가”에 의하여 배분된 금액과 다른 공구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배전선로 인출부분의 공사비를 제외한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시설부담금을 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설분담금을 적용받는 최초의 입주자에게 전기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전기를 공급받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blacksquare \text{ 시설 분담금} = \text{“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분담금} \times \frac{B}{A}$$

註) A. 최초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익년도(翌年度)말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B. 당해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전년도(前年度)말의 생산자물가 총 지수

7. 고객 안내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구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입주자에게 “6”에 의하여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을 미리 안내하도록 의뢰한다.

《신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

1.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8호로 개정 · 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시행일 : 1997년 5월 1일)에 따라 산업단지안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정의 (2000. 3. 2, 2003. 1. 30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하 “단지내 배전선로”라 한다)이란 산업단지내 불특정 다수의 입주기업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시에 산업단지 밖의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 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미리 설치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공급설비로서, 지지물 · 애자 · 완철 · 전선 · 선로 구분개폐기 · 전력구 · 지중관로 · 케이블 · 맨홀 · 핸드홀 · 기타 부속물로 구성되는 일반공급설비를 말한다.[다만, 철탑, 지중관로 또는 전력구를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여 154kV 이상 고객소유선로로 공급시 철탑(전선, 애자, 금구류 등의 부속물 제외), 관로부분(맨홀포함, 파이프제외) 및 전력구(전원 및 조명설비, 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부대설비 포함)만 단지내 배전선로에 해당함]

3. 적용대상 산업단지 (2000. 3. 2 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1997년 5월 1일 이후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단지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97년 4월 30일 이전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단지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하였으나 1997년 5월 1일 이후에 착공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4. 설치방법 및 시기 (2000. 3. 2 개정)

- 가. 산업단지내 배전선로는, 한전 변전소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전에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중(地中) 배전선로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 나. 지중(地中)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 조성시에 지중시설 요청자(지중시설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로부터 시설부담금이 입금된 후 설치하되 요청자가 분납을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공중(空中)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당해 산업단지의 분양상황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의 전기사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단지내 배전선로의 설치장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5. 비용의 부담

-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한전과 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며,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은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수급개시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하게 분할·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시설한 부분의 공사비는 시설분담금에서 제외한다.
- 나.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부터 전기사용장소(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특별공급설비·임시공급설비 또는 예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 제85조·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른다.

6. 시설 분담금의 산정(算定)

- 가. 산업단지내의 요청자별 시설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lacksquare \text{ 시설 분담금} = (\text{단지내 배전선로 설계시설부담금} \times 0.5) \times \frac{\text{해당 요청자별의 토지면적}(\text{m}^2)}{\text{요청자들의 토지면적}(\text{m}^2) \text{ 합계}}$$

- 나. 시설분담금을 적용받는 최초의 입주기업(요청자)에게 전기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전기를 공급받는 입주기업(요청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blacksquare \text{ 시설 분담금} = \text{“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분담금} \times \frac{B}{A}$$

A. 최초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익년도 말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B. 당해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전년도 말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별표 6 콘덴서 설치용량 기준표

1. 단상 유도 전동기

출 력		설 치 용 량 (μF)	
kW	HP	110V	220V
0.1	1/8	40	10
0.2	1/4	50	15
0.25	1/3	75	20
0.4	1/2	100	20
0.55	3/4	100	30
0.75	1	120	30

2. 200V 교류 전호(電弧) 용접기

최대입력 (KVA)	3	5	7.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설치용량 (μF)	100	150	250	300	450	600	700	900	1,000	1,100	1,300	1,450

※ 교류 저항 용접기에 대하여는 위 표의 1/2 용량을 사용할 것.

3. 200V · 380V 삼상 유도전동기

출 력		설치용량(μF)		출 력		설치용량(μF)	
kW	HP	200V	380V	kW	HP	200V	380V
0.2	1/4	15	-	7.5	10	200	75
0.4	1/2	20	-	11	15	300	100
0.75	1	30	-	15	20	400	100
1.5	2	50	10	22	30	500	150
2.2	3	75	15	30	40	800	200
3.7	5	100	20	37	50	900	250
5.5	7.5	175	50				

4. 3,300V 고압전동기

출 력		설 치 용 량(kVA)
kW	HP	
37	50	15
55	75	25
75	100	30
110	150	50
150	200	75

5. 기타 전기기계 · 기구의 경우

부 하 종 별	콘덴서용량(최저 kVA)
380V 삼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정격입력(kVA) 1/3
200V 삼상 또는 단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정격입력(kVA) 1/4
100V 단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정격입력(kVA) 1/5
기타의 전기기기	고객과 협의 결정

별표 7 기기별 역률 및 무효전력표

1. 저압전동기

출 력		역 률(%)	무효전력(kVar)
kW	HP		
0.2	1/4	60.0	0.262
0.4	1/2	66.5	0.447
0.75	1	73.0	0.691
1.5	2	77.0	1.230
2.2	3	79.0	1.699
3.7	5	80.0	2.767
5.5	7.5	78.5	4.330
7.5	10	79.5	5.716
11	15	80.5	8.099
15	20	81.0	10.845
22	30	82.0	15.340
30	40	82.5	20.544
37	50	83.5	24.380

주 : 콘덴서가 일부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전력의 합계에서 부설된 콘덴서용량(kVA)의 합계를 차감 계산함

2. 3,300V 고압전동기

출 력		역 률(%)	무효전력(kVar)
kW	HP		
37	50	80.0	27.750
40		80.5	29.464
50		81.5	35.533
55	75	82.0	38.385
60		82.5	41.088
75	100	83.0	50.398
100		84.0	63.280
110	150	84.5	69.600
125		85.0	77.451
150	200	85.5	90.971
200		86.0	118.657

주 : 콘덴서가 일부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전력의 합계에서 부설된 콘덴서용량(kVA)의 합계를 차감 계산함

3. 용접기의 무효전력(kVar)

입력(kVA) 역률(%)	3	5	7.5	10	15	20
40	2,750	4,583	6,874	9,165	13,748	18,330
41	2,736	4,560	6,840	9,120	13,680	18,240
42	2,723	4,538	6,806	9,075	13,613	18,150
43	2,709	4,515	6,772	9,029	13,544	18,058
44	2,694	4,490	6,734	8,979	13,469	17,958
45	2,679	4,466	6,698	8,931	13,397	17,862
46	2,664	4,440	6,659	8,879	13,319	17,758
47	2,648	4,414	6,620	8,827	13,241	17,654
48	2,632	4,386	6,579	8,772	13,158	17,544
49	2,615	4,359	6,539	8,718	13,077	17,436
50	2,598	4,330	6,495	8,660	12,990	17,320
51	2,581	4,301	6,452	8,602	12,903	17,204
52	2,564	4,274	6,411	8,548	12,822	17,096
53	2,544	4,240	6,359	8,479	12,719	16,958
54	2,525	4,209	6,313	8,417	12,626	16,834
55	2,505	4,176	6,263	8,351	12,527	16,702
56	2,486	4,143	6,215	8,286	12,429	16,572
57	2,465	4,108	6,162	8,216	12,324	16,432
58	2,444	4,073	6,110	8,146	12,219	16,292
59	2,422	4,037	6,055	8,073	12,110	16,146
60	2,400	4,000	6,000	8,000	12,000	16,000
61	2,378	3,963	5,944	7,925	11,888	15,850
62	2,354	3,923	5,885	7,846	11,769	15,692
63	2,330	3,888	5,825	7,766	11,649	15,532
64	2,306	3,843	5,764	7,685	11,528	15,370
65	2,280	3,800	5,699	7,599	11,399	15,198

입력(kVA) 역률(%)	25	30	35	40	45	50
40	22,913	27,495	32,078	36,660	41,243	45,825
41	22,800	27,360	31,920	36,480	41,040	45,600
42	22,688	27,225	31,763	36,300	40,838	45,375
43	22,573	27,087	31,602	36,116	40,361	45,145
44	22,448	26,938	31,427	35,916	40,406	44,895
45	22,328	26,793	31,259	35,724	40,190	44,655
46	22,198	26,638	31,077	35,516	39,956	44,395
47	22,068	26,481	30,895	35,308	39,722	44,135
48	21,930	26,316	30,702	35,088	39,474	43,860
49	21,795	26,154	30,513	34,872	39,231	43,590
50	21,650	25,980	30,310	34,640	38,970	43,300
51	21,505	25,806	30,107	34,408	38,709	43,001
52	21,370	25,644	29,918	34,192	38,466	42,740
53	21,198	25,437	29,677	33,916	38,156	42,395
54	21,043	25,251	29,460	33,668	37,877	42,085
55	20,878	25,053	29,229	33,404	37,580	41,755
56	20,715	24,858	29,001	33,144	37,287	41,430
57	20,540	24,648	28,756	32,864	36,972	41,080
58	20,365	24,438	28,511	32,584	36,657	40,730
59	20,183	24,219	28,256	32,292	36,329	40,365
60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61	19,813	23,775	27,738	31,700	35,663	39,625
62	19,615	23,538	27,461	31,384	35,307	39,230
63	19,415	23,298	27,181	31,064	34,947	38,830
64	18,213	23,055	26,898	30,740	34,583	38,425
65	18,998	22,797	26,597	30,396	34,196	37,995

- 주 : 1. 출력= 입력×역률로 환산
 2. 당해 용접기의 입력 및 역률은 시험성적표에 의함
 3. 콘덴서가 일부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전력의 합계에서 부설된 콘덴서용량(kVA)의 합계를 차감 계산함
 4. 전등사용설비는 그 종류 또는 용량에 관계없이 역률을 90%로 간주하여 무효전력을 계산함

별표 8 평균역률 계산표

Wr/W		평균역률 (%)	Wr/W		평균역률 (%)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0.0000	0.1004	100	0.8686	0.8954	75
0.1005	0.1752	99	0.8955	0.9225	74
0.1753	0.2279	98	0.9226	0.9500	73
0.2280	0.2718	97	0.9501	0.9778	72
0.2719	0.3106	96	0.9779	1.0060	71
0.3107	0.3461	95	1.0061	1.0345	70
0.3462	0.3793	94	1.0346	1.0636	69
0.3794	0.4108	93	1.0637	1.0931	68
0.4109	0.4409	92	1.0932	1.1231	67
0.4410	0.4701	91	1.1232	1.1536	66
0.4702	0.4984	90	1.1537	1.1848	65
0.4985	0.5261	89	1.1849	1.2166	64
0.5262	0.5583	88	1.2167	1.2490	63
0.5584	0.5801	87	1.2491	1.2822	62
0.5802	0.6066	86	1.2823	1.3161	61
0.6067	0.6329	85	1.3162	1.3508	60
0.6330	0.6590	84	1.3509	1.3864	59
0.6591	0.6850	83	1.3865	1.4229	58
0.6851	0.7110	82	1.4230	1.4603	57
0.7111	0.7370	81	1.4604	1.4988	56
0.7371	0.7630	80	1.4989	1.5384	55
0.7631	0.7892	79	1.5385	1.5792	54
0.7893	0.8154	78	1.5793	1.6211	53
0.8155	0.8419	77	1.6212	1.6644	52
0.8420	0.8685	76	1.6645	1.7091	51

Wr/W		평균역률 (%)	Wr/W		평균역률 (%)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1,7092	1,7554	50	3,7920	3,9572	25
1,7555	1,8031	49	3,9573	4,1362	24
1,8032	1,8526	48	4,1363	4,3305	23
1,8527	1,9039	47	4,3306	4,5424	22
1,9040	1,9571	46	4,5425	4,7744	21
1,9572	2,0124	45	4,7745	5,0298	20
2,0125	2,0700	44	4,0299	5,3121	19
2,0701	2,1299	43	5,3122	5,6261	18
2,1300	2,1923	42	5,6262	5,9775	17
2,1924	2,2576	41	5,9776	6,3736	16
2,2577	2,3258	40	6,3737	6,8237	15
2,3259	2,3972	39	6,8238	7,3396	14
2,3973	2,4721	38	7,3397	7,9373	13
2,4722	2,5507	37	7,9374	8,6380	12
2,5508	2,6334	36	8,6381	9,4712	11
2,6335	2,7206	35	9,4713	10,4787	10
2,7207	2,8126	34	11,4788	11,7221	9
2,8127	2,9099	33	11,7222	13,2958	8
2,9100	3,0130	32	13,2959	15,3521	7
3,0131	3,1225	31	15,3522	18,1543	6
3,1226	3,2390	30	18,1544	22,1997	5
3,2391	3,3633	29	22,1998	28,5539	4
3,3634	3,4692	28	28,5540	39,9875	3
3,4963	3,6389	27	39,9876	66,6667	2
3,6390	3,7919	26	66,6668	199,9975	1
			199,9976	이 상	0

- 주 : 1. W : 전력량계 계량치(kWh), Wr :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량치(kVarh)
 2. Wr/W는 소숫점 이하 4자리까지로 하고 5자리는 4사5입한 것임
 3. 위의 계산표는 $\text{평균역률} = \frac{W}{\sqrt{W^2 + W_r^2}} \times 100$ 의 식에 따라 계산함
 4. 위의 계산표는 유효전력(kW)과 무효전력(kVar)에 의한 역률을 구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음

별표 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

1. 일반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I)요금 : 전력량요금 kWh당

구 분		1월 1일~2월 말일	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80.6원	78.2원
중간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12.6원	117.3원
	피크일	217.7원	
최대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52.6원	177.9원
	피크일	601.1원	683.7원

(나) 선택(II)요금 : 전력량요금 kWh당

구 분		1월 1일~2월 말일	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75.1원	72.7원
중간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07.1원	111.8원
	피크일	211.9원	
최대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47.1원	172.4원
	피크일	595.6원	678.2원

(다) 선택(III)요금 : 전력량요금 kWh당

구 분		1월 1일~2월 말일	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74.7원	72.0원
중간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06.7원	111.3원
	피크일	210.9원	
최대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39.3원	163.3원
	피크일	557.7원	636.3원

2. 산업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I)요금 : 전력량요금 kWh당

구 분		1월 1일~2월 말일	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104.2원	101.8원
중간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36.2원	140.9원
	피크일	241.3원	
최대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76.2원	201.5원
	피크일	624.7원	707.3원

(나) 선택(II)요금 : 전력량요금 kWh당

구 분		1월 1일~2월 말일	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98.7원	96.3원
중간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30.7원	135.4원
	피크일	235.5원	
최대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70.7원	196.0원
	피크일	619.2원	701.8원

(다) 선택(III)요금 : 전력량요금 kWh당

구 분		1월 1일~2월 말일	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98.3원	95.6원
중간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30.3원	134.9원
	피크일	234.5원	
최대부하시간대	비피크일	162.9원	186.9원
	피크일	581.3원	659.9원

별표 10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I)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I)

1. 일반용전력(을)

(1)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63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5.9원	95.9원	102.9원
중간부하시간대	148.2원	118.2원	148.2원
최대부하시간대	335.6원	210.3원	204.4원

(나) 선택(II)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38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2.1원	92.1원	99.1원
중간부하시간대	144.4원	114.4원	144.4원
최대부하시간대	329.7원	204.4원	200.6원

(다) 선택(III)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1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90.4원	90.4원	97.5원
중간부하시간대	142.7원	112.8원	142.7원
최대부하시간대	327.3원	202.0원	198.9원

2. 산업용전력(을)

(1)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63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26.3원	126.3원	133.3원
중간부하시간대	178.6원	148.6원	178.6원
최대부하시간대	366.0원	240.7원	234.8원

(나) 선택(I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38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22.5원	122.5원	129.5원
중간부하시간대	174.8원	144.8원	174.8원
최대부하시간대	360.1원	234.8원	231.0원

(다) 선택(II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1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20.8원	120.8원	127.9원
중간부하시간대	173.1원	143.2원	173.1원
최대부하시간대	357.7원	232.4원	229.3원

(3) 고압전력C(표준전압 345,000V 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590원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25.8원	125.8원	132.7원
중간부하시간대	178.7원	148.7원	178.3원
최대부하시간대	365.7원	241.0원	234.9원

(나) 선택(Ⅱ)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52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21.1원	121.1원	128.0원
중간부하시간대	174.0원	144.0원	173.6원
최대부하시간대	358.4원	233.7원	230.2원

(다) 선택(Ⅲ)요금

-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8,090원
- ②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20.0원	120.0원	126.9원
중간부하시간대	172.9원	142.9원	172.5원
최대부하시간대	356.7원	232.0원	229.1원

별표 11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계절별·시간대별 구분표

1. 수요관리형 선택요금Ⅱ 적용고객

계절별 시간대별	여름철 (6월 1일~8월 31일)	봄 · 가을철 (3월 1일~5월 31일, 9월 1일~10월 31일)	겨울철 (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22:00~08:00	22:00~08:00	22:00~08:00
중간부하시간대	08:00~14:00 17:00~22:00	08:00~14:00 17:00~22:00	08:00~09:00 12:00~16:00 19:00~22:00
최대부하시간대	14:00~17:00	14:00~17:00	09:00~12:00 16:00~19:00

- 다만, 1.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경부하시간대에 계량하고, 공휴일이 아닌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의 사용전력량은 중간부하시간대에 계량한다.
2. 요금적용전력은 중간부하시간대와 최대부하시간대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전기공급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에 따라 산정한다.
3. 제1호의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별표 12 주택용 계절별 · 시간대별 선택요금표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표

1.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은 가구당 3kW로 적용하며, 기본요금은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4,310원으로 한다.
2. 전력량요금 : kWh당

구 분	여름철	봄 · 가을철	겨울철
경부하시간대	138.7원	125.8원	138.7원
중간부하시간대	184.7원	153.8원	184.7원
최대부하시간대	220.5원	172.4원	220.5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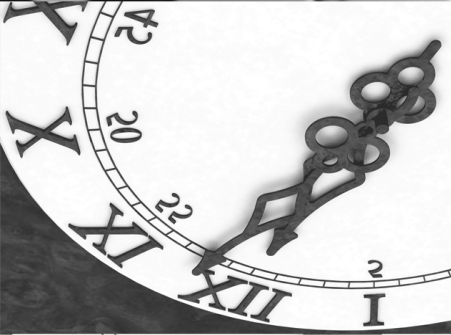
3. 슈퍼유저요금

여름철(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과 겨울철(11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에 월 사용 전력량이 1,00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에 대하여 kWh당 736.2원의 전력량 요금 단가(이하“슈퍼유저요금 단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요금의 계산기간 중 계절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초과사용량을 세칙 제48조의 5(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선택요금) 제4항에 따라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조정 후 슈퍼유저 요금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초과사용량을 제외한 사용전력량의 시간대별 사용량 비중은 월 사용전력량의 시간대별 사용량 비중과 동일하게 계산한다.

별표 13 〈삭 제, 2021. 9. 1〉



별 지 서 식



(별지 1-1호 서식)

전기사용신청서

□ 고객사항

전 기 사 용 자 *		신청일자/접수번호	20 . . /
전기사용장소*		상 호 (공 동 주 택)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 -
e-mail	@	휴 대 전 화 *	- -

□ 전기사용장소(건물, 토지) 소유자 (이하 “소유자” 라 합니다)

소 유 자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 표시는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법인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사항

신 청 구 분		공 급 방 식	상 선 식 V	사용희망일	20 . . .
계 약 종 별	전 력	사 용 용 도		주 생 산 품	
계 약 전 력	kW	설 비 용 량	변압기설비	kVA, 사용설비	kW
선 택 요 금	I □, II □, III □, IV □	APT 계약방법	단일계약 □,	종합계약 □,	세대별계약 □

청 구 방 법	모바일 □	- -	이 메 일 □	@	
	우 편 □	우편 수령주소 ()			
	※ 청구방법 미선택 시 전기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청구가 기본 선택됩니다.				
자 동 이 체	은 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생년월일 :
	신 용 카 드	카드사 :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업 태 :	종 목 :

전 기 공 사		(인)	면허번호	
업 체 명			전화번호	
전 주 관 리	변압기설치 전주번호 :		인입 전주번호 :	

전기공사업체가 대리신청하는 경우 유자격 내선공사 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 밑줄 및 회색 글씨는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공사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을 신청합니다.

- 한전 전기설비에 대한 시공, 수리, 변경 등 공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전작업이 발생할 경우, 정전작업에 협조하고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위와 같이 전기사용신청함을 동의합니다.	소 유 자 (서명 / 인)
-----------------------	----------------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사전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전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전기사용계약신청, 시설부담금·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사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 나.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다. 방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라. 기타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수집 및 이용 항목

구 분	필수 개인정보	선택 개인정보
전기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사항 없음

※ 상기 정보를 포함하여 방송법 제64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사용정보가 한국방송공사(KBS)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한전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 부과·징수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의 개인정보는 특정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되며,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정보 제공 및 자동이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시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수 개인정보 (✓표시)	선택 개인정보 (✓표시)
전기사용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 유 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가입자만 해당)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아동 개인정보 수집 동의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행정정보 조회 동의

전기사용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 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 조회 동의 (✓표시)
전기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 유 자	건축허가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변경)할 경우 보증조치가 필요하나, 고객의 신용이 우수할 경우 보증조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조치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보유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

☐ **조회 목적** : 보증금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한 시점부터 전기사용계약 해지 시까지

구 분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 (✓표시)
전기사용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행정정보 조회 동의,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등의 사전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란에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소 유 자 (서명 / 인)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기사용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에 따라 **전기사용신청 목적 외 용도로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전기사용신청 후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대리인은 신분증과 전기공사업 등록증 원본을 모두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 **(소유자 동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2. **(계약해지 조건)**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용자가 계속해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해지 희망일)**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해지후 재사용)**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10년 이후는 신규시설부담금 납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계약전력의 감소 포함) 고객과 동일한 고객이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16조에 따라 해지기간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재사용수수료)**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6.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7. **(배상책임 한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및 누전·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계 설치한 고압이상의 고객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 1, 2, 7, 8, 9 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 시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함)
9. **(역률요금)** 계약전력 20kW 이상 일반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을) 및 교육용 고압고객은 역률에 따라 요금을 추가 또는 감액합니다. 9시부터 23시까지는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7%까지 초과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진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여 부과되므로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별기기별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선택요금)**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하며, 선택요금은 적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월간 전기사용 시간,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요금이 달라지므로, 전기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요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 **(1주택수가구 요금)**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기본공급약관 제67조 6항 2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기타계절 월 8~16천원, 여름철 월 1~2만원 한도) 또한,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에 대하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감액합니다.(월 16천원 한도. 단,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할인한도 없음)
13. **(최저요금)** 주택용전력 저압고객 및 임시전력(갑) 고객은 월간 전기요금이 1천원 미만시 최저요금 1천원이 부과됩니다.
14. **(연체료)** 고객이 납기일을 경과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처음 1개월과 다음 1개월에 대하여 각각 미납요금의 1.5%를 연체료로 부과합니다.(2개월 누계 최대 3% 부과)
15. **(초과사용부가금)**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대상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 및 초과 비율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50% ~ 40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이 아닌 고객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 금액의 150% ~ 30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16. **(위약금)**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약관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17. **(휴지)** 농사용전력 등 기본공급약관 제8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전에 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 **(소용량고객 계약변경)** 계약전력 5kW 이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은 주택용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약관준수 의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한전ON (<http://online.kepco.co.kr>)에서 확인 가능]

상기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전기사용신청서 작성방법

□ 고객사항

1. 전기사용자 : 실제 전기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법인인은 법인명 기재)
2. 신청일자 및 접수번호 : 신청일자는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날을 기재하며, 접수번호는 한전의 접수담당자가 기재합니다.
3. 전기사용장소 :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장소)의 법정등 지번을 기재합니다. (건물이 없는 경우 토지 지번 기재)
4. 상호(공동주택)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을 기재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 : 실제 전기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6. 전화번호 : 실제 사용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7. e-mail : e-mail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8. 휴대전화 : 실제 전기사용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전기사용장소(건축, 토지) 소유자

9. 소유자명 : 건물(또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재)
10. 주소 :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11.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법인인은 법인등록번호 기재)
12. 전화번호 : 건축물(토지) 소유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휴대전화 포함)

□ 계약사항

13. 신청구분 : 신설, 증설, 일부해지, 공급방식 변경(증설), 계약단위 합병, 계약단위 분할, 공급선로 변경, 수급지점 변경, 인입선 위치 변경, 해지후 재사용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14. 공급방식 : 1상 2선식 220V, 3상 4선식 220/380V 또는 3상 4선식 22,900V, 154kV, 345kV 중 하나를 기재합니다.
15. 사용희망일 : 전기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기재합니다. (공급설비의 공사유무에 따라 한전의 공급준비 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한전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6. 계약종별 : 실제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 중 하나를 기재하며, 기본공급약관 및 동 시행세칙의 구분에 따라 결정합니다.
17. 사용용도 : 실제 전기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예시 : 주거용, 상업용, 관공용, 농사용, 가로등용, 공공업용, 공공용, 국군용 등)
18. 주생산물 : 주거용고객 이외의 고객이 작성하며 영업목적물 기재(예시 : 휴대폰 판매 슈퍼, PC방, 농산물 건조, 자동차제조 등)
19. 계약전력 : 전기사용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의미하며,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의 합계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20. 설비용량 : 변압기설비와 사용설비 중 계약전력 결정 기준으로 선택한 설비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21. 선택요금 : 월 사용시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종류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0번 참조)
22. APT 계약방법 : 아파트고객의 경우 선택하는 계약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3. 세금계산서 발행 : 전기요금 및 시설부담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청구방법 : 전기요금청구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모바일이메일 청구서를 우선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종이청구서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수령할 주소를 기재합니다.
25. 자동이체 : 금융기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계좌이체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26. 전기공사업체명 : 전기공사가 수반되는 전기사용신청의 경우 적합한 면허가 있는 전기공사업체명을 기재하고, 공사업체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27. 전주관리 : 한전이 작성합니다.

□ 기타사항

28. 전기사용자 서명(날인) : 실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이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9. 소유자 날인 : 실제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사용자의 전기사용에 관한 동의 의사표현을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사전동의

3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전기사용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항목, 이용·보유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에 대해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가 확인하고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합니다.
31. 행정정보 조회 동의 : 전기사용자와 소유자의 전기사용신청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통해 한전이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실 경우 동의함에 ✓표시합니다.
3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전기사용자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 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동의함에 ✓표시합니다.
33.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행정정보 조회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여부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 위해 전기사용자와 소유자가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34.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기사용신청 업무를 위임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별지 1-2호 서식)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 고객사항

고객번호		신청일/접수번호	20 . . /
성명*		전기사용장소*	
계약종별		계약전력	kW, 변압기설비 ☐ , 사용설비 ☐

□ 건축물(토지) 소유자 (이하 "소유자" 라 합니다)

소유자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계약 변경사항(해당항목만 작성)

성명*		상호(공동주택)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종별	전력 → 전력	용도 및 산업분류	
계약전력	kW → kW	계약해지	전력, kW
계약전력 결정	변압기설비 ☐ , 사용설비 ☐	계약휴지	전력, kW
선택요금	I ☐ , II ☐ , III ☐ , IV ☐	해지(휴지)후 재사용	전력, kW
APT 계약 방법	단일계약 ☐ , 종합계약 ☐ ,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		
수요관리형 선택요금II	신청 ☐ , 해지 ☐ , 요금적용 희망일 :		
기타 변경 사항	계기시험교환(), 재봉인(), 이사정산요금(), 450시간 적용제외(), 기타()		

* 표시는 개인정보 필수입력사항입니다. 법인은 법인명 및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	모바일 ☐	-	이 메 일 ☐	@
	우 편 ☐	우편 수령주소 ()		
	※ 청구방법 미선택 시 전기사용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모바일 청구가 기본 선택됩니다.			
자 동 이 체	은 행 계 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생년월일 :
	신 용 카 드	카드사 :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	업 태 :	종 목 :

※ 아래 밑줄 및 회색글씨는 직접 자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공사의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위와 같이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한전 전기설비에 대한 시공, 수리, 변경 등 공사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정전작업이 발생할 경우, 정전작업에 협조하고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전기사용신청은 실제 사용자 명의로 신청하며, 매매(임대차) 등으로 전기사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 사용설비 용량 또는 전기사용 용도가 변경되어 계약전력 또는 계약종별의 변경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한전에 알리겠으며,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한전의 손해배상 청구(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위와 같이 전기사용계약의 변경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소유자

(서명 / 인)

별
지
서
식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사전동의】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전은 전기사용계약 관련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고객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전기사용계약신청, 시설부담금·전기요금의 청구 및 납부처리, 전기사용과 관련한 정보제공
- 나. 고지사항 전달, 본인의사 확인, 업무처리 만족도 조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다. 방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라. 기타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수집 및 이용 항목

구 분	필수 개인정보	선택 개인정보
전기사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 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해당사항 없음

※ 상기 정보를 포함하여 방송법 제64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사용정보가 한국방송공사(KBS)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한전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거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 부과·징수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고객의 개인정보는 특정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까지 보유합니다. 다만, 채권·채무 잔존 시에는 채권·채무 정산시까지 보유합니다.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신청 등이 제한되며,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전기사용정보 제공 및 자동이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시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10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필수 개인정보 (✓표시)	선택 개인정보 (✓표시)
전기사용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 유 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가입자만 해당)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관계	전화번호	아동 개인정보 수집 동의 (✓표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행정정보 조회 동의

전기사용 신청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구 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행정정보 조회 동의 (✓표시)
전기사용자	주민등록등(초)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소 유 자	건축허가서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변경)할 경우 보증조치가 필요하나, 고객의 신용이 우수할 경우 보증조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보증조치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 및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조회할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보유정보, 신용등급·평점정보 및 기타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 등

☐ **조회 목적** : 보증금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 **동의서 유효기간** : 제출한 시점부터 전기사용계약 해지 시까지

구 분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이용 동의 (✓표시)
전기사용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위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 행정정보 조회 동의,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등의 사전동의 내용을 이해하고 해당란에 표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소 유 자 (서명 / 인)

【전기사용신청 위임장】

전기사용신청서의 작성내용이 틀림없음과 신청서상의 서명·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였음을 확인하고 전기사용신청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위임하는 사람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1.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전기사용신청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에 따라 전기사용신청 목적 외 용도로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동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전기사용신청 후 위임인의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 대리인은 신분증과 전기공사업 등록증 원본을 모두 제시하기 바랍니다.

대리인	성명(법인명)	(서명 /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 **(소유자 동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신청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기본공급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을 해야 합니다.
2. **(계약해지 조건)** 소유자는 전기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전기사용자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용자가 계속해서 전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보증조치를 해야 합니다. 한전은 고객이 요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해지 희망일)** 고객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희망일을 정해 1일전까지 한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해지후 재사용)**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설계시설부담금과 재사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10년 이후는 신규시설부담금 납부),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계약전력의 감소 포함) 고객과 동일한 고객이 1년 이내에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제16조에 따라 해지기간의 기본요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재사용수수료)**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되거나 공급이 정지된 장소에서 전기를 재사용하는 고객은 재사용수수료를 부담합니다.
6. **(수급지점)**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7. **(배상책임 한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및 누전·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요금적용전력)** 최대수요전력계 설치한 고압이상의 고객은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 1, 2, 7, 8, 9 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 미만 시 계약전력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함)
9. **(역률요금)** 계약전력 20kW 이상 일반용·산업용·농사용·임시전력(을) 및 교육용 고압고객은 역률에 따라 요금을 추가 또는 감액합니다. 9시부터 23시까지는 지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고, 평균역률이 9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역률 97%까지 초과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감액합니다. 23시부터 익일 9시까지는 진상역률에 대하여 적용하며, 평균역률이 9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역률 60%까지 미달하는 역률 매 1%당 기본요금의 0.2%를 추가하여 부과되므로 적정용량의 콘덴서를 개별기기별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선택요금)**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하며, 선택요금은 적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월간 전기사용 시간, 사용시간대 등에 따라 유리한 선택요금이 달라지므로, 전기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요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1. **(1주택수가구 요금)**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주택수가구 전기요금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기본공급약관 제67조 6항 2호에 해당하는 고객이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세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기타계절 월 8~16천원, 여름철 월 1~2만원 한도) 또한,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호흡기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출산가구에 대하여는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감액합니다.(월 16천원 한도. 단,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는 할인한도 없음)
13. **(최저요금)** 주택용전력 저압고객 및 임시전력(갑) 고객은 월간 전기요금이 1천원 미만시 최저요금 1천원이 부과됩니다.
14. **(연체료)** 고객이 납기일을 경과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처음 1개월과 다음 1개월에 대하여 각각 미납요금의 1.5%를 연체료로 부과합니다.(2개월 누계 최대 3% 부과)
15. **(초과사용부가금)**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대상 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초과 횟수 및 초과 비율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50% ~ 40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이 아닌 고객이 계약전력 1kW마다 월간 450kWh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초과 전력사용량에 대하여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및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 금액의 150% ~ 300%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16. **(위약금)** 고객이 약관을 위반하여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단, 직전 위약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약관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5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17. **(휴지)** 농사용전력 등 기본공급약관 제8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한전에 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 **(소용량고객 계약변경)** 계약전력 5kW 이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은 주택용전력으로 계약종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약관준수 의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공급약관 및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한전ON (<http://online.kepco.co.kr>)에서 확인 가능]

상기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기사용자

(서명 / 인)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작성방법

□ 고객사항

1. 현재 고객의 전기사용계약 내용 중 고객사항을 기재합니다. (고객이 알지 못하는 부분은 기재 생략가능)

□ 건축물(토지) 소유자

2. 소유자명 : 건물(또는 토지) 소유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재)
3. 주소 : 소유자의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4. 주민등록번호 :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전화번호 : 건축물(토지) 소유자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 포함)

□ 변경계약사항 (※ 해당항목만 작성)

6. 성명 : 명의변경시 변경하고자 하는 고객명을 기재합니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기재)
7. 상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명을 기재합니다.
8. 주민등록번호 : 실제 전기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기재)
9. 전화번호 : 실제 사용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 포함)
10. 계약종별 : 현재 적용중인 계약종별과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종별을 기재합니다.
11. 용도 및 산업분류 : 실제 전기사용 용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시 : 주거용, PC방, 농산물 건조, 자동차제조 등)
12. 계약전력 : 현재의 계약전력과 변경하고자 하는 계약전력을 기재합니다.
13. 계약해지 : 해지하고자 하는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을 기재합니다.
14. 계약전력 결정 : 현재 계약전력의 결정기준에서 희망하는 결정기준에 체크합니다.
15. 계약휴지 : 휴지하고자 하는 계약종별과 계약전력을 기재합니다.
※ 농사용전력 등 기본공급약관 제8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객은 전기사용계약기간 중 휴지할 수 있으며, 휴지기간 중에는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16. 선택요금 : 변경하고자 하는 선택요금에 체크합니다.
※ 월 사용시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요금종류입니다.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0번 참조)
17. 해지(휴지)후 재사용 : 해지(휴지)된 고객으로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종별과 계약전력을 기재합니다.
※ 해지후재사용 신청시 고객부담금 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 APT 계약방법 : 변경하고자 하는 APT 계약방법에 체크합니다.
※ "APT 계약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9. 소용량고객 계약변경 : 주택용 3kW(임시전력(갑))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으로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임시전력 5kW 이하로 종변증설을 신청하는 고객 또는, 농사용전력(갑,을)3kW 이하 고객이 5kW 이하로 증설하는 경우 현재의 계약종별 및 계약전력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0. 세금계산서발행 :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어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변경된 사업자번호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 기타변경사항 : 계기고장이 의심되어 계기시험 및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와 계량기 봉인이 떨어져 재봉인 요청하는 경우, 이사로 인하여 요금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월간 450kWh 초과사용부가금(기본공급약관 주요내용 15번 참조) 제외사유 발생한 경우에 해당사항에 ○표시합니다.
22. 청구방법 : 전기요금청구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모바일·이메일 청구서를 우선 선택하고 불가피하게 종이청구서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수령할 주소지를 기재합니다.
23. 자동이체 : 금융기관을 통해 전기요금을 자동으로 계좌이체하고자 할 경우 작성합니다.

□ 기타사항

24. 전기사용자 서명(날인) : 실제 전기를 변경신청 후 사용하고 자 하는 고객이 신청사항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합니다.
25. 소유자 날인 : 실제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사용자의 전기사용 변경신청에 관한 동의 의사표현을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 전기사용신청을 위한 사전동의

2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수집항목, 이용·보유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의 고지에 대해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가 확인하고 해당하는 란에 각각 ✓표시합니다.
27. 행정정보 조회 동의 : 전기사용자와 소유자의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구비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를 통해 한전이 관련 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실 경우 동의함에 ✓표시합니다.
28.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 :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사용신청을 할 경우 전기사용자의 신용정보에 따라 보증금 면제를 희망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전이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에 동의하실 경우 동의함에 ✓표시합니다.
29. 전기사용자 및 소유자 날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행정정보 조회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이용 동의여부에 대한 이해여부를 확인 위해 전기사용자와 소유자가 각각 서명(날인)합니다.
30.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 위임장 :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신청할 경우 전기사용계약 변경 업무를 위임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날인)합니다.

전기사용계약서

[](이하 '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고 객 번 호		계 약 종 별	
전 기 사 용 장 소		선 택 요 금	
변압기설비 용량	kVA	공 급 방 식	
사 용 설 비 용 량	kW	계 량 전 압	
계 약 전 력	kW	수급개시(예정)일	
수 급 지 점	상시		
	예비		
전기사용계약기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설 비 내 역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중요내용 변경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5.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 고객이 직접 선택하신 '선택요금'의 적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은 약관 제 67조의 7항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합니다.

나. 고객은 전기사용 특성에 따라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유리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별	선택요금	요 금 특 징
일반용전력(갑) I, 산업용전력(갑), 교육용전력,	선택(I)요금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아 전기사용시간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요금	기본요금이 다소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일반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	선택(I)요금	기본요금이 낮고 전력량요금이 높아 전기사용시간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요금	기본요금이 다소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I)요금	기본요금이 높고 전력량요금이 낮아 전기사용시간이 월 500시간 초과 고객에게 유리
일반용(갑)II	선택(I)요금	경·중간부하시간대 사용량이 많고, 전기사용시간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요금	경·중간부하시간대 사용량이 많고, 전기사용시간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II)요금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이 많고, 전기사용시간이 적은 고객에게 유리
	선택(IV)요금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이 많고, 전기사용시간이 많은 고객에게 유리

다. 고객은 전기사용기간 중 한전ON(<http://online.kepco.co.kr>)에서 제공하는 선택요금 비교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해당 한전 지사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요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다. 현재 적용받고 있는 선택요금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요금’ 최초 적용시 또는 계약종별 변경·계약전력 증감·명의를 변경·업종변경·계절 또는 시간대구분 변경·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도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 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5·10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해야 하는 등 기본공급약관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순락해야 합니다.

붙임 : 1. 전기사용계약관련 주요사항 1부

20 년 월 일

[[고객]] 주 소 : _____
 성 명 : _____ (서명/인)

【한전】 주 소 :
 성 명 :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리인 (서명/인)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종합계약 아파트 用]

[](이하 '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I. 계약의 주요내용

계 약 종 별		주택용전력		계 약 방 법		종합계약아파트	
전 기 사 용 장 소							
수 급 지 점							
설 비 내 역							
계 약 전 력		kW		호 실 수		호	
공 동 설 비 선택요금							
계 량 전 압				수급개시(예정)일			
전 기 사 용 계 약 기 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압기설비 공 동 이 용	고 객 명						
	고객번호						
	계약내용	전력 kW		전력 kW		전력 kW	
	선택요금						
	최대수요 전력량계						
전 기 요 금 미납 세 대 전 기 제 한 공 급 지 원		계약체결일		비 고			
		년 월 일					
희 망 검 침 일 제		계약체결일		정기검침일 일 → 일			
		년 월 일		변경 후 1년 이내 검침일 재변경 불가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중요내용 변경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5.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 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5·10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해야 하는 등 기본공급약관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고 객	위 고객 대표 (인) ※ 호별명세서 별첨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 (인)
한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 리 인 (인)

II.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아파트 계약방법

가. 종합계약

고객이 한전에 납부할 전기요금에 대해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며, TV수신료는 호별로 부과되 전체 세대수에 대한 TV수신료를 1매의 전기요금청구서로 일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나. 단일계약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호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주택용 고압 전력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다. 계약변경

고객희망에 따라 종합계약방법에서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단일계약방법에서 종합계약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가 변경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 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설비 선택요금 및 요금계산방법

가. 공동설비 선택요금 종류

- (1) 선택(I)요금 : 기본요금 단가가 낮고 전력량요금 단가가 높아 월 사용시간이 적은 고객에 유리
- (2) 선택(II)요금 : 기본요금 단가가 높고 전력량요금 단가가 낮아 월 사용시간이 많은 고객에 유리

나. 공동설비에 대한 요금적용전력(기본요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

(1) 공동설비에 대한 요금적용전력은 아파트 전체 요금적용전력을 아파트 전체사용량에 대한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아파트 전체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 30%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2) 신설 종합계약 아파트로서 주택용 세대의 입주자가 없어 호별 사용량이 없는 경우

(가) 고객이 공동설비 설비용량을 집계하여 관련 근거자료(설계도면 등)를 함께 제출할 경우, 공동설비의 최대수요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을 아파트 전체 사용량에 대한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공동설비 설비용량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설비 설비용량의 30%를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단, 본 조항은 최초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까지만 적용됩니다.

(나) 한전에 제출한 공동설비 설비용량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요금이 과소청구된 경우 실제 조사된 용량을 근거로 하여 재계산한 요금과 기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원인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입주한 후에도 정확한 호별 사용량을 제출하지 않아 요금이 과소청구된 경우 첫 입주자의 입주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상기 (1)에 근거한 요금계산방식으로

제계산한 요금과 기 청구한 금액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요금차액의 납부 주체는 전기요금 청구 시 요금적용전력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계약당사자입니다.

3.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가. 적용대상

(1) 고압공급 아파트 구내에서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처리시설, 구내보안등 및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주거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이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공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고객

(2)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의 계기에 자가발전량과 한전수전량이 구분 계량되지 않고 함께 계량되는 경우에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기준

(1) 대표고객(대표고객의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고압계량고객 포함)

(가)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는 한전이 시설소유하며,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류기 등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나) 최대수요전력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는 한전이 설치합니다.

(2) 공동이용고객(대표고객의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저압계량고객 포함)

(가) 계기용 변류기 등 부속장치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나) 최대수요전력계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고객소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 등의 계산

(1)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2)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공동이용고객이 고객소유로 최대수요전력계 설치시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나)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 미설치시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3)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종합계기(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라. 역률요금의 적용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합니다.

4. 호별 사용전력량 및 지침의 제출

한전은 매월 정기검침일에 종합전력량계를 검침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고객은 호별 전력량계를 검침한 후 호별 사용전력량과 계기지침을 사용량 검침표에 기재한 후 대표자가 날인하여 정기검침일 다음 날까지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제출한 호별 사용전력량과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의 합계치는

한전이 검침한 종합계기의 사용전력량과 같아야 합니다.

단, 희망 검침일제를 신청한 아파트는 호별 전력사용량 및 지침을 한전ON(<http://online.kepco.co.kr>), 전산매체(전용선, 전산화일)를 이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변압기공동이용고객의 검침은 고객이 직접 시행하고 전력사용량 및 지침을 정기검침일의 다음날까지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정기검침일 변경

희망 검침일제를 신청한 아파트는 정기검침일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검침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6. 전기요금의 청구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에 한전은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이 명기된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1매로 고객에게 일괄 청구하되, 각호별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의 내역서를 고객에게 교부합니다. 단, 희망 검침일제를 신청한 아파트는 인터넷 빌링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거용 호실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지원

가. 고객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거용 호실의 전기제한공급 지원을 문서로 요청시 한전은 제한공급지원요건을 검토한 후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이 한전에 전기제한공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공급 지원관련 내용을 자체관리규약에 반영한 후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미납월별 사용량 및 미납요금, 가구수, 장애인 거주여부, TV대수, 관리사무소의 전기제한공급 예고안내 사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고객정보를 한전에 제공시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득(得)한 후, 한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한전이 단전 및 수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한전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한전은 고객의 미납세대 지원요청에 대해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미납요금 인수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며, 미납세대에서 전기요금 미납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제한공급을 해제합니다.

라.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거용 호실에 전기 제한공급 지원 시, 계기부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전류제한기 부설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의 별도 요청에 따라 단전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미납세대 이사에 따른 관리비 정산 시, 관리주체는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정산 후, 한전에 납부하거나, 이사 전 한전에 사전 통보하여 한전에서 수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8. 이사 등으로 사용자 변동이 있는 주거용 호실에 대한 이사요금 계산 지원

가. 이사요금 계산을 희망하고 매월 검침지침 및 사용량을 제출하는 종합계약 아파트에 대해 시행합니다.

나. 한전에 이사요금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 주거용 호실에 대한 사용자 변동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자체관리규약에 반영한 후 전입세대 고객정보(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동·호수),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사 시점의 검침지침 및 사용량, 계량기 번호 등을 한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전입세대의 고객정보를 한전에 제공시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득(得)한 후 한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사무소는 당월 정기검침일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이사

요금의 계산을 문서로 요청해야 합니다. 한전은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전입세대에 대한 요금을 계산하고 관리사무소에 계산내역을 제공합니다.

- 라. 한전은 이사 전 · 후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호별 전기요금 내역서에 표시하고, 계산된 이사요금을 합산하여 1매의 청구서로 일괄 청구합니다.
- 마.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전기제한공급 지원을 신청한 주거용 호실에 대하여는 이사요금 계산을 지원 않으며, 아파트의 계약방법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월에 포함되는 이사정산 고객의 요금은 단일 계약의 계산방법을 따릅니다.
- 바. 관리사무소는 이사요금 확인 등을 위해 한전에서 자료제출을 요청 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하며, 전기요금 면탈을 목적으로 이사지침 및 사용량을 임의조작한 경우 한전은 고객의 면탈요금을 회수하고 계약방법을 단일계약으로 변경합니다.

9.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 지급

- 가. 고객이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 청구금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 한전은 고객이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 · TV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대표에게 한전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전기업무 및 TV업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검침착오 발생건에 대하여는 전기업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나. 지원금 지급일은 다음달 25일로 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합니다.

10. 호별 사용전력량 미제출 및 임의조작시 전기요금 계산방법

- 가.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체결한 경우로서 고객이 호별 계기지침 및 사용전력량을 정기검침일의 다음날 까지 한전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한전이 당해 월의 전기요금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전은 부득이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2항 본문에 의한 단일계약방법으로 전기요금을 계산합니다.
- 나. 고객이 2회 이상 계속하여 호별 사용전력량 및 계기지침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기요금 면탈을 목적으로 호별 사용전력량 및 계기지침을 임의조작하여 한전이 호별 사용전력량을 알수 없는 경우에 한전은 고객의 면탈요금을 회수하며 계약방법을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합니다.
- 다. 한전이 사용전력량 임의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호별 보조검침표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 하는 경우 고객은 한전에게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에 협조하지 않아 호별 사용량이 조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계약방법을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 약관의 적용 및 해석

-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영업업무 처리지침 및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 나.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위 본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상의 계약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 대표 : (인) ☐ 관리사무소 : (인)
-------------------	--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단일계약 아파트 用]

[](이하 '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I. 계약의 주요내용

계 약 종 별		주택용전력		계 약 방 법	단일계약아파트
전 기 사 용 장 소					
수 급 지 점					
설 비 내 역					
계 약 전 력		kW		호 실 수	호
계 량 전 압				수급개시(예정)일	
전 기 사 용 계 약 기 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 객 명				
	고 객 번 호				
	계 약 내 용	전력 kW	전력 kW	전력 kW	
	선 택 요 금				
	최 대 수 요 전 력 량 계				
전 기 요 금 미 납 세 대 전 기 제 한 공 급 지 원		계약체결일		비 고	
		년 월 일			
희 망 검 침 일 제		계약체결일		정기검침일	일 → 일
		년 월 일		변경 후 1년 이내 검침일 재변경 불가	

1.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2.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3. (계약 중요내용 변경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5.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 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5·10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해야 하는 등 기본공급약관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고 객	위 고객 대표 (인) ※ 호별명세서 별첨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 (인)
한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 리 인 (인)

II.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아파트 계약방법

가. 종합계약

고객이 한전에 납부할 전기요금에 대해 호별 사용분은 주택용 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사용분은 일반용 전력(갑) 고압전력요금을 적용하며, TV수신료는 호별로 부과되 전체 세대수에 대한 TV수신료를 1매의 전기요금청구서로 일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나. 단일계약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을 호수로 나누어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주택용 고압 전력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호수를 곱한 것을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다. 계약변경

고객희망에 따라 종합계약방법에서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단일계약방법에서 종합계약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가 변경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 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가. 적용대상

- (1) 고압공급 아파트 구내에서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처리시설, 구내보안등 및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주거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이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전기 사용계약 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공급을 받고자 희망하는 고객
- (2)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 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고객의 계기에 자가발전량과 한전수전량이 구분 계량되지 않고 함께 계량되는 경우에는 변압기설비 공동이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기준

- (1) 대표고객(대표고객의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고압계량고객 포함)
 - (가)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는 한전이 시설소유하며,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류기 등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나) 최대수요전력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는 한전이 설치합니다.
- (2) 공동이용고객(대표고객의 변압기를 공동이용하는 저압계량고객 포함)
 - (가) 계기용 변류기 등 부속장치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 (나) 최대수요전력계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고객소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 등의 계산

- (1)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2)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 공동이용고객이 고객소유로 최대수요전력계 설치시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나)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 미설치시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3)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종합계기(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라. 역률요금의 적용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 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합니다.

3. 호별 사용전력량 및 지침의 제출

한전은 매월 정기검침일에 종합전력량계를 검침하고, 고객은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의한 요금의 감면 등을 위해 호별 전력량계를 검침한 후 호별 사용전력량과 전력량계 지침을 사용량 검침표에 기재한 후 정기검침일 다음날까지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제출한 호별 사용전력량과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의 합계치는 한전이 검침한 종합계기의 사용전력량과 같아야 합니다. 다만, 호별 사용량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호별 평균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합니다.

단, 희망 검침일제를 신청한 아파트는 호별 전력사용량 및 지침을 한전ON(<http://online.kepco.co.kr>), 전산매체(전용선, 전산화일)를 이용하여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압기공동이용고객의 검침은 고객이 직접 시행하고 전력사용량 및 지침을 정기검침일의 다음날까지 한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정기검침일 변경

희망 검침일제를 신청한 아파트는 정기검침일 변경 후 1년 이내에는 다른 검침일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전기요금의 청구

단일계약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에 한전은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이 명기된 요금 청구서 및 영수증 1매로 고객에게 일괄 청구합니다. 단, 희망 검침일제를 신청한 아파트는 인터넷 빌링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거용 호실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지원

가. 고객이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거용 호실의 전기제한공급 지원을 문서로 요청시 한전은 제한공급지원 요건을 검토한 후 이에 협조할 수 있습니다.

나. 고객이 한전에 전기제한공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제한공급 지원관련 내용을 자체관리규약에 반영한 후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미납월별 사용량 및 미납요금, 가구수, 장애인 거주여부, TV대수, 관리사무소의 전기제한공급 예고안내 사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한전에 문서로 통보해야 하며, 해당 고객정보를 한전에 제공시에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득(得)한 후, 한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한전이 단전 및 수금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한전의 정당한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다. 한전은 고객의 미납세대 지원요청에 대해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미납요금 인수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가능하며, 미납세대에서 전기

요금 미납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비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전기제한공급을 해제합니다.

라. 한전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주거용 호실에 전기 제한공급 지원 시, 계기부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전류제한기 부설이 어려운 경우, 관리주체의 별도 요청에 따라 단전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마. 미납세대 이사에 따른 관리비 정산 시, 관리주체는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정산 후, 한전에 납부하거나, 이사 전 한전에 사전 통보하여 한전에서 수금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7.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 지급

가. 고객이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등 청구금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에 한전은 고객이 호별 사용전력량 검침, 호별 전기요금·TV수신료 등의 청구 및 수금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객의 대표에게 한전의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전기업무 및 TV업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나. 지원금 지급일은 다음달 25일로 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로 합니다.

8. 약관의 적용 및 해석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영업업무 처리지침 및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나.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위 본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상의 계약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 대표 : (인) ☐ 관리사무소 : (인)
----------------------	--

고압공급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서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세대별계약) 아파트 用]

[](이하 '고객'이라 함)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는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유합니다.

I. 계약의 주요내용

계 약 종 별		주택용전력	계 약 방 법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전 기 사 용 장 소				
수 급 지 점				
설 비 내 역				
계 약 전 력		kW	호 실 수	호
대 표 고 객 선택요금				
계 량 전 압			수급개사(예정)일	
전 기 사 용 계 약 기 간		전기사용계약이 성립(변경)된 날로부터 요금적용 개시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압기설비 공 동 이 용	고 객 명			
	고 객 번 호			
	계 약 내 용	전력 kW	전력 kW	전력 kW
	선 택 요 금			
	최 대 수 요 전 력 량 계			
전 기 요 금 미 납 세 대 전 기 제 한 공 급 지 원	계약체결일		비 고	
	년 월 일			
희 망 검 침 일 제	계약체결일		정기검침일 일 → 일	
	년 월 일		변경 후 1년 이내 검침일 재변경 불가	

- (계약서 명시사항 외의 권리의무관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 계약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 (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 기간)** 전기사용계약 성립일은 본 전기사용계약서 체결일로 하며 전기사용계약기간은 상기에 기재한 바에 따릅니다. 또한, 상기 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고객과 한전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전기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 (계약 중요내용 변경사항의 통지)** 고객의 전기사용용도나 사용설비 또는 변압기설비용량 등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한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 고객과 한전간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및 유지보수의 책임한계는 수급지점으로 하며, 전원측은 한전이 고객측은 고객이 각각 책임집니다.
5. (설치비용 회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계약 체결 이후 고객의 책임으로 단일계약 및 종합계약 변경시에는 한전이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을 위해 소요한 총 공사비를 안분하여 계량기 재검증 잔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기사용계약 해지시는 제외합니다.
6. (변압기공동이용 고객의 전기사용계약의 효력) 세대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위 고객과 기존 변압기공동이용고객, 한전 사이에 본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세대공동이용고객만 신설 또는 변경될 경우, 본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계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전기사용에 따른 고객의 협력)
- 가.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 한전은 고객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인 경우에도 경과실인 때에는 5분 이상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한하여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시간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 전기요금의 3·5·10배를 한도로 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용 자가발전기,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결상보호장치, 정전경보장치 등의 자체보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는 한전의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이 중지될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자체보호장치를 시설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나. 한전은 기본공급약관에 위배되는 전기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 전기설비를 검사하거나 전기기기를 시험해야 하는 등 기본공급약관 제40조(전기사용장소의 출입)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승낙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한 후 고객의 토지 및 건물에 출입할 수 있으며, 고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을 승낙해야 합니다.

년 월 일

고 객	위 고객 대표 (인) ※ 호별명세서 별첨 입주자대표회의 위임을 받은 관리사무소 (인)
한 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위 대 리 인 (인)

II.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대표고객 및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구분

- 가. 대표고객 : 공용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한전과 계약한 고객을 말합니다.
- 나. 세대공동이용고객 : 아파트 전유부분 또는 아파트 개별세대로 주거용전력을 적용받고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다. 기타공동이용고객 : 아파트 구내에서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처리시설, 구내보안등 및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주택용전력과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공급을 받는 고객을 말합니다.

2.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계약

- 가. 계약방식은 기본공급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 이용]에 따라 공용부분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에 대해서는 한전과 대표고객[입주자대표회의(위임시 관리사무소)]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세대 공동이용고객에 대해서는 개별세대와 한전 간에 계약을 별도로 체결합니다.

나. 전기계기 등의 설치기준

(1) 대표고객

- (가) 전기계기는 한전이 시설·소유하며, 계기용 변성기, 계기용 변류기 등 부속장치는 고객이 시설·소유합니다.
- (나) 최대수요전력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2) 세대공동이용고객

- (가) 전기계기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3) 기타공동이용고객

- (가) 전기계기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 (나) 계기용 변류기 등 부속장치는 한전이 시설·소유합니다.
- (다) 최대수요전력량계는 고객 희망시 고객소유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 대표고객에 대한 요금적용전력 계산

- (1)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기타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만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2)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가) 기타공동이용고객이 고객소유로 최대수요전력량계 설치시 : 아파트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기타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나) 기타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계 미 설치시 : 아파트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기타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 (3)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대표고객의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량에서 세대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과 기타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4) 대표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text{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times \frac{\text{전체사용량} - (\text{기타공동이용고객 사용량} + \text{세대 공동이용고객 사용량})}{\text{전체사용량} - \text{기타공동이용고객 사용량}}$$

이 경우 대표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으로 고지한 전기요금 청구서상의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하며,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 30%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3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합니다.

라. 역률요금의 적용

기타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 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합니다.

3. 전기요금체납시 대표고객의 해지방법

가. 대표고객이 전용개폐기 설치시

○ 대표고객의 전용개폐기를 개방합니다.(이 경우 변압기손실량 요금은 전체 계약전력 중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비율로 조정하여 고객별로 산정합니다.)

나. 대표고객이 전용개폐기 미설치시

○ 한전과 대표고객간의 수급지점 개폐기를 개방합니다.(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모두 전기공급 정지)

4. 약관의 적용 및 해석

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영업업무 처리지침 및 요금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나. 한전의 기본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릅니다.

계약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위 본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상의 계약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고객 대표 : (인) ☐ 관리사무소 : (인)
----------------------	--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신청서 (신규 · 변경)

본인은 아래 주소지 소재 1주택에 각각의 주거기능을 가지고 독립취사를 하고 있는 ()가구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아래의 고객 동의사항의 가구수 감소사실 통보 및 주민등록정보 열람 등에 동의하오니,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을 적용 바랍니다.

접수일자	20	접수번호		
신 청 정 보	고객번호		전 화	
	신 청 인	(서명/인)	휴대폰	
	주 소			

[고객 동의 사항]

1.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 및 향후 가구수 변동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한전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개별세대주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가구수 감소 시 감소사실을 한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겠으며, 신고 불성실로 부당 적용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독립취사여부 확인 및 가구수 확정을 위해 한전에서 방문하는 경우 현장 확인에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현장조사 거부시 수가구 요금적용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4. 주민등록 전입이 없는 실거주 고객은 신청일부터 1년간(12개월) 적용되므로,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거주사실을 증빙하되 미신청시 적용이 해지됨을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한달 이내 한전에 신고하겠으며 신고불성실로 부당 적용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고객 동의사항 확인란에는 세대주별로 각각 동의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자세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한전ON(<http://online.kepco.co.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 동의사항 확인	전입여부(o, x)	TV 유무
1		(서명/인)		
2		(서명/인)		
3		(서명/인)		
4		(서명/인)		
5		(서명/인)		
6		(서명/인)		
7		(서명/인)		
8		(서명/인)		

5. 법정대리인 동의

만 14세 미만 가입자만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 신청자의 주택 내에는 상기와 같이 ()가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담당자 (인)

시(군) 동(읍,면)장 직인

한국전력공사 본부(지)장 귀하

※ 신청자는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시고, 세대주 기재란 부족시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전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전기사용 관련 고객상담 처리,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처리
- 나.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다. 방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라. 기타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 수집 및 이용항목(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입여부(o, x), 주소, 휴대전화번호

※ 상기 정보를 포함하여 방송법 제64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사용정보가 한국방송공사(KBS)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이용 및 보유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간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 : 고객님께서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1주택수가구 적용이 제한됩니다.

순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동의자(성명)
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3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5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6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7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8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 8세대 초과시 추가 기재서식 】

[고객 동의 사항]

1. 1주택 수가구 요금적용 및 향후 가구수 변동사실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한전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개별세대주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가구수 감소 시 감소사실을 한전에 자진하여 신고토록 하겠으며, 신고 불성실로 부당 적용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독립취사여부 확인 및 가구수 확정을 위해 한전에서 방문하는 경우 현장 확인에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현장조사 거부시 수가구 요금적용이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4. 주민등록 전입이 없는 실거주고객은 신청일부터 1년간(12개월) 적용되므로, 1년 단위로 재신청하여 거주사실을 증빙하되 미신청시 적용이 해지됨을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라도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변동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전에 신고하겠으며, 신고불성실로 부당 적용받은 경우 정상요금과의 차액과 위약추징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유의사항 : 고객 동의사항 확인란에는 세대주별로 각각 동의서명을 해야합니다.

거주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객 동의사항 확인	전입여부(o, x)	TV 유무
9		(서명/인)		
10		(서명/인)		
11		(서명/인)		
12		(서명/인)		
13		(서명/인)		
14		(서명/인)		
15		(서명/인)		
16		(서명/인)		
17		(서명/인)		
18		(서명/인)		
19		(서명/인)		
20		(서명/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전력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전기사용 관련 고객상담 처리,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적용 처리
- 나.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다. 방송법 제64조에서 정한 수상기 등록 및 수신료 징수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공사(KBS)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
- 라. 기타 한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2. 수집 및 이용항목(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입여부(o, x), 주소, 휴대전화번호

※ 상기 정보를 포함하여 방송법 제64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기사용정보가 한국방송공사(KBS)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3. 이용 및 보유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간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 : 고객님께서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1주택수가구 적용이 제한됩니다.

순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해당란에 √ 표시)		동의자(성명)
1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2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3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4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5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6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7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8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국전력은 전기요금 할인 신청 등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 전기요금 할인 신청·해지 처리 및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변경
나.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수신료 면제 신청·해지 처리

2. 수집 및 이용항목(필수항목)

- 가.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나. 할인대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의해 수집합니다.

3. 이용 및 보유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10년간 보관합니다.

4.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 : 고객님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전기요금 할인적용이 제한됩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5.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의거 다음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 이용목적 : 전기요금 할인 신청
나. 이용항목 : 장애인, 유공자(종류, 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 정보
다. 이용기간 : 10년

- 라. 동의 거부권리 및 불이익 : 고객님의께서는 민감정보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장애인·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대가족)·출산가구·생명 유지장치 등 전기요금 할인 및 수신료 면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6. 법정대리인 동의(만 14세 미만 가입자만 해당)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 의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습니다.

법정대리인 성명	연락처	관계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 신청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서명)

(법정대리인) 성명 : (인/서명)

(할인대상자) 성명 : (인/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한국전력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해당 행정정보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등(초)본	(인)
국가유공자(유족)확인	(인)
장애인증명	(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
차상위계층 확인	(인)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 (CPP) 적용 신청서

고객사항

* CPP : Critical Peak Pricing

고객번호			신 청 일	20 . . .
고 객 명	성 명(상호)		전기사용장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		
계약종별	일반용(을) ☐	산업용(을) ☐	현행 선택요금	
소 유 자	성 명(상호)		계약전력	kW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 (CPP) 신청사항(변경계약사항)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 (CPP)	일반용(을) CPP ☐	CPP요금 적용기간	동계 : 1월 1일 ~ 2월 말일 하계 : 7월 1일 ~ 8월 31일		
CPP계약 적용 (명의변경시)	산업용(을) CPP ☐				
	적용 ☐ 미적용 ☐				
피크일 지정 수신방법 (필수 기재)	휴 대 폰	CPP 요금변동 상하한율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적용한 전력량요금 대비]	±5% ☐	±10% ☐	±20% ☐
	E-mail		@		

【고객 동의 사항】

- 신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전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르며,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릅니다.
- 수요관리형 선택요금 I(이하 “CPP요금”이라 한다)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은 시행 세칙 별표9 수요관리형 선택요금표(I)의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피크일은 동계, 하계 각각 10일(이하 “기준 피크일 지정일수”라 한다.)을 지정하되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동계, 하계 각각 3일의 범위내에서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할 수 있으며, 피크일이 아닌 나머지 날은 비피크일로 적용합니다. 또한 피크일은 동일 주간에 3일을 초과하여 지정하거나 토요일 및 약관 별표3의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연속 2일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제3항과 달리 피크일을 지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요금조정률을 합산 적용하여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을 재계산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가. “기준 피크일 지정일수”보다 추가 또는 감축 지정한 경우

 - 요금조정률[피크일 추가시(감축시)] : [동계 : -24%(24%), 하계 : -1.9%(1.9%)] × 피크일 추가(감축) 일수

나. 불가피한 사유로 피크일을 집중 지정한 경우

 - 요금조정률 = -0.2% × [동일 주간 3일 초과 피크일 지정일수(a) + 평일 기준 연속 2일 초과 피크일 지정일수(b) - a · b 중복계산 일수]

5. 한전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해당일의 전주(前週) 금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시간별 사용전력량 조회 시스템(<http://pccs.kepco.co.kr>, 이하 “iSMART”라 한다)에 공지하고, SMS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다만,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피크일 지정이 불필요한 경우 해당일 전일까지 피크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한전은 피크일 지정 취소를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고객은 피크일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CPP요금" 적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CPP요금" 적용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별도 계약해지 요청이 없으면 "CPP요금"을 계속 적용합니다. 동 고객이 향후 동계, 하계의 "CPP요금" 적용기간에 대응하는 전년도 동기간의 평일(약관 별표3의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 점유비가 25% 미만인 경우 "CPP요금" 적용 계약은 유지하되, 해당 "CPP요금" 적용기간의 전력량요금은 별표1(월간 전기 요금표)를 적용(단, 전년도 동 기간에 “CPP”요금을 적용받아 평일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 점유비가 25% 미만인 경우에는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신청고객이 변경된 경우 고객은 변경사실과 "CPP요금" 계속적용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7. 고객이 선택한 "CPP요금" 적용기간 중에는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 기간 중 다른 수요관리제도를 고객이 신청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다른 계약종별로 변경, 계기고장 등으로 "CPP요금" 적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CPP요금" 적용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CPP요금"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기요금은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를 적용하여 소급 정산합니다.
8. “CPP요금” 적용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가. 동계는 1월 1일, 3월 1일, 하계는 7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검침 월분 단위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산출
 - 나. 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 “iSMART”의 시간별 계량데이터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용전력량
 - 다.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 “CPP요금” 적용기간의 해당 시간대 사용전력량에서 피크일의 해당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출
 - 라. 고객이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 대표고객의 피크일 및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정
 - (1)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 고객)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2) 대표고객만 수요관리형 선택요금을 적용받는 경우

-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된 경우 :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피크일 및 비피크일의 최대부하시간대(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 시간대 (동계는 중간부하시간대에도 적용) 사용전력량을 배분하고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차감
- 공동이용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시행세칙 제49조 제7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고 위와 같이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해당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에서 차감

9. “CPP요금” 적용기간 중 통신시스템 이상 등으로 시간별 전력량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에 전력량계에 계량된 검침월분 정기지침의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을 한도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고객 귀책이 아닌 사유로 “CPP요금” 적용기간의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정산합니다.

10. “CPP요금” 신청시 고객은 요금변동 상하한율($\pm 5\%$, $\pm 10\%$, $\pm 20\%$)을 선택하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산한 전력량요금에 요금변동 상하한율로 조정한 요금범위 내에서 “CPP요금”의 상하한을 설정하여 계산합니다.

11. “CPP요금” 적용기간 중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요율 변경일부터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해당 계약종별 시간대별 요율 조정률을 “CPP요금”에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12. 동계, 하계 각각 “CPP요금”을 적용하는 기간에 지정된 피크일수(A)와 동 피크일 중 고객 기준부하 대비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사용량을 5%(산업용은 10%)이상 감축한 일수(B)의 비율(B/A)이 60% 이상인 경우 검침월분 단위로 “CPP요금”과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을 적용하여 계산한 전력량요금 중 낮은 요금을, 비율 (B/A)이 60% 미만인 경우는 두 요금 중 높은 요금을 적용하여 정산액을 산출하고 “CPP요금” 적용기간 최종월분 전기요금에 반영합니다.

피크일 지정일수	감축의무일수	피크일 지정일수	감축의무일수
13일	8일	9일	6일
12일	8일	8일	5일
11일	7일	7일	5일
10일(기준)	6일	-	-

- (1) 피크일 직전 토요일, 공휴일 및 이전 피크일을 제외한 10일(이하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이라 한다.)을 선택하고 각 일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이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의 최대부하시간대 평균 사용전력량보다 $\pm 25\%$ 를 초과한 날을 제외합니다.
- (2) 휴가 또는 설비보수 등의 사유로 고객기준부하 산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고객이 해당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한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기간을 고객기준부하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3) 위 (1)~(2)호에 따라 산출한 기간이 10일인 경우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의 최대 2일 및 최소 2일을, 9일인 경우 최대 2일 및 최소 1일을, 8일인 경우 최대 1일 및 최소 1일을, 7일인 경우 최대 1일을 제외한 기간을, 1~6일인 경우 해당 기간을, 0일인 경우는 “피크일 직전 평일 10일”을 기준으로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에 대하여 최대부하시간대 평균사용전력량을 산출하고 이를 고객기준부하로 적용합니다.
- (4) 약관 제25조의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의 대표고객에 대한 위 (1)~(3)호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은 전체(대표고객 + 공동이용고객)의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5) 고객기준부하 산정대상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의 시간별 데이터 취득률(C)이 통신장애 등의 사유로 90% 미만인 경우 아래와 같이 고객기준부하를 보정합니다.

○ 고객기준부하(보정후) = 고객기준부하(보정전) $\div$ 데이터 취득률(C)

○ 매매, 상속, 합병 등으로 CPP요금 적용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14
일 이내에 한전에 통지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고객) : (인)

위임하는 사람	사용자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위임받는 사람	성명(법인명)		(인)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다른 사람의 인장·서명 도용 등에 의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한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 위·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대리로 오신분은 신분증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협약서

대표고객	전기사용장소			
	고객명		계약번호	- -
공동이용고객	전기사용장소			
	고객명		계약번호*	- -
	계약종별	전력	계약전력	kW

* 기존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요금 청구서의 계약번호를 기재합니다.

(공동이용고객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한전이 공동이용고객의 계약번호를 기재합니다.)

상기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은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함에 있어 아래 한전의 공급조건을 준수할 것을 협약합니다.

1. 전기계기 등의 설치기준

대표고객의 전기계기는 수전변압기 1차측에 설치하고,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는 수전변압기 2차측 단자에서 인출한 배선과 공동이용고객 사용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하되 검침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합니다.

2.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종합계기(대표고객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기계기에 시현된 사용전력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3. 계약전력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최대수요전력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공동이용고객을 포함한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단,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가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없는 경우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은 전체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결정합니다.

5. 전기요금채납시 전기사용계약 해지방법

가. 대표고객

대표고객에 대한 선별적인 전력공급 차단이 불가한 경우 한전은 수급지점 개폐기를 개방하고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고객 모두에 대한 전기공급을 정지합니다. 이 경우 공동이용고객은 잠정공급설비 설치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잠정공급설비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대표고객의 전용개폐기 또는 고객소유 차단기를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표고객에 대해서만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경우 공동이용고객은 전기를 계속 공급받고 변압기손실량 요금은 공동이용고객이 부담합니다. 공동이용고객이 다수인 경우 변압기손실량 요금은 공동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발 행 일 : 2026. 8. 1

발 행 처 : 한 국 전 력 공 사
영 업 처
